

2024. 6. 20.(목) 10:00

제313회 달성군의회(제1차 정례회)  
제 4 차 본회의

# 검 토 보 고 서



달 성 군 의 회



#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공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1. 의안번호: 제2504호

2. 발 의 일: 2024년 6월 4일

3. 발 의 자: 최재규 의원 등 3인

## 4. 제안사유

- '24.7.1.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위원회 조례」 시행으로 상임위원회 등이 설치·운영됨에 따라 각 상임위원장 및 특별위원장 등 행정절차에 필요한 공인을 마련하여 의회운영 및 행정의 효율을 높이고자 함.

## 5. 주요내용

- 공인의 종류 및 특수공인의 종류에 관한 사항(안 제2조~제3조)
- 공인 인영의 내용·규격·찍는 위치에 관한 사항(안 제4조~제6조)
- 공인의 (재)등록·폐기·관리 등에 관한 사항(안 제7조~제14조)

## 6. 관계법령

-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대구광역시 달성군 공인 조례」, 「대구광역시 달성군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 7. 검토의견

-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에 따라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가 의회 또는 의장 등의 명의로 발신·교부하는 문서나 재무에 관한 업무 등 특수한 업무처리에 사용하는 공인을 상위법령과 현행에 맞게 정비하기 위해 개정하는 내용으로
- '24.7.1.부터 시행하는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위원회 조례」에 따라 상임위원회가 설치·운영됨으로써 상임위원회별 위원장 등의 공인을 신설한 근거를 마련하고
- 달성군 전체의 일관된 공인관리를 위해 「대구광역시 달성군 공인 조례」와 「대구광역시 달성군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에서 정하고 있는 공인 규정에 맞춰 조례에 반영한 것으로 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 붙임 1. 조례안 1부.  
2. 관계법령 1부. 끝.

#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공인 조례

## 전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공인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공인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 40조에 따라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에서 사용하는 공인의 종류, 규격, 등록, 관리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종류) ① 공인은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청인(廳印)과 직인(職印)으로 구분한다.

② 직인(職印)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1.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이하 “의회” 라 한다) 의장인
2.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위원회 조례」에 따른 의회 각 상임위원회 위원장인 및 특별위원회 위원장인
3. 「지방공무원법」 제7조에 따른 의회 인사위원회인 및 인사위원회 위원장인
4. 「대구광역시 달성군 의회 사무기구의 설치 등에 관한 조례」에 따른 의회 사무국장인
5. 의회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직인

③ 제2항에 명시된 이외의 직인이 필요할 때에는 의회 의장의 승인을 얻어 필요한 직인을 따로 갖추어 둘 수 있다.

④ 제2항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직인은 의회 대내 발신 공문서에만 사용할 수 있다. 다만, 의회 의장의 승인을 얻은 사항에 대하

여는 의회 대외 발신 공문서에 사용할 수 있다.

**제3조(특수공인)** ① 의회 의장은 의회 재무에 관한 업무 등 특정한 업무의 처리에 사용하는 특수공인을 해당 업무 직위별로 갖추어 둘 수 있으며, 그 특수공인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1. 「대구광역시 달성군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에 따른(이하 제2호부터 제5호까지 같다) 의회 징수관인
2. 의회 재무관인
3. 의회 물품관리관인
4. 의회 지출원인
5. 의회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인
6. 그 밖에 의회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직위별 특수공인

② 제1항에 명시된 이외의 특수공인이 필요할 때에는 의장의 승인을 얻어 필요한 특수공인을 따로 갖추어 둘 수 있다.

**제4조(인영의 내용)** 제2조 및 제3조에 따른 공인(이하 “공인”이라고만 한다)의 인영은 한글로 하여 가로로 새기되, 쉽고 간명하게 알아볼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의회 또는 해당 직위의 명칭에 “인” 또는 “의인” 글자를 붙인 것으로 한다.

**제5조(규격)** 공인은 정사각형으로 하되, 규격은 별표와 같다.

**제6조(찍는 위치)** 공인은 발신 명의 표시의 마지막 글자가 인영의 가운데에 오도록 한다.

**제7조(등록)** 공인은 별지 제1호서식의 공인대장에 그 인영을 등록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제8조(관리)** ① 공인은 의회 사무국장이 관리하되, 소속 공무원 중에 관리책임자를 지정하여 관리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관리책임자는 의회사무국 해당 업무 담당 팀장 및 담당자가 된다. 다만, 제3조제1항 각 호에 따른 특수공인은 각 그 직에 임명된 사람이 관리책임자가 된다.

**제9조(재등록 및 폐기)** ① 공인이 분실 또는 닳아 없어지는 등의 사유로 갱신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의회 사무국장에게 공인의 재등록을 요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경우 또는 그 밖의 사유로 갱신 전 등의 공인을 폐기할 때에는 공인대장에 그 공인 폐기일과 폐기 사유 등을 적고, 「대구광역시 달성군 공인 조례」 제11조제2항에 따라 그 공인을 대구광역시 달성군 기록관에 공인폐기공고문과 함께 이관하여야 한다.

**제10조(인영의 보존)** 의회 사무국장은 매년 2월 1일 현재의 공인의 인영을 별지 제3호서식의 인영부에 따라 보존하여야 한다.

**제11조(공인의 사고보고)** 공인의 관리자는 공인의 도난, 분실, 위조, 변조 등의 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지체없이 필요한 조치를 하는 동시에 별지 제2호서식의 공인사고보고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2조(전자이미지공인)** 공인은 전자문서에 사용하기 위하여 전자이미지공인을 가질 수 있으며, 이 경우 전자 입력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제13조(공고)** 공인 및 전자이미지공인을 등록, 재등록 또는 폐기한 때에는 이를 대구광역시 달성군 공보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14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 공인과 전자이미지공인의 등록·관리·재등록·폐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구광역시 달성군 공인 조례」를 준용한다.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규격 개정에 관한 경과조치 및 적용례)** ①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 규정의 규격에 따른 공인은 이 조례에 따라 갱신할 때까지 사용할 수 있다.

② 제5조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이후 신설·갱신하는 공인이나 특수공인부터 적용한다.

[별표]

### 공인 및 특수공인의 규격(제5조 관련)

(단위:cm)

	구 분	길이
청인	대구광역시달성군의회인	3.6
직인	대구광역시달성군의회의회장인	2.4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위원회 조례」에 따른 각 상임위원회 위원장인	2.1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위원회 조례」에 따른 각 특별위원회 위원장인	
	「지방공무원법」 제7조에 따른 대구광역시달성군의회 인사위원회인	
	「지방공무원법」 제7조에 따른 대구광역시달성군의회 인사위원회 위원장인	
	「대구광역시 달성군 의회 사무기구의 설치 등에 관한 조례」에 따른 대구광역시달성군의회사무국장인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을 제외한 「대구광역시 달 성군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에 따른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회계관계공무원인	2.0	
특수 공인	「대구광역시 달성군 물품관리 조례 시행규칙」에 따른 물품관리관인	1.8
	「대구광역시 달성군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에 따 른 대구광역시달성군의회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인	
	「대구광역시 달성군 물품관리 조례 시행규칙」에 따른 물품출납원인	

## 공 인 대 장

공 인 명			
종 류	<input type="checkbox"/> 청인 <input type="checkbox"/> 직인 <input type="checkbox"/> 특수공인	관리부서	
<input type="checkbox"/> 등록 · <input type="checkbox"/> 재등록공인	(인 영)	등록일 (재등록일)	년 월 일
		새 긴 날	년 월 일
		새 긴 사 램	주소 : 성명 및 상호 : 생 년 월 일 :
		최초사용일	년 월 일
		재 료	
		등록(재등록) 사 유	
		공 보 공 고	년 월 일 공고 제 - 호
		비 고	
폐 기 공 인	(인 영)	등록일 (재등록일)	년 월 일
		폐 기 일 (분 실 일)	년 월 일
		폐 기 사 유	<input type="checkbox"/> 마멸 <input type="checkbox"/> 분실 <input type="checkbox"/> 기타( )
		폐 기 방 법	<input type="checkbox"/> 소각 <input type="checkbox"/> 이관 <input type="checkbox"/> 기타( )
		폐 기 자 (분 실 자)	소 속 : 직 급 :                    성 명 :
		공 보 공 고	년 월 일 공고 제 - 호
		비 고	
<p>※ 공인을 최초로 등록한 때에는 <input type="checkbox"/>등록란에 V표를, 재등록한 때에는 <input type="checkbox"/>재등록란에 V표를 한다.</p> <p>※ 비고란은 관련문서의 등록번호 및 시행일자 등 참고사항을 기록한다.</p>			

[별지 제2호서식]

## 공 인 사 고 보 고 서

수 신 : 대구광역시달성군의회의회장

년 월 일

다음과 같이 사고가 발생하였기에 보고합니다.

보고자 인

1. 사 고 공 인 명	
2. 사 고 발 생 일 시 장 소	
3. 사 고 내 용	
4. 사 고 후 의 처 리 전 말	
5. 기 타	

## 인 영 부

날인일 공인명	년 2월 1일 현재	년 2월 1일 현재	년 2월 1일 현재	년 2월 1일 현재
	년 월 일 <input type="checkbox"/> 신조 <input type="checkbox"/> 개각	년 월 일 <input type="checkbox"/> 신조 <input type="checkbox"/> 개각	년 월 일 <input type="checkbox"/> 신조 <input type="checkbox"/> 개각	년 월 일 <input type="checkbox"/> 신조 <input type="checkbox"/> 개각
	년 월 일 <input type="checkbox"/> 신조 <input type="checkbox"/> 개각	년 월 일 <input type="checkbox"/> 신조 <input type="checkbox"/> 개각	년 월 일 <input type="checkbox"/> 신조 <input type="checkbox"/> 개각	년 월 일 <input type="checkbox"/> 신조 <input type="checkbox"/> 개각
	년 월 일 <input type="checkbox"/> 신조 <input type="checkbox"/> 개각	년 월 일 <input type="checkbox"/> 신조 <input type="checkbox"/> 개각	년 월 일 <input type="checkbox"/> 신조 <input type="checkbox"/> 개각	년 월 일 <input type="checkbox"/> 신조 <input type="checkbox"/> 개각
	년 월 일 <input type="checkbox"/> 신조 <input type="checkbox"/> 개각	년 월 일 <input type="checkbox"/> 신조 <input type="checkbox"/> 개각	년 월 일 <input type="checkbox"/> 신조 <input type="checkbox"/> 개각	년 월 일 <input type="checkbox"/> 신조 <input type="checkbox"/> 개각
	년 월 일 <input type="checkbox"/> 신조 <input type="checkbox"/> 개각	년 월 일 <input type="checkbox"/> 신조 <input type="checkbox"/> 개각	년 월 일 <input type="checkbox"/> 신조 <input type="checkbox"/> 개각	년 월 일 <input type="checkbox"/> 신조 <input type="checkbox"/> 개각
	년 월 일 <input type="checkbox"/> 신조 <input type="checkbox"/> 개각	년 월 일 <input type="checkbox"/> 신조 <input type="checkbox"/> 개각	년 월 일 <input type="checkbox"/> 신조 <input type="checkbox"/> 개각	년 월 일 <input type="checkbox"/> 신조 <input type="checkbox"/> 개각

□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대통령령)」(2023.6.27. 일부개정, 2023.9.28 시행) 제40조(공인) 지방자치단체의 기관에서 사용하는 공인(公印)에 관하여는 이 절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대구광역시 달성군 공인 조례」(2023.6.30. 일부개정·시행)

제3조(회계관계공무원의 공인) 이 조례에서 회계관계공무원의 공인이란 「대구광역시 달성군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제2조 별표 1에서 지정한 달성군 회계관계공무원의 공인을 말한다.

제4조(공인의 글씨 및 규격) ① 달성군 본청, 읍·면, 출장소, 소속기관의 공인(이하 “공인”이라 한다)의 규격과 인영의 내용은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군수직인을 전산처리하는 제세공과금 고지서 발급 등에 사용할 경우에는 그 원형을 축소(가로×세로 각 1.5cm) 인쇄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공인의 글씨는 한글로 하여 가로로 새기되, 군민이 쉽고 간명하게 알아볼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공인 구분에 따른 규격은 별표 1과 같이 한다.

제5조(각인) ① 공인에는 관서명과 직명을 새겨야 한다. 다만, 회계관계공무원의 공인에는 회계명을 함께 각인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에는 출납원의 직명은 수입금출납원, 일상경비출납원,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 물품출납원으로 구분하여 각인하여야 한다.

제6조(공인의 신조 개각) ① 공인의 신조개각은 정보통신과장이 이를 행하여 교부한다.

② 달성군 본청, 읍·면, 출장소, 소속기관(이하 “기관”이라 한다)의 장 및 회계관계공무원이 공인을 신조 또는 개각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정보통신과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보조기관으로서 공인을 가지고자 할 때에는 군수에게 그 사유를 상신하여 미리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7조(공인대장) 정보통신과장은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공인대장(이하 “공인대

장” 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공인의 신조개각 또는 폐기할 때마다 필요한 사항을 정리하게 하여야 한다.

**제9조(공고)** 공인 또는 전자이미지공인을 등록, 재등록 또는 폐기하였을 때에는 이를 달성군 공보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10조(신조 및 개각인영 보고) ① 삭제**

② 발간 배부된 인영부는 보안이 유지되도록 관리 보관하여야 한다.

**제11조(재등록 및 폐기) ①** 공인이 분실 또는 마멸되거나 갱신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공인을 재등록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사유 또는 그 밖의 사유로 공인을 폐기하고자 하는 때에는 공인대장에 공인폐기 내역을 기재하고, 그 공인을 해당 대구광역시 달성군 기록관에 공인폐기공고문과 함께 이관하여야 한다.

③ 전자이미지공인을 사용하는 기관은 공인을 재등록한 경우 즉시 사용 중인 전자이미지공인을 삭제하고, 재등록한 공인의 인영을 전자이미지공인으로 전환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④ 전자이미지공인을 사용하는 기관은 사용 중인 전자이미지공인의 인영의 원형이 제대로 표시되지 아니하는 경우 전자이미지공인을 재등록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제12조(공인의 사고 보고 등)** 공인보관자는 공인의 도난, 분실, 변조 등의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지체없이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동시에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 공인사고 보고서를 정보통신과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3조(공인보관자) ①** 공인의 보관자는 군에는 군수가 지정하는자, 출장소에는 출장소장이, 읍면에 있어서는 소속공무원중 업무담당 6급이 된다. 다만, 보조기관의 장과 회계관계공무원의 공인은 각각 그 직에 임명된 자가 관수자가 된다.

② 공인보관자는 상사의 명을 받아 공인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③ 공인보관자의 유고시에는 공인관수자로 미리 지정된 자가 그 사무를 대행한다.

**제14조(보관방법)** 공인은 항상 견고한 용기에 넣어 두어야 하며 집무시간 이외의 집무를 요하지 아니하는 시간 또는 공휴일에는 봉인을 해 두어야 한다.

제15조(공인의 날인) ① 공인의 날인은 공인보관자가 결재문서와 대조한후 날인 하여야 한다.

② 공인의 날인위치는 그 문서를 발행하는 기관명칭의 끝자가 공인의 가운데에 오도록 날인하여야 한다. 단, 등·초본 등 민원서류를 발급하는 경우에는 행정기관의 장의 표시 끝자 오른쪽 여백에 찍을 수 있다.

□ 「대구광역시 달성군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2023.11.10. 일부개정·시행)

제2조(회계관계공무원의 관직지정) ① 지방회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 제1항에 따른 회계책임관, 법 제45조제2항에 따른 통합지출관, 법 제46조에 따른 회계관계공무원을 별표 1과 같이 지정한다.

[별표 1]

달성군 회계관계 공무원 지정

관 직 명	본 칭	지방의회	제1관서
회 계 책 임 관	회계업무담당국장	-	-
징 수 관	세입업무담당국장	의회사무국장	관서의 장
분 입 징 수 관	세입업무담당과장 세외수입업무 주관 실·과장	-	세입업무담당과장
재 무 관	회계업무담당국장	의회사무국장	관서의 장
분 입 재 무 관	회계업무담당과장, 각 실·과장 (해당 재무관 또는 분입재무관이 지정한 일상경비만 해당함)	-	회계업무담당과장
총 팔 채 권 관 리 관	세입업무담당국장	-	-
채 권 관 리 관	소관 실·과장	의회사무국장	관서의 장
총 팔 부 채 관 리 관	예산업무담당실(과)장	-	-
부 채 관 리 관	소관 실·과장	의회사무국장	관서의 장
기 금 총 팔 관 리 관	예산업무담당실(과)장	-	-
통 합 지 출 관	회계업무담당과장	-	-
지 출 원	지출업무담당	지출업무담당	지출업무담당
수 입 금 출 납 원	세입업무담당	-	세입업무담당
일 상 경 비 출 납 원	각 실·과 서무업무담당	-	각 실·과 서무업무담당
세 입 세 출 외 원	지출업무담당자	지출업무담당자	지출업무담당자
세 현 금 출 납 원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 외에 세입세출외현금 실무담당자를 별도로 지정하여 반드시 2인 이상이 업무처리하여야 한다.		

#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1. 의안번호: 제2506호

2. 발 의 일: 2024년 6월 4일

3. 발 의 자: 전홍배 의원 등 12인

## 4. 제안사유

- 상임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상임위원회 간 균형을 조정하고, 행정복지위원회와 경제건설위원회의 부상임위원장을 의회운영위원회 당연직 상임위원으로 선임하는 규정을 신설하여 안정적인 상임위원회 운영을 도모하고자 함.

## 5. 주요내용

- 상임위원회의 소관 조정(안 제8조제2항제2호 및 제3호)
- 부상임위원장을 의회운영위원회 당연직 상임위원으로 선임 규정 신설(안 제9조제3항)

## 6.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 7. 검토의견

-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24.7.1.부터 시행하는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위원회 조례」에 따라 설치·운영되는 상임위원회의 원활하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 상임위원회 소관에 관하여 「대구광역시 달성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개정 및 조직개편에 맞춰 위원회 부서를 조정하고,
  
- 위원회 간 원활한 소통을 돕기 위해 행정복지위원회와 경제건설위원회의 부상임위원장을 의회운영위원회의 당연직 상임위원으로 선임하는 규정을 신설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의 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 붙임 1. 조례안 1부.  
2. 관계법령 1부. 끝.

# 대구광역시 달성군 위원회 조례

##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제2호와 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 2. 행정복지위원회

- 가. 법무감사실 소관에 속하는 사항
- 나. 기획전략국 소관에 속하는 사항
- 다. 자치행정국 소관에 속하는 사항
- 라. 주민복지국 소관에 속하는 사항
- 마. 읍·면사무소 소관에 속하는 사항
- 바. 달성군시설관리공단 소관에 속하는 사항
- 사. 달성교육재단 소관에 속하는 사항
- 아. 달성복지재단 소관에 속하는 사항

### 3. 경제건설위원회

- 가. 경제환경국 소관에 속하는 사항
- 나. 건설도시국 소관에 속하는 사항
- 다. 문화관광국 소관에 속하는 사항
- 라. 보건소 소관에 속하는 사항

마.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속하는 사항

바. 달성문화재단 소관에 속하는 사항

제9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제5조에 따라 호선된 상임위원회의 부위원장(이하 “부상임위원장”이라 한다)은 의회운영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이 된다.

제12조제6항 본문 중 “제5조에 따른 상임위원회의 부위원장(이하 “부상임위원장”이라 한다)”을 “부상임위원장”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202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8조(상임위원회의 직무와 그 소관) ① (생략)</p> <p>② 상임위원회의 소관은 다음과 같다.</p> <p>1. (생략)</p> <p>2. <u>행정복지위원회</u></p> <p style="padding-left: 20px;"><u>가. 법무감사실 소관에 속하는 사항</u></p> <p style="padding-left: 20px;"><u>나. 자치행정국 소관에 속하는 사항</u></p> <p style="padding-left: 20px;"><u>다. 교육복지국 소관에 속하는 사항</u></p> <p style="padding-left: 20px;"><u>라. 문화관광국 소관에 속하는 사항</u></p> <p style="padding-left: 20px;"><u>마. 읍·면사무소 소관에 속하는 사항</u></p> <p style="padding-left: 20px;"><u>바. 달성교육재단 소관에 속하는 사항</u></p> <p style="padding-left: 20px;"><u>사. 달성복지재단 소관에 속하는 사항</u></p> <p style="padding-left: 20px;"><u>아. 달성문화재단 소관에 속하는 사항</u></p> <p>3. <u>경제건설위원회</u></p> <p style="padding-left: 20px;"><u>가. 기획예산실 소관에 속하는 사항</u></p> <p style="padding-left: 20px;"><u>나. 정책추진단 소관에 속하는 사항</u></p> <p style="padding-left: 20px;"><u>다. 경제환경국 소관에 속하는 사항</u></p> <p style="padding-left: 20px;"><u>라. 건설도시국 소관에 속하는 사항</u></p> <p style="padding-left: 20px;"><u>마. 보건소 소관에 속하는 사항</u></p> <p style="padding-left: 20px;"><u>바.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속하는 사항</u></p> <p style="padding-left: 20px;"><u>사. 달성군시설관리공단 소관에 속</u></p>	<p>제8조(상임위원회의 직무와 그 소관)</p> <p>① (현행과 같음)</p> <p>② -----.</p> <p>1. (현행과 같음)</p> <p>2. <u>행정복지위원회</u></p> <p style="padding-left: 20px;"><u>가. 법무감사실 소관에 속하는 사항</u></p> <p style="padding-left: 20px;"><u>나. 기획전략국 소관에 속하는 사항</u></p> <p style="padding-left: 20px;"><u>다. 자치행정국 소관에 속하는 사항</u></p> <p style="padding-left: 20px;"><u>라. 주민복지국 소관에 속하는 사항</u></p> <p style="padding-left: 20px;"><u>마. 읍·면사무소 소관에 속하는 사항</u></p> <p style="padding-left: 20px;"><u>바. 달성군시설관리공단 소관에 속하는 사항</u></p> <p style="padding-left: 20px;"><u>사. 달성교육재단 소관에 속하는 사항</u></p> <p style="padding-left: 20px;"><u>아. 달성복지재단 소관에 속하는 사항</u></p> <p>3. <u>경제건설위원회</u></p> <p style="padding-left: 20px;"><u>가. 경제환경국 소관에 속하는 사항</u></p> <p style="padding-left: 20px;"><u>나. 건설도시국 소관에 속하는 사항</u></p> <p style="padding-left: 20px;"><u>다. 문화관광국 소관에 속하는 사항</u></p> <p style="padding-left: 20px;"><u>라. 보건소 소관에 속하는 사항</u></p> <p style="padding-left: 20px;"><u>마.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속하는 사항</u></p> <p style="padding-left: 20px;"><u>바. 달성문화재단 소관에 속하는 사항</u></p>

하는 사항

③ (생략)

제9조(상임위원) ①·② (생략)

<신설>

제12조(상임위원장) ① ~ ⑤ (생략)

⑥ 상임위원장이 사고 등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5조에 따른 상임위원회의 부위원장(이하 “부상임위원장”이라 한다)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다만, 상임위원장과 부상임위원장이 모두 사고 등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상임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상임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현행과 같음)

제9조(상임위원) ①·② (현행과 같음)

③ 제5조에 따라 호선된 상임위원회 부위원장(이하 “부상임위원장”이라 한다)은 의회운영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이 된다.

제12조(상임위원장) ① ~ ⑤ (현행과 같음)

⑥ ----- 부상임위원장-----  
-----  
-----  
-----  
-----  
-----  
-----  
-----  
-----  
-----  
-----  
-----

참고

상위 및 관계법령(발췌)

□ 「지방자치법(법률)」 (2023.3.21. 일부개정, 2023.9.22. 시행)

제64조(위원회의 설치) ① 지방의회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회를 둘 수 있다.

#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회의 규칙 전부개정규칙안 검토보고서

1. 의안번호: 제2507호

2. 발 의 일: 2024년 6월 4일

3. 발 의 자: 전홍배 의원 등 12인

## 4. 제안사유

- 「지방자치법」 및 같은 법 시행령,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위원회 조례」 등의 개정사항과 실제 의회 운영현황을 반영하여 의회 회의 진행과 내부규율 등에 관해 정비하는 것으로 의회운영의 책임성과 안정성을 높이고자 함.

## 5. 주요내용

- 의원등록·의석배정·개회식 등 의회운영에 관한 사항(안 제1장)
- 의장·부의장 선거·임기·직무 대리 등에 관한 사항(안 제2장)
- 회의의 개폐·의안 및 동의 등 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안 제3장)
- 위원회 운영 및 주민청구조례안 심사 등에 관한 사항(안 제4장)
- 예산안 등 및 결산 등의 심사에 관한 사항(안 제5장)
- 군수 또는 관계공무원의 출석·답변에 관한 사항(안 제6장)
- 의원 사직과 자격심사·질서·징계에 관한 사항(안 제7장~제9장)

## 6. 관계 법령

- 「지방자치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위원회 조례」, 「대구광역시 달성군 주민조례 발안에 관한 조례」

## 7. 검토의견

- 본 전부개정규칙안은 「지방자치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개정사항과 실제 의회 운영현황을 반영하고 '24.7.1.부터 시행하는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위원회 조례」에 따라 설치·운영되는 상임위원회 규정을 적용하기 위해 의회 회의 진행과 내부규율 등에 관해 정비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 주요내용은 상임위원회 설치·운영에 따른 의석배정, 의사일정 등 의회 운영과 관련한 사항과 상임위원회 회부·심사 절차, 연석회의 등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규정을 마련하고
- 의회운영의 안정성을 위해 의장·부의장 선거일 규정 신설과 상임위원회 운영으로 의장·부의장이 해당 직(職) 수행에 전념할 수 있도록 의장·부의장의 겸직을 제한하고 의회에서 심사할 의안은 개회 10일 전까지 제출하도록 하며

○ 의식 간소화를 위해 임시회의 개최식 생략 규정을 신설하고, 실제 의회 운영현황에 따라 자유발언 제출기한, 회의록의 보존 장소, 군정에 관한 질문 등에 대한 절차를 정비하여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의회 운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며 규칙의 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 붙임 1. 규칙안 1부.  
2. 관계법령 1부. 끝.

#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회의 규칙 전부개정규칙안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회의 규칙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회의 규칙

###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법」 제83조 등에 따라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회의의 진행과 내부규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회의의 민주적이고 능률적인 운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등록)**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은 당선인으로 결정된 후 당선증서를 의회사무국장(이하 “사무국장”이라 한다)에게 제시하고 등록하여야 한다.

**제3조(의석배정)** ① 의회 본회의장(이하 “본회의장”이라 한다)에 의원의 의석은 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의회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와 협의하여 이를 배정한다. 다만,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의장이 잠정적으로 정한다.

② 전국동시지방선거(이하 ‘지방선거’라 한다) 후 의장이 선출되기 전의 의석은 사무국장이 선거구 순서별 의원성명 가나다순과 그다음 비례대표 순서별 의원성명 가나다순에 따라 임시로 배정한다.

**제4조(개회식)** ① 의회는 집회일에 개회식을 행한다. 다만, 지방선거 후 최초의 임시회는 의장 및 의회 부의장(이하 “부의장”이라 한다) 선거 후에 개회식을 행한다.

② 정례회와 매년 처음 집회하는 임시회를 제외한 임시회의 경우에는 개회식을 생략할 수 있다.

**제5조(선서)** ① 의원은 임기 초에 의회에서 다음의 선서를 한다.

“나는 법령을 준수하고 주민의 권익신장과 복리증진 및 지역사회의 발전을 위하여 의원의 직무를 양심에 따라 성실히 수행할 것을 주민 앞에 엄숙히 선서합니다.”

② 의원 보궐선거·재선거 또는 비례대표직의 승계에 따라 해당 직위를 취득한 의원은 그 후 처음 출석하는 의회 본회의(이하 “본회의”라 한다)에서 선서한다.

**제6조(의회의 개폐선포)** 의회의 개회와 폐회는 의장이 선포한다.

**제7조(청가 및 결석)** ① 의원은 사고 등 부득이한 이유로 본회의나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위원회 조례」에 따른 상임위원회 또는 특별위원회(이하 이 각 위원회를 “위원회”라 한다)의 회의에 출석하지 못할 경우 그 이유와 기간을 기재한 청가서를 미리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의원이 체포 또는 구금된 경우에는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5조제1항에 따라 의장이 관계 수사기관장으로부터 영장의 사본과 함께 그 체포 또는 구금된 사실을 통지받은 경우에는 이로써 청가서를 미리 제출한 것으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른 의원의 청가(請假)는 5일 이내인 것은 의장이 허가하고, 5일을 초과하는 것은 의회의 의결로 허가한다. 다만, 폐회 중에는 의장이 허가할 수 있다.

③ 의원은 청가 기간이 경과한 후에도 본회의나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할 수 없을 경우 다시 청가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청가 기간 내에 본회의나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때에는 그날 이후 해당 청가는 그 효력을 상실한다.

④ 의원은 전항들에 따른 청가서를 제출하지 않고 사고 등 부득이한 이유로 본회의나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이유와 기간을 기재한 결석계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의원이 정당한 이유 없이 본회의나 위원회의 회의에 계속하여 2일 이상 결석하였을 때에는 의장 또는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해당 의원 또는 위원회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에게 출석을 요구하여야 한다.

⑥ 제5항에 따른 출석요구는 서면으로 하되, 긴급한 경우에는 구두로 할 수 있다.

## 제2장 의장과 부의장

**제8조(의장·부의장의 선거)** ① 의장과 부의장은 의회에서 무기명투표로 선거하되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득표로 당선된다.

② 제1항에 따른 선거는 지방선거 후 최초 집회일에 실시하며, 처음 선출된 의장 또는 부의장의 임기가 만료되는 때에는 그 임기만료일 전일(前日)까지 실시한다. 다만, 그날이 휴일·공휴일인 때에는 그 전일까지 실시한다.

③ 제1항에 따른 득표자가 없을 경우에는 2차투표를 하고, 2차투표에도 제1항에 따른 득표자가 없을 경우에는 최다득표자가 1명이면 최다득표자와 차점자에 대하여, 최다득표자가 2명 이상이면 최다득표자에 대하여 결선투표를 하여 다수득표자를 당선자로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결선투표 결과 득표수가 같을 경우에는 연장자를 당선자로 한다.

⑤ 부의장 선거는 의장 선거와 같은 날, 같은 장소에서 시행하되, 의장의 선거가 끝난 후에 제1항부터 제4항을 준용하여 실시한다.

**제9조(의장·부의장 선거에서의 후보자 등록)** ① 의장 또는 부의장으로 선출되고자 하는 의원은 해당 선거일 5일 전부터 선거일 3일 전 18시까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입후보자등록신청서를 작성하여 의회사무국에 서면으로 후보자 등록을 신청하여야 하고 사무국장은 그 신청서의 기재에 잘못이 없는 경우 즉시 이를 수리, 후보자 등록을

하여야 한다.

② 의원이 제1항에 따라 후보자 등록신청을 할 경우, 후보자를 중복하여 등록할 수 없다.

③ 제1항에 따라 후보자 등록을 마친 의원에 한하여 해당 선거에서 피선거권을 가지며 선거 당일 선거 전 본회의장에서 5분 이내 정견 발표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정견발표 순서는 후보자 등록순으로 한다.

④ 공정한 선거를 위하여 후보자의 정견발표에 대해 다른 의원의 질의·토론 등 일체의 발언은 허용되지 않으며 후보자인 발표자는 본인의 정견 외에 다른 후보자를 지지하거나 비방하는 발언을 할 수 없다.

**제10조(의장·부의장의 겸직 제한)** 의장·부의장은 의회의 다른 직을 겸직할 수 없다.

**제11조(의장·부의장의 임기)** ① 의장·부의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지방선거 후 처음 선출된 의장·부의장의 임기는 선출된 날부터 의원의 임기 개시 후 2년이 되는 날까지로 한다.

② 지방선거 후 처음 선출된 의장 또는 부의장의 임기가 폐회 중에 만료되고 제1항에 따른 임기만료 후 천재지변 등 특별한 사유로 의회가 집회하지 못한 때에는 그 의장과 부의장은 다음 회기에서 새로 의장 또는 부의장을 선출하는 날의 전일까지 재임한다.

③ 보궐선거로 당선된 의장 또는 부의장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2조(부의장의 의장직무대리)** 부의장의 의장직무대리 기간은 의장의 사고 발생이나 의장이 지정하는 때부터 의장이 직무수행 의사를 표시한 때까지로 한다.

**제13조(임시의장의 선거)** ① 의장과 부의장이 모두 사고가 있는 경우(궐위된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임시의장을 선출하여 의장의 직무를 대행하게 한다.

② 임시의장이 의장의 직무를 대행하는 기간은 제1항에 따라 임시의장으로 선출된 때부터 의장이나 부의장이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있게 될 때까지로 한다.

③ 임시의장의 선거는 의장·부의장 선거의 예에 따른다.

**제14조(의장·부의장의 사임)** ① 의장과 부의장은 의회의 동의를 받아 그 직을 사임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임에 대한 동의 여부는 토론하지 않고 표결한다.

### 제3장 회의

#### 제1절 회의의 개폐

**제15조(회기)** ① 의회의 회기는 의결로 이를 정한다. 다만, 의결로 정해진 회기를 다시 본회의의 의결로 연장 또는 단축할 수 있다.

② 의회의 회기는 집회 후 즉시 본회의의 의결로 이를 정하여야 한다.

③ 회기는 집회한 날부터 기산한다. 다만 공고된 집회일 이후 집회하여 제2항에 따라 회기를 정할 경우에는 공고된 집회일부터 소급하여 기산한다.

④ 회의에 부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을 때에는 회기 중에도 의결로써 폐회할 수 있다.

**제16조(개의)** 본회의는 본회의의 의결 또는 의장의 결정으로 그 개의(開議)시를 정한다. 이를 변경할 때도 또한 같다.

**제17조(회의에 관한 선포)** ① 개의·정회(停會)·산회(散會) 및 유회(流會)는 의장이 선포한다. 다만, 그날 자정까지 산회 또는 유회를 선포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자정이 경과됨과 동시에 자동 산회·유회된 것으로 본다.

② 의장은 제16조에 따른 개의시부터 1시간이 경과할 때까지 법 제72조제1항에 따른 의사정족수에 미치지 못할 경우에는 유회를 선포할 수 있다.

③ 의장이 개의를 선포하기 전이나 정회·산회 및 유회를 선포한 후에는 의사(議事)에 관한 발언을 할 수 없다.

**제18조(휴회)** ① 의회는 의결로 기간을 정하여 휴회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휴회 중이라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회의를 재개한다.

1. 대구광역시 달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요구하는 경우
2.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
3. 의장이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 제2절 의사일정

**제19조(연간 의회운영의 기본일정 수립)** 의장은 매년 12월 31일까지 다음 연도 의회의 연간운영에 대한 기본일정을 정하여야 한다. 다만, 지방선거 후 처음 구성되는 의회의 해당연도의 의회운영 기본일정은 7월 30일까지 정하여야 한다.

**제20조(작성)** ① 의장은 개의일시·회의에 부친 안건과 그 순서를 기재한 의사일정을 작성하여 미리 의원에게 배부한다. 다만, 회의를 속개하거나 재개할 경우에는 제외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의사일정의 작성은 운영위원회와 협의하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때에는 의장이 일시만을 의원에게 통지하고 개의할 수 있다.

③ 의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특히 긴급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회의일시만을 의원에게 통지하고 본회의를 개의할 수 있다.

**제21조(변경)** 의장은 본회의의 개의 후에는 재적의원 5분의 1 이상의 연서에 의한 동의로 본회의의 의결이 있거나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의장은 의사일정의 순서를 변경하거나 다른 안건을 의사일정에 추가할 수 있다. 이 경우 의원의 동의에는 이유서를 첨부하여야 하며 그 동의에 대하여는 토론하지 않고 표결한다.

제22조(미완료안건) 의장은 의사일정에 올린 안건에 대하여 회의를 열지 못하거나 회의를 마치지 못한 때에는 다시 그 일정을 정한다.

### 제3절 의안 및 동의

제23조(의안의 제출·발의) ① 의회에서 의결할 의안은 군수나 위원회 또는 의원이 제출하거나 발의한다. 이 경우 재적의원 5분의 1 이상의 연서로 발의하며 위원회의 의안 제출은 그 소관에 속하는 사항에 한정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의원이 조례안을 발의하는 때에는 발의의원과 찬성 의원을 구분하되, 해당 조례안의 제명의 부제로 발의의원의 성명을 기재하여야 한다. 다만, 발의의원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대표발의의원 1명을 분명하게 밝혀야 한다.

③ 의회에서 심사할 의안은 개회 10일 전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의장 또는 운영위원회에서 긴급하다고 판단할 때는 그렇지 않다.

④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의안의 제출 또는 발의는 전자문서 또는 서면으로 한다.

제24조(상임위원회 회부) ① 의장은 의안이 발의 또는 제출된 경우에는 의원에게 이를 인쇄하여 배부하거나 전자문서로 전송한 후 본회의에 보고하고,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여 그 심사가 끝난 후 본회의에 부친다. 다만, 폐회 또는 휴회 중에는 본회의 보고를 생략하고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다.

② 의장은 의안이 어느 상임위원회의 소관인지 명백하지 않는 경우에는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제3항에 따라 의장이 소관 상임위원회를 결정하여 회부한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의안은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지 않고 본회의에 직접 부칠 수 있다.

1. 의장·부의장 선거, 의원 사직 등 상임위원회의 사전심사가 필요하지 않은 의안

2. 의원이 발의한 건의안 또는 결의안 중 시급하게 본회의의 의결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의안

3. 그 밖에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안건

**제25조(특별위원회 회부)** ① 의원의 동의가 있거나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의안은 본회의의 의결을 받아 특별위원회에 회부한다.

② 의장은 제1항에 따라 특별위원회에 회부된 의안과 관련이 있는 다른 의안을 그 특별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다.

**제26조(조례안 예고)** ① 의장은 심사대상인 조례안에 대하여 그 취지·주요 내용·전문(신·구조문대비표를 포함한다)·의견제출에 관한 사항 등을 공보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5일 이상 게재하는 방법으로 예고(이하 “예고”라 한다)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고하지 않을 수 있다.

1. 「행정절차법」 제41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 군수가 조례안을 제출하기 전 이미 예고를 한 경우
3. 입법(조례의 제정·개정 또는 폐지)내용의 성질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예고의 필요가 없거나, 예고가 곤란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예고를 할 때에는 의장의 명의로 하되, 의장에게 미리 보고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예고에 필요한 사항은 「대구광역시 달성군 자치법규 등 입법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제27조(심사기간)** ① 의장은 제23조, 제24조 및 제25조에 따라 위원회에 의안을 회부할 경우 심사기간을 정하여 회부할 수 있다.

② 제23조, 제24조 및 제25조에 따라 회부된 의안에 대하여 위원회가 이유 없이 제1항에 따른 기간 내에 심사를 마치지 않을 경우에는 의장은 중간보고를 들은 후 다른 위원회에 회부하거나 바로 본회의에 부칠 수 있다.

**제28조(위원회의 제출의안)** 위원회가 제출한 의안은 그 위원회에 회부

하지 않고 본회의에서 처리한다. 다만, 의장은 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이를 다른 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다.

**제29조(동의의 의제성립)** 이 규칙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는 제외하고 동의는 동의자 외 1인 이상의 찬성으로 의제가 된다.

**제30조(수정동의)** ① 의안에 대한 수정동의를 그 안을 갖추고 이유를 붙여 재적의원 4분의 1 이상의 찬성자가 연서하여 미리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수정안은 제1항에 따른 찬성자의 연서 없이 의제가 된다.

③ 위원회는 소관 사항 외의 안건에 대하여는 수정안을 제출할 수 없다.

④ 의안에 대한 대안은 위원회에서 그 원안을 심사하는 동안에 제출하여야 하며, 의장은 이를 그 위원회에 회부한다.

**제31조(의안·동의의 철회)** ① 의원이 발의한 의안을 철회하고자 할 때는 발의자 전원이, 동의를 철회하고자 할 때는 동의한 사람이 청구하여야 한다. 다만, 본회의에서 의제가 된 후에는 본회의의 동의를 얻어야 하고, 위원회에서 의제가 된 후에는 위원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② 군수가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서 의제가 된 군수 제출의 의안을 수정 또는 철회하고자 할 때에는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제32조(변안)** 변안(飜案)동의를 본회의에서는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 그 의안을 발의할 때의 찬성자 3분의 2 이상의 동의로, 위원회에서는 그 위원회 위원의 동의로 발의한다. 그러나 본회의에서는 안건이 군수에게 이송된 후에는 변안할 수 없으며 위원회에서는 본회의에 의제가 된 후에는 변안할 수 없다.

**제33조(안전심의)** ① 본회의는 안건을 심의하는 경우 제안자의 취지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토론을 거쳐 표결한다. 다만, 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안건에 대하여는 그 위원회 위원장의 심사

보고를 듣고 질의·토론을 거쳐 표결하되 의결로 질의와 토론 또는 그중의 하나를 생략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안건의 제안자가 군수일 경우 취지설명의 충실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제2조 각 호에 따른 관계공무원(이하 “관계공무원”이라 한다)으로 하여금 대리하여 설명하게 할 수 있다.

③ 의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2건 이상의 안건을 일괄해서 의제로 할 수 있다.

**제34조(재회부)** 본회의는 제33조제1항에 따라 위원장의 심사보고를 받은 후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의결로 다시 안건을 같은 위원회에 재회부하거나 다른 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다.

**제35조(의안의 정리)** 본회의는 의안의 의결이 있은 후 서로 저촉되는 등 명백히 오류가 있다고 인정되는 조항·문구·숫자·그 밖에 정리가 필요한 사항이 있는 때는 이를 의장 또는 소관 위원회에 위임할 수 있다.

**제36조(의안의 이송)** 의회에서 의결된 의안은 의장이 이를 군수에게 지체 없이 이송한다.

#### 제4절 발언

**제37조(발언의 허가)** ① 의원이 발언하려고 할 때에는 미리 의장에게 통지하여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발언통지를 하지 않은 의원은 통지를 한 의원의 발언이 끝난 다음, 의장의 허가를 받아 발언할 수 있다.

③ 의사진행에 대한 발언은 발언요지를 의장에게 미리 통지하여야 하며, 의장은 의제에 직접 관계가 있거나 긴급히 처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것은 즉시 허가하고, 그 외의 것은 의장이 그 허가의 시기를 정한다.

**제38조(자유발언)** ① 의장은 본회의가 개의되는 경우 그 개회시부터 1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의원에게 의회가 심의 중인 의안과 청원, 그 밖에 중요한 관심 사안에 대한 의견을 발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5분 이내의 자유발언(이하 “5분 자유발언”이라 한다)을 허가할 수 있다.

② 5분 자유발언을 하고자 하는 의원은 늦어도 본회의 개의일 3일 전까지 그 발언 취지를 의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본회의 개의일 전일까지 그 발언 취지를 의장에게 신청할 수 있다.

③ 5분 자유발언의 발언자 수와 발언 순서는 의장이 정한다.

**제39조(발언의 장소)** ① 발언은 등단하여서 하되, 극히 간단한 사항에 대한 발언이나 토론을 위한 경우 또는 의장이 허가한 때에는 의석에서 발언할 수 있다.

② 의장은 필요한 때에는 의석에서 발언하는 의원을 등단하도록 할 수 있다.

**제40조(발언의 계속)** 발언은 그 도중에 다른 의원의 발언으로 정지되지 않으며 산회 또는 회의의 중지로 발언을 마치지 못한 때에는 다시 그 의사가 개시되면 의장은 먼저 그 발언을 계속하게 한다.

**제41조(의제 외 발언의 금지)** ① 모든 발언은 의제 외에 미치거나 허가 받은 발언의 성질에 반해서는 안 된다.

② 의장은 의원의 발언이 제1항에 따른 사항을 위반한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의원에 대하여 주의를 주거나 발언을 금지할 수 있다.

**제42조(발언 횟수의 제한)** 의원은 같은 의제에 대하여 두 차례에 한정하여 발언할 수 있다. 다만, 질의에 대하여 답변하거나 위원장·발의자 또는 동의자가 그 의제의 취지를 설명할 때와 의장이 허가할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제43조(발언 시간의 제한)** ① 의원의 발언 시간은 20분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질의·보충발언·의사진행발언 및 신상발언 시간은 10분을

초과할 수 없다.

② 의원이 시간제한으로 발언을 마치지 못한 부분에 대하여는 의장이 인정하는 범위에서 이를 회의록에 게재할 수 있다.

**제44조(보충보고)** 의장은 위원장 또는 그 위원장이 지명한 소수 의견자가 위원회의 보고를 보충하기 위하여 발언하려고 할 때에는 다른 발언에 우선하여 발언하게 할 수 있다.

**제45조(토론의 통지)** ① 의사일정에 올린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고자 하는 의원은 미리 반대 또는 찬성의 뜻을 의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의장은 제1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순서를 고려하여 가급적 반대자와 찬성자를 교대로 발언하게 하되 반대자에게 먼저 발언하게 한다.

**제46조(의장의 토론참가)** ① 의장이 토론에 참가할 때에는 의장석에서 물러나야 하며, 그 안건에 대한 표결이 끝날 때까지 의장석에 돌아갈 수 없다.

② 제1항에 따라 의장이 의장석에서 물러날 때에는 부의장이 의장을 대리한다.

**제47조(질의 또는 토론의 종결)** ① 질의 또는 토론이 끝났을 때에는 의장은 그 종결을 선포한다.

② 의원 2인 이상의 발언이 있는 후에는 의회의 의결로 의장은 질의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할 수 있다. 다만, 질의나 토론에 참가한 의원은 그 종결을 동의할 수 없다.

③ 제2항에 따른 동의는 토론하지 않고 표결한다.

## 제5절 표결

**제48조(표결의 선포)** ① 표결할 때에는 의장이 표결할 안건의 제목을 선포하여야 한다.

② 의장이 표결을 선포한 때에는 누구든지 그 안건에 대하여 발언할

수 없다.

**제49조(표결의 참가)** 표결할 때에는 회의장에 있지 않은 의원은 표결에 참가할 수 없다. 그러나 투표의 방법으로 표결할 때에는 투표함이 폐쇄될 때까지 표결에 참가할 수 있다.

**제50조(의사변경의 금지)** 의원은 표결할 때 표시한 의사(意思)를 변경할 수 없다.

**제51조(표결방법)** ① 표결할 때에는 의장이 의원으로 하여금 기립·거수 또는 기명투표에 따른 기록표결로 가부(可否)를 결정한다. 다만, 법 제74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무기명투표로 표결한다.

② 의장은 안건에 대한 이의 유무를 물어서 이의가 없다고 인정한 때에는 가결되었음을 선포할 수 있다. 그러나 이의가 있을 때에는 제1항에 따른 방법으로 표결하여야 한다.

**제52조(투표절차)** ① 투표할 때에는 각 의원은 먼저 명패를 명패함에 넣은 다음에 투표용지를 투표함에 투입한다.

② 투표할 때에는 의장은 의원 중에서 약간인의 감표위원을 지명하고 그 위원에 참여하여 투·개표상황을 점검 계산하게 한다.

③ 투표의 수가 명패의 수보다 많을 때에는 재투표를 한다. 다만, 투표의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때에는 그렇지 않다.

④ 감표위원은 다른 의원 모두의 투표가 끝난 후에 투표한다.

**제53조(수정안의 표결순서)** ① 동일의제에 대하여 수 개의 수정안이 제출된 때에는 의장은 다음 각 호에 따라 표결의 순서를 정한다.

1. 최후로 제출된 수정안부터 먼저 표결한다.

2. 의원의 수정안은 위원회의 수정안보다 먼저 표결한다.

3. 의원의 수정안이 수 개 있을 때에는 원안과 차이가 많은 것부터 먼저 표결한다.

② 수정안이 전부 부결된 때에는 원안을 표결한다.

제54조(표결결과 선포) 표결이 끝났을 때에는 의장은 그 결과를 선포한다.

## 제6절 회의록

제55조(회의록의 작성) ① 의회는 회의록을 작성하고 다음 사항을 기재한다.

1. 개회·폐회에 관한 사항
2. 개의·회의중지·산회의 일시
3. 의사일정
4. 출석의원의 성명 및 수
5. 출석공무원의 직과 성명
6. 의원의 이동과 의석의 배정·변동
7. 제반 보고 사항
8. 의안의 발의·제출·회부·환부·이송과 철회에 관한 사항
9. 회의에 부친 안건과 그 내용
10. 의사
11. 표결 및 기명투표의 투표자 성명
12. 서면질문과 답변서
13. 의원의 발언보충서
14. 그 밖에 본회의 또는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발언자의 발언에 관한 기록은 발언 내용 전부를 그대로 기록한다.

제56조(회의록의 서명과 보존) ① 회의록에는 의장·의장을 대리한 부의장·임시의장과 의회에서 선출된 2인 이상의 의원 및 사무국장이 서명한다. 다만, 선출된 의원은 한 회기 동안만 서명한다.

② 회의록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기록관에 영구 보존한다.

**제57조(자구의 정정과 이의의 결정)** ① 발언한 의원과 공무원, 그 밖에 발언자는 회의록이 배부된 날의 다음날 오후 5시까지 그 자구의 정정을 의장에게 요구할 수 있다. 그러나 그 발언의 취지를 변경할 수는 없다.

② 의원이 회의록에 기재한 사항과 회의록의 정정에 관하여 이의를 신청한 때에는 토론하지 않고 본회의의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제58조(회의록의 배부 및 공개)** ① 회의록은 의원에게 배부하고 주민에게 공개한다. 다만, 비밀로 할 필요가 있다고 의장이 인정하거나 의회에서 의결한 사항은 공개하지 않는다.

② 의원이 제1항에 따라 공개하지 않는 회의록 부분에 관하여 열람·복사 등을 신청한 때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의장은 이를 거절해서는 안 된다.

③ 제2항에 따라 열람·복사 등을 허가받은 의원은 타인에게 이를 열람하게 하거나 전재(轉載)·복사하게 해서는 안 된다.

④ 공개하지 않은 회의의 내용은 공표되어서는 안 된다. 다만, 본회의의 의결 또는 의장의 결정으로 제1항 단서에 따른 사유가 소멸하였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배부 및 공개되는 회의록에 게재할 수 있다.

⑤ 공표할 수 있는 회의록은 일반에게 유상으로 배포할 수 있다.

## 제4장 위원회

### 제1절 위원회 운영 일반

**제59조(의사일정과 개회일시)** 위원회의 의사일정과 개회일시는 위원장이 부위원장과 협의하여 정한다.

**제60조(본회의 중 위원회 개최)** 위원회는 본회의의 의결이 있거나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는 제외하고 본회의 중에는 개최할 수 없다.

제61조(위원회에서의 동의) 위원회에서의 동의는 특별히 다수의 찬성자가 필요하지 않으며 동의자 외 1인 이상의 찬성으로 의제가 된다.

제62조(위원회의 제안) ① 위원회는 그 소관에 속하는 사항에 관하여 조례안, 그 밖의 의안을 제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의안은 위원장이 제출자가 된다.

제63조(위원회의 심사) ① 위원회는 안건을 심사할 경우 먼저 제안자의 취지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토론, 축조(逐條)심사를 거쳐 표결한다. 다만, 위원회의 의결로 축조심사를 생략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심의하는 안건이 예산상의 조치를 수반하는 경우와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조례안에 대하여는 군수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제안자가 군수일 경우나 제2항에 따른 경우 설명의 충실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대리하여 설명하게 할 수 있다.

제64조(위원의 발언) ① 위원은 위원회에서 동일의제에 대하여 횟수 및 시간 등에 제한 없이 발언할 수 있다. 다만, 따로 발언의 방법을 의결한 때는 그렇지 않다.

② 위원은 위원회에서의 질의를 일문일답 방식으로 할 수 있다.

제65조(의장의 위원회 출석과 발언) 의장은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제66조(위원 아닌 의원의 발언 청취) 위원회는 안건에 관하여 위원 아닌 의원의 발언을 들을 수 있다.

제67조(위원회의 의사·의결정족수) ① 위원회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위원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일 때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제68조(연석회의) ① 위원회는 다른 위원회와 협의하여 연석회의를 열

고 의견을 교환할 수 있다. 그러나 표결은 할 수 없다.

② 연석회의를 열고자 하는 위원회는 위원장이 회의에 부칠 안전명과 이유를 서면으로 제시하여 다른 위원회의 위원장에게 요구하여야 한다.

③ 연석회의는 안전의 소관 위원회의 회의로 한다.

**제69조(공청회)** ① 위원회는 중요한 안전 또는 전문지식이 필요한 안전을 심사하기 위하여 공청회를 열고 이해관계자 또는 학식·경험이 있는 사람 등(이하 “진술인”이라 한다)으로부터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② 위원회에서 제1항에 따라 공청회를 열 때에는 안전·일시·장소·진술인·경비, 그 밖에 참고사항을 기재한 문서로 의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③ 진술인의 선정과 발언 시간은 위원회에서 정하며, 진술인의 발언은 그 의견을 듣고자 하는 안전의 범위를 넘어서는 안 된다.

④ 위원회가 주관하는 공청회는 그 위원회의 회의로 한다.

**제70조(심사보고서의 제출)** ① 위원회는 안전의 심사를 마친 때에는 심사 경과와 결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서면으로 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보고서(이하 “심사보고서”라 한다)에는 소수의견의 요지를 기재하여야 한다.

③ 의장은 심사보고서가 제출된 때에는 본회의에서 의제가 되기 전에 인쇄물이나 전자문서로 의원에게 배부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이를 생략할 수 있다.

**제71조(위원장의 보고)** ① 위원장은 소관 위원회에서 심사를 마친 안전이 본회의에서 의제가 된 때에는 위원회의 심사경과와 결과를 본회의에 보고한다.

② 위원장은 다른 위원으로 하여금 제1항에 따른 보고 또는 보충보고를 하게 할 수 있다.

③ 위원장이 제1항에 따른 보고를 하는 때에는 자기의 의견을 보태거나 더하여 할 수 없다.

**제72조(위원회 회의록)** ① 위원회는 위원회 회의록을 작성하고 다음 사항을 기재한다.

1. 개의·회의 중지와 산회의 일시
2. 의사일정
3. 출석위원의 성명
4. 출석한 위원 아닌 의원의 성명
5. 출석한 공무원·진술인의 성명
6. 심사안건명
7. 의사
8. 표결 수
9. 위원장의 보고
10. 위원회에서 종결되거나 본회의에 부칠 필요가 없다고 결정된 안건명과 그 내용
11. 그 밖에 위원회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위원회에서의 발언자의 발언에 관한 기록은 요약하여 기록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약한 기록이 발언자의 발언 취지를 벗어나거나 지나치게 요약되어서는 안 된다.

③ 위원회 회의록에는 위원장 또는 위원장을 대리한 부위원장이 서명한다.

**제73조(비공개 회의록 등의 열람과 대출 금지)** 위원장은 의원으로부터 비공개 회의록 또는 그 밖의 비밀참고자료에 대한 열람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심사·감사 또는 조사에 지장이 없는 한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의회 밖으로는 대출하지 못한다.

## 제2절 주민청구조례안 심사 등

제74조(청구인명부 이의신청) ①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이하 “주민조례발안법”이라 한다) 제11조제2항에 따른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의장은 같은 법 제11조제3항에 따라 운영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결정한다.

② 회기가 아닌 기간에 이의신청 심사를 위한 운영위원회 소집은 의장이 운영위원회의 위원장과 협의하여 정한다.

③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은 제33조에도 불구하고 본회의에 회부하지 않는다.

④ 주민조례발안법 제11조제4항에 따른 청구인명부 보정기간은 「대구광역시 달성군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제10조제3항을 준용하고, 이를 제외한 절차 등은 본 규칙을 따른다.

제75조(청구의 수리 및 각하) ① 주민조례발안법 제12조에 따른 주민조례청구의 수리 또는 각하를 하려는 경우에는 의장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② 의장은 주민조례발안법 제12조에 따라 주민조례청구를 각하할 경우에는 청구인의 대표자나 대표자가 지정한 대리인(이하 “청구대표자”라 한다)에게 의견제출의 기회를 주어야 하며, 의견 제출기한은 「대구광역시 달성군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제9조의2제2항을 준용한다.

③ 주민조례청구 수리 및 각하 심의를 위한 운영위원회의 소집 및 결정절차는 제74조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제76조(주민청구조례안의 심사) ① 주민조례발안법 제12조제4항에 따라 의장 명의로 발의한 주민청구조례안은 제23조에 따라 제출된 의안의 심사절차를 준용한다.

② 위원장은 주민조례발안법 제13조제2항에 따라 주민청구조례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청구대표자를 회의에 참석시켜 그 청구취지(청구대표자와의 질의·답변을 포함한다)를 들을 수 있다.

③ 위원장은 제2항에 따라 청구대표자를 회의에 참석시키고자 할 경우 주민청구조례안의 심사일 3일 전까지 청구대표자에게 출석을 요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출석 요청은 일시·장소 및 취지 등이 담긴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출석 요청에도 불구하고 청구대표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는 경우 제2항에 따른 청구취지를 듣지 않을 수 있다. 다만, 출석할 수 없는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청구대표자는 그 이유서를 심사일의 1일 전까지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이 경우 위원장은 심사일을 다시 지정하여 제2항에 따라 출석을 요청하여야 한다.

⑤ 청구대표자는 심사하려는 안건과 관련이 없는 발언을 해서는 안 된다.

## 제5장 예산안등과 결산등의 심사

제77조(예산안등의 심의) ① 의회에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또는 기금 운용계획변경(이하 “예산안등”이라 한다)이 제출되는 때에는 군수로부터 예산안등에 대한 제안설명을 들은 후 의장은 이를 소관별 상임위원회에 회부하고 소관별 상임위원회는 예비심사를 하여 그 결과를 의장에게 보고한다.

② 의장은 제1항에 따른 보고서를 첨부하여 예산안등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이하 “예결위원회”라 한다)에 회부하고 그 심사가 끝난 후 본회의에 부친다.

③ 의장은 예산안등을 소관별 상임위원회에 회부할 때에는 심사기간을 정할 수 있으며 해당 상임위원회가 이유 없이 그 기간 내에 심사를 마치지 않은 때에는 이를 바로 예결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다.

④ 제2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예결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이 용이하지 않을 경우에는 예산안등을 소관별 상임위원회가 예비심사하여 그 결과를 본회의에 보고한 후, 본회의에서 심사할 수 있다.

제78조(예산안등의 수정동의) 예결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예산안등의 수

정동의를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찬성으로 의제가 된다.

**제79조(예산안등의 의결)** ① 예산안등의 심사보고가 있는 때에는 예산안등의 부문별로 본회의에 부칠 수 있다.

② 예산안등의 각 부문의 의사가 끝나면 총액에 대하여 의결한다.

**제80조(예산안등의 재심요구)** 예결위원회에서 다시 심사할 필요가 있는 사항이 발견된 때에는 본회의의 의결로 그 사항에 한정하여 기간을 정하여 예결위원회에 재심사를 요구할 수 있다.

**제81조(결산등의 심사)** ① 의회에 결산과 기금의 결산(이하 “결산등”이라 한다)이 제출된 때에는 의장은 소관별 상임위원회에 회부하고 소관별 상임위원회는 예비심사결과를 의장에게 보고한다.

② 의장은 제1항에 따른 보고서를 첨부하여 결산등을 예결위원회에 회부하여 종합심사하게 한 후 그 결과를 본회의에 부치도록 한다.

③ 의장이 결산등을 소관별 상임위원회에 회부할 때에는 제77조제3항을 준용한다.

④ 제2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예결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이 용이하지 않을 경우에는 결산등을 소관별 상임위원회가 예비심사하여 그 결과를 본회의에 보고한 후, 본회의에서 심사할 수 있다.

⑤ 의장은 결산등의 심사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이 있는 경우에 본회의 의결 후 군수에게 변상 및 징계 조치 등 그 시정을 요구하고, 군수는 시정요구를 받은 사항을 지체 없이 처리하여 그 결과를 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제6장 군수 또는 관계공무원의 출석·답변

**제82조(군수 등의 출석요구)** ① 본회의는 그 의결로 군수 또는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발의는 재적의원 5분의 1 이상이 이유를 명시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그 의결로 의장을 거쳐 군수 또는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할 수 있다.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요구가 있을 때에는 군수 또는 관계공무원은 출석·답변하여야 하며, 군수가 출석요구를 받은 경우 출석할 수 없는 사유가 있거나 답변의 충실을 위하여 관계공무원의 대리출석이 필요한 때는 그 사유서를 의장에게 사전 제출한 후에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대리출석·답변하게 할 수 있다.

**제83조(군정에 관한 질문)** ① 본회의는 회기 중 기간을 정하여 군정 전반 또는 군정의 특정 분야를 대상으로 군수 또는 관계공무원에게 질문(이하 “군정질문”이라 한다)을 할 수 있다.

② 군정질문은 본 질문과 보충 질문을 병행하되, 본 질문은 일괄질문·일괄답변 또는 일문일답의 방식으로 하고 보충 질문은 본 질문의 범위에서 일문일답의 방식으로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군정질문의 시간과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일괄질문·일괄답변의 경우 질문과 답변은 각각 20분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필요한 경우 의장은 질문과 답변이 끝난 후에 질문자에게 1회에 한정하여 10분 이내의 보충 질문을 허가할 수 있다.

2. 일문일답의 경우 질문과 답변을 포함하여 60분을 초과할 수 없다.

3. 의장은 질문·답변 또는 질문자의 보충 질문이 끝난 후에 질문자가 아닌 다른 의원에게도 10분 이내의 보충 질문을 허가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보충 질문자 수 등은 의장이 정한다.

4. 제1호 후단과 제3호에 따른 보충 질문에 대한 답변은 질문별로 10분을 초과할 수 없다.

④ 군정질문을 하고자 하는 의원은 미리 질문의 요지를 기재한 질문요지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의장은 늦어도 질문시간 72시간 전까지 군수에게 도달되도록 그 질문요지서를 보내야 한다.

⑤ 군수는 질문시간 24시간 전까지 제4항에 따른 질문요지서에 대한 답변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의장은 해당 의원에게 이를 지체 없이 배부하여야 한다.

**제84조(군수에 대한 서면질문)** ① 의원이 군수에게 서면으로 질문하려

고 할 때에는 질문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의장은 지체 없이 이를 군수에게 이송한다.

② 군수는 질문서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서면으로 답변하여야 한다. 그 기간 내에 답변하지 못할 때에는 그 이유와 답변할 수 있는 기한을 의회에 통지 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답변에 대하여 보충하여 질문하고자 하는 의원은 서면으로 다시 질문할 수 있다.

**제85조(군수 등의 발언)** 군수 또는 관계공무원이 본회의나 위원회에서 발언하려고 할 때에는 미리 의장 또는 위원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 제7장 사직과 자격심사

**제86조(사직)** ① 의원이 사직하고자 할 때에는 본인이 서명한 사직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사직의 허가 여부는 토론하지 않고 표결한다. 다만, 폐회 중에는 의장이 이를 허가할 수 있다.

③ 의원은 제출한 사직서에 대하여 의회의 의결 또는 의장의 허가가 있기 전까지 철회할 수 있다.

**제87조(청구서의 위원회 회부와 답변서 제출)** ① 의장은 의원(이하 “청구의원”이라 한다)으로부터 법 제91조에 따라 다른 의원(이하 “심사대상 의원”이라 한다)의 자격심사 청구가 있을 때에는 그 청구서를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하고 그 부분(副本)을 심사대상 의원에게 송달하고 기일을 정하여 답변서를 제출하게 한다.

② 심사대상 의원이 천재지변 또는 질병, 그 밖에 사고 때문에 기일 내에 답변서를 제출하지 못함을 증명한 때에는 의장은 다시 기일을 정하여 답변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제88조(답변서의 위원회 심사 등)** ① 의장이 답변서를 접수한 때에는 이를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한다.

② 윤리특별위원회는 청구서와 답변서로 심사한다. 다만, 기일 내에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은 때에는 청구서만으로 심사할 수 있다.

③ 윤리특별위원회는 심사보고서를 의장에게 제출하고, 의장은 이를 본회의에 부쳐야 한다.

④ 본회의에서 자격상실의 의결이 있을 때에는 의장은 그 결과를 청구의원과 심사대상 의원에게 송부한다.

**제89조(당사자의 심문과 발언 등)** ① 윤리특별위원회는 필요한 때에는 의장을 거쳐 청구의원과 심사대상 의원을 출석하게 하여 심문할 수 있다.

② 청구의원과 심사대상 의원은 윤리특별위원회의 허가를 받아 이 위원회에 출석·발언할 수 있다. 이 경우 심사대상 의원은 다른 의원으로 하여금 출석·발언하게 할 수 있다.

③ 심사대상 의원은 본회의에서 스스로 변명하거나 다른 의원으로 하여금 변명하게 할 수 있다.

## 제8장 질서

**제90조(경호)** ① 의장은 의회의 경호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운영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관할 경찰관서에 대하여 경찰관의 파견을 미리 요구할 수 있으며, 의회의 경호가 급히 필요한 경우에는 의장이 단독으로 사태가 해결될 때까지 경찰관의 파견을 즉시 요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경찰관은 의장의 지휘를 받아 회의장(본회의장과 위원회의 회의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밖에서 경호한다.

**제91조(회의의 질서 유지)** 의원은 회의장 안에서 다음과 같은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기관이나 의회의 위신을 손상시키는 언동
2. 의사진행을 지연시키거나 방해할 목적으로 신문, 잡지, 간행물 그 밖의 문서를 낭독하는 행위

3. 의장의 허가를 받지 않은 자료·문서 등의 인쇄물 배포 및 녹음·녹화·촬영 행위
4. 음식물의 섭취와 흡연
5. 회의와 관계없는 물품의 휴대 반입
6. 그 밖에 폭력의 행사 등 회의장의 질서를 문란시키는 행위

**제92조(회의장 출입의 제한)** 회의장 안에는 의원·관계공무원, 그 밖에 의안심의에 필요한 사람과 의장이 허가한 사람 외에는 출입할 수 없다.

**제93조(방청의 허가)** 의장은 방청권을 발행하여 방청을 허가한다.

**제94조(방청석의 구분 및 방청권의 종별)** ① 방청석은 일반석과 기자석으로 구분한다.

② 방청권의 종별은 일반방청권, 단체방청권, 장기방청권으로 한다.

**제95조(방청권의 교부 및 기재)** ① 방청권은 의장의 지휘를 받아 사무국장이 그 수를 정하여 이를 교부한다.

② 단체방청권은 교육기관, 그 밖의 단체의 신청에 따라 단체로 방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그 대표 또는 책임자에게 교부한다.

③ 장기방청권은 보도기관 종사자나 업무상 방청이 특히 필요한 관서의 직원에게 교부하며, 장기방청권을 교부받은 사람은 그 회기 동안 방청할 수 있다.

④ 방청인은 방청권에 주소·성명·직업 및 연령 등 소정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제96조(방청의 제한)**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방청을 허가하지 않는다.

1. 흥기 또는 위험한 물품을 휴대한 사람
2. 주취(酒醉)자
3. 그 밖에 회의 진행이나 질서유지에 방해가 될 사유가 현저히 있는 사람 또는 그 사유가 현저하지 않더라도 의장이 방청을 허가하지 않

을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

② 의장이 필요한 때에는 경찰관 또는 의회직원으로 하여금 방청인의 휴대품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③ 의장은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방청인 수를 제한할 필요가 있거나 또는 방청석의 여유가 없을 때에는 방청권을 소지한 사람에게 방청을 제한할 수 있다.

**제97조(방청인의 준수사항)** 방청인은 다음과 같은 행위를 할 수 없다.

1. 회의장 안으로 진입하는 행위
2. 회의 진행을 방해할 수 있는 물품을 휴대하거나 반입하는 행위
3. 음식물의 섭취나 흡연행위
4. 신문 또는 그 밖에 서적류 등을 소리내어 읽는 행위
5. 의장의 허가 없는 녹음·녹화·촬영행위
6. 회의장 내 발언에 대하여 공공연하게 가부를 표명하거나 박수하는 행위
7. 그 밖에 소란 등 회의의 진행을 방해하는 행위

**제98조(녹음·녹화 등)** ① 회의를 공개하지 않기로 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의장 또는 위원장은 의회에 등록된 기자에 한정하여 회의장 안(본 회의장은 의장의 허가가 없는 한 방청석에 한정한다)에서의 녹음·녹화·촬영 및 중계방송(이하 “녹음등”이라 한다)을 허용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녹음 등을 하고자 하는 사람은 매회기 초에 허가신청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위원회에서 녹음 등에 대한 허가를 받고자 할 경우에는 위원장에게 구두로 신청할 수 있다.

③ 의회 사무직원의 기록보존 등의 업무와 관련된 회의장 내에서의 녹음·녹화·촬영은 절차상 제한 없이 할 수 있다.

④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녹음 등을 하는 사람은 회의장 질서를 문란하게 해서는 안 된다.

## 제9장 징계

**제99조(징계의 요구와 회부)** ① 의장은 법 제98조에 따른 징계대상의원 (이하 “징계대상자”라 한다)이 있어 징계 요구를 받을 때에는 이를 본회의에 보고하고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한다.

② 위원장은 소속 위원 중에서 징계대상자가 있을 때에는 의장에게 이를 보고한다. 이 경우 의장은 제1항에 따라 본회의에 보고하고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한다.

③ 의원이 징계대상자에 대한 징계를 요구할 때에는 재적의원 5분의 1 이상의 찬성으로 징계 사유를 기재한 징계요구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95조제2항에 따라 모욕을 당한 의원이 징계대상자에 대한 징계를 요구할 때에는 찬성의원이 필요하지 않으며 해당 의원이 징계 사유를 기재한 징계청구서를 의장에게 제출한다.

④ 제3항에 따른 징계 요구가 있을 때에는 의장은 이를 본회의에 보고하고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한다.

⑤ 제1항과 제2항 및 제4항에도 불구하고 의장은 징계대상행위가 지극히 경미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본회의에 바로 부칠 수 있다.

**제100조(징계의 요구 또는 회부의 시한)** ① 의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날부터 폐회 또는 휴회 기간을 제외한 3일 이내에 징계의 요구를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야 한다. 제99조제5항에 따라 본회의에 바로 부칠 때도 또한 같다.

1. 제99조제1항 및 제3항 본문의 경우 : 징계 요구를 받은 날(징계요구서를 제출받은 날을 포함한다) 또는 의장이 그 징계대상자가 있는 것을 알게 된 날

2. 제99조제2항의 경우 : 위원장의 보고를 받은 날

3. 제99조제3항 단서의 경우 : 징계청구서를 제출받은 날

② 제99조제2항에 따른 위원장의 징계대상자 보고와 같은 조 제3항

에 따른 징계 요구는 징계 사유가 발생한 날 또는 그 징계대상자가 있는 것을 알게 된 날부터 5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다만, 폐회 중에 그 징계대상자가 있을 경우에는 다음 회 집회일부터 3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제101조(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구성·운영)** ① 윤리특별위원회에는 의원 겸직 및 영리 행위 등에 관해 의장이 자문하거나 윤리특별위원회가 의원의 윤리강령과 윤리실천규범 준수 여부 및 징계에 관해 자문하기 위한 윤리심사자문위원회를 둔다.

②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윤리심사자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 규칙」으로 정한다.

**제102조(의사의 비공개)** 징계에 관한 회의는 공개하지 않는다.

**제103조(심문)** 윤리특별위원회는 의장을 거쳐 징계대상자와 관계의원을 출석하게 하여 심문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늦어도 이 위원회 개최일의 3일 전까지 출석요구서를 해당 의원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제104조(발언 및 변명)** ① 관계의원이 발언하고자 할 때에는 의장 또는 윤리특별위원회의 위원장의 허가를 받아 스스로 변명하거나 다른 의원으로 하여금 변명을 하게 할 수 있다.

② 징계대상자는 본회의 또는 윤리특별위원회에 출석할 수 없으나 의장 또는 윤리특별위원회의 위원장의 허가를 받아 스스로를 변명하거나 다른 의원으로 하여금 변명을 하게 할 수 있다.

**제105조(징계의 의결과 선포)** ① 의장은 윤리특별위원회로부터 징계에 대한 심사보고서를 접수한 때에는 지체 없이 본회의에 부쳐 이를 의결하여야 한다.

② 징계를 의결한 때에는 의장은 공개회의에서 이를 선포한다.

## 부 칙

이 규칙은 202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h2 style="margin: 0;">입 후 보 자 등 록 신 청 서 (제9조 관련)</h2>					
주	소				
성	명	생	년	월	일
전 화 번 호		(주택) (핸드폰)			
등록신청		직위			
<p style="text-align: center;">「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회의규칙」 제9조에 따라 위와 같이 후보 등록을 신청합니다.</p>					
<div style="display: flex; justify-content: space-between; width: 80%; margin: 0 auto;"> <div style="text-align: center;"> <p>년      월      일</p> <p>신청인</p> </div> <div style="text-align: center;"> <p>(서명)</p> </div> </div>					
<p>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사무국장 귀하</p>					

## □ 「지방자치법(법률)」(2023.3.21. 일부개정, 2023.9.22. 시행)

**제26조(주민에 대한 정보공개)** ① 지방자치단체는 사무처리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하여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의회의 의정활동, 집행기관의 조직, 재무 등 지방자치에 관한 정보(이하 “지방자치정보”라 한다)를 주민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주민의 지방자치정보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기 위하여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공개된 지방자치정보를 체계적으로 수집하고 주민에게 제공하기 위한 정보공개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다.

**제28조(조례)**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

② 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은 그 법령의 하위 법령에서 그 위임의 내용과 범위를 제한하거나 직접 규정할 수 없다.

**제37조(의회의 설치)** 지방자치단체에 주민의 대의기관인 의회를 둔다.

**제38조(지방의회의원의 선거)** 지방의회의원은 주민이 보통·평등·직접·비밀선거로 선출한다.

**제39조(의원의 임기)** 지방의회의원의 임기는 4년으로 한다.

**제43조(겸직 등 금지)** ⑥ 지방의회의 의장은 지방의회의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겸한 직을 사임할 것을 권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방의회의 의장은 제66조에 따른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그 의견을 존중하여야 한다.

1. 제5항에 해당하는 데도 불구하고 겸한 직을 사임하지 아니할 때
2. 다른 직을 겸하는 것이 제44조제2항에 위반된다고 인정될 때

⑦ 지방의회의 의장은 지방의회의원의 행위 또는 양수인이나 관리인의 지위가 제5항 또는 제6항에 따라 제한되는지와 관련하여 제66조에 따른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44조(의원의 의무)** ① 지방의회의원은 공공의 이익을 우선하여 양심에 따라 그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② 지방의회의원은 청렴의 의무를 지며, 지방의회의원으로서의 품위를 유지하여야 한다.

③ 지방의회의원은 지위를 남용하여 재산상의 권리·이익 또는 직위를 취득하거나 다른 사람을 위하여 그 취득을 알선해서는 아니 된다.

④ 지방의회의원은 해당 지방자치단체, 제43조제5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단체 및 그 기관·단체가 설립·운영하는 시설과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거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지방의회의원은 소관 상임위원회의 직무와 관련된 영리행위를 할 수 없으며, 그 범위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45조(의원체포 및 확정판결의 통지)** ① 수사기관의 장은 체포되거나 구금된 지방의회 의원이 있으면 지체 없이 해당 지방의회의 의장에게 영장의 사본을 첨부하여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② 각급 법원장은 지방의회의원이 형사사건으로 공소(公訴)가 제기되어 판결이 확정되면 지체 없이 해당 지방의회의 의장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제47조(지방의회의 의결사항)** ① 지방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의결한다.

1. 조례의 제정·개정 및 폐지
2. 예산의 심의·확정
3. 결산의 승인
4. 법령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사용료·수수료·분담금·지방세 또는 가입금의 부과와 징수
5. 기금의 설치·운용
6.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재산의 취득·처분
7.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시설의 설치·처분
8. 법령과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예산 외의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
9. 청원의 수리와 처리
10. 외국 지방자치단체와의 교류·협력
11. 그 밖에 법령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②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 각 호의 사항 외에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의회에서 의결되어야 할 사항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제47조의2(인사청문회)**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직위 중 조례로 정하는 직위의 후보자에 대하여 지방의회에 인사청문을 요청할 수 있다.

1. 제123조제2항에 따라 정무직 국가공무원으로 보하는 부시장·부지사
2.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1조에 따른 행정시장
3. 「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따른 지방공사의 사장과 같은 법 제76조에 따른 지방공단의 이사장
4.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 전단에 따른 출자·출연 기관의 기관장

② 지방의회의 의장은 제1항에 따른 인사청문 요청이 있는 경우 인사청문회를 실시

한 후 그 경과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③ 그 밖에 인사청문회의 절차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제52조(의회규칙)** 지방의회는 내부운영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한 것 외에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제53조(정례회)** ① 지방의회는 매년 2회 정례회를 개최한다.

② 정례회의 집회일, 그 밖에 정례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54조(임사회)** ① 지방의회의원 총선거 후 최초로 집회되는 임사회는 지방의회 사무처장·사무국장·사무과장이 지방의회의원 임기 개시일부터 25일 이내에 소집한다.

③ 지방의회의 의장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조례로 정하는 수 이상의 지방의회의원이 요구하면 15일 이내에 임사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다만, 지방의회의 의장과 부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임사회를 소집할 수 없을 때에는 지방의회의원 중 최다선의원이, 최다선의원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그 중 연장자의 순으로 소집할 수 있다.

④ 임사회 소집은 집회일 3일 전에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56조(개회·휴회·폐회와 회의일수)** ① 지방의회의 개회·휴회·폐회와 회기는 지방의회가 의결로 정한다.

② 연간 회의 총일수와 정례회 및 임사회의 회기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57조(의장·부의장의 선거와 임기)** ① 지방의회는 지방의회의원 중에서 시·도의 경우 의장 1명과 부의장 2명을, 시·군 및 자치구의 경우 의장과 부의장 각 1명을 무기명투표로 선출하여야 한다.

② 지방의회의원 총선거 후 처음으로 선출하는 의장·부의장 선거는 최초집회일에 실시한다.

③ 의장과 부의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제58조(의장의 직무)** 지방의회의 의장은 의회를 대표하고 의사(議事)를 정리하며, 회의장 내의 질서를 유지하고 의회의 사무를 감독한다.

**제59조(의장 직무대리)** 지방의회의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의장이 그 직무를 대리한다.

**제60조(임시의장)** 지방의회의 의장과 부의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임시의장을 선출하여 의장의 직무를 대행하게 한다.

**제61조(보궐선거)** ① 지방의회의 의장이나 부의장이 궐위(闕位)된 경우에는 보궐선거를 실시한다.

② 보궐선거로 당선된 의장이나 부의장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63조(의장 등을 선거할 때의 의장 직무 대행)** 제57조제1항, 제60조 또는 제61조제1항에 따른 선거(이하 이 조에서 “의장등의 선거”라 한다)를 실시할 때 의장의 직무

를 수행할 사람이 없으면 출석의원 중 최다선의원이, 최다선의원이 2명 이상이면 그 중 연장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이 경우 직무를 대행하는 지방의회의원이 정당한 사유 없이 의장등의 선거를 실시할 직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다음 순위의 지방의회의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4조(위원회의 설치)** ① 지방의회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소관 의안(議案)과 청원 등을 심사·처리하는 상임위원회
2. 특정한 안건을 심사·처리하는 특별위원회

③ 위원회의 위원은 본회의에서 선임한다.

**제65조(윤리특별위원회)** ① 지방의회의원의 윤리강령과 윤리실천규범 준수 여부 및 징계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윤리특별위원회를 둔다.

② 제1항에 따른 윤리특별위원회(이하 “윤리특별위원회”라 한다)는 지방의회의원의 윤리강령과 윤리실천규범 준수 여부 및 지방의회의원의 징계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전에 제66조에 따른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그 의견을 존중하여야 한다.

**제66조(윤리심사자문위원회)** ① 지방의회의원의 겸직 및 영리행위 등에 관한 지방의회의 의장의 자문과 지방의회의원의 윤리강령과 윤리실천규범 준수 여부 및 징계에 관한 윤리특별위원회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윤리특별위원회에 윤리심사자문위원회를 둔다.

②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위원은 민간전문가 중에서 지방의회의 의장이 위촉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회의규칙으로 정한다.

**제67조(위원회의 권한)** 위원회는 그 소관에 속하는 의안과 청원 등 또는 지방의회가 위임한 특정한 안건을 심사한다.

**제69조(위원회에서의 방청 등)** ① 위원회에서 해당 지방의회의원이 아닌 사람은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이 장에서 “위원장”이라 한다)의 허가를 받아 방청할 수 있다.

② 위원장은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방청인의 퇴장을 명할 수 있다.

**제70조(위원회의 개최)** ① 위원회는 본회의의 의결이 있거나 지방의회의 의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할 때에 개최한다.

② 폐회 중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도 지방의회의 의장 또는 위원장에게 이유서를 붙여 위원회 개최를 요구할 수 있다.

**제71조(위원회에 관한 조례)** 위원회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한 것 외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제72조(의사정족수)** ① 지방의회는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한다.

② 회의 참석 인원이 제1항의 정족수에 미치지 못할 때에는 지방의회의 의장은 회의를 중지하거나 산회(散會)를 선포한다.

**제73조(의결정족수)** ① 회의는 이 법에 특별히 규정된 경우 외에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지방의회의 의장은 의결에서 표결권을 가지며, 찬성과 반대가 같으면 부결된 것으로 본다.

**제74조(표결방법)** 본회의에서 표결할 때에는 조례 또는 회의규칙으로 정하는 표결방식에 의한 기록표결로 가부(可否)를 결정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무기명투표로 표결한다.

1. 제57조에 따른 의장·부의장 선거
2. 제60조에 따른 임시의장 선출
3. 제62조에 따른 의장·부의장 불신임 의결
4. 제92조에 따른 자격상실 의결
5. 제100조에 따른 징계 의결
6. 제32조, 제120조 또는 제121조, 제192조에 따른 재의 요구에 관한 의결
7. 그 밖에 지방의회에서 하는 각종 선거 및 인사에 관한 사항

**제75조(회의의 공개 등)** ① 지방의회의 회의는 공개한다. 다만, 지방의회의원 3명 이상이 발의하고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한 경우 또는 지방의회의 의장이 사회의 안녕질서 유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지방의회의 의장은 공개된 회의의 방청 허가를 받은 장애인에게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76조(의안의 발의)** ① 지방의회에서 의결할 의안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조례로 정하는 수 이상의 지방의회의원의 찬성으로 발의한다.

② 위원회는 그 직무에 속하는 사항에 관하여 의안을 제출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의안은 그 안을 갖추어 지방의회의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라 지방의회의원이 조례안을 발의하는 경우에는 발의 의원과 찬성 의원을 구분하되, 해당 조례안의 제명의 부제로 발의 의원의 성명을 기재하여야 한다. 다만, 발의 의원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대표발의 의원 1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⑤ 지방의회의원이 발의한 제정조례안 또는 전부개정조례안 중 지방의회에서 의결된 조례안을 공포하거나 홍보하는 경우에는 해당 조례안의 부제를 함께 표기할 수 있다.

**제77조(조례안 예고)** ① 지방의회는 심사대상인 조례안에 대하여 5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그 취지, 주요 내용, 전문을 공보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게재하는 방법으로 예고할 수 있다.

② 조례안 예고의 방법,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회의규칙으로 정한다.

**제79조(회기계속의 원칙)** 지방의회에 제출된 의안은 회기 중에 의결되지 못한 것 때문에 폐기되지 아니한다. 다만, 지방의회의원의 임기가 끝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80조(일사부재의의 원칙)** 지방의회에서 부결된 의안은 같은 회기 중에 다시 발의하거나 제출할 수 없다.

**제81조(위원회에서 폐기된 의안)** ① 위원회에서 본회의에 부칠 필요가 없다고 결정된 의안은 본회의에 부칠 수 없다. 다만, 위원회의 결정이 본회의에 보고된 날부터 폐회나 휴회 중의 기간을 제외한 7일 이내에 지방议회의 의장이나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면 그 의안을 본회의에 부쳐야 한다.

② 제1항 단서의 요구가 없으면 그 의안은 폐기된다.

**제82조(의장이나 의원의 제척)** 지방议회의 의장이나 지방议회의원은 본인·배우자·직계존비속(直系尊卑屬) 또는 형제자매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에 관하여는 그 의사에 참여할 수 없다. 다만, 의회의 동의를 있으면 의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제83조(회의규칙)** 지방의회는 회의 운영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한 것 외에 필요한 사항을 회의규칙으로 정한다.

**제84조(회의록)** ① 지방의회는 회의록을 작성하고 회의의 진행내용 및 결과와 출석의원의 성명을 적어야 한다.

② 회의록에는 지방议회의 의장과 지방의회에서 선출한 지방议회의원 2명 이상이 서명하여야 한다.

③ 지방议회의 의장은 회의록 사본을 첨부하여 회의 결과를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

④ 지방议회의 의장은 회의록을 지방议회의원에게 배부하고, 주민에게 공개한다. 다만, 비밀로 할 필요가 있다고 지방议회의 의장이 인정하거나 지방의회에서 의결한 사항은 공개하지 아니한다.

**제89조(의원의 사직)** 지방의회는 그 의결로 소속 지방议회의원의 사직을 허가할 수 있다. 다만, 폐회 중에는 지방议회의 의장이 허가할 수 있다.

**제90조(의원의 퇴직)** 지방议회의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에는 지방议회의원의 직에서 퇴직한다.

1. 제4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직에 취임할 때
2. 피선거권이 없게 될 때(지방자치단체의 구역변경이나 없어지거나 합한 것 외의 다른 사유로 그 지방자치단체의 구역 밖으로 주민등록을 이전하였을 때를 포함한다)
3. 징계에 따라 제명될 때

**제91조(의원의 자격심사)** ① 지방议회의원은 다른 의원의 자격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면 재적의원 4분의 1 이상의 찬성으로 지방议회의 의장에게 자격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② 심사 대상인 지방议회의원은 자기의 자격심사에 관한 회의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으나, 의결에는 참가할 수 없다.

**제92조(자격상실 의결)** ① 제91조제1항의 심사 대상인 지방议회의원에 대한 자격상실

의결은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② 심사 대상인 지방의회의원은 제1항에 따라 자격상실이 확정될 때까지는 그 직을 상실하지 아니한다.

**제94조(회의의 질서유지)** ① 지방의회의 의장이나 위원장은 지방의회의원이 본회의나 위원회의 회의장에서 이 법이나 회의규칙에 위배되는 발언이나 행위를 하여 회의장의 질서를 어지럽히면 경고 또는 제지를 하거나 발언의 취소를 명할 수 있다.

② 지방의회의 의장이나 위원장은 제1항의 명에 따르지 아니한 지방의회의원이 있으면 그 지방의회의원에 대하여 당일의 회의에서 발언하는 것을 금지하거나 퇴장시킬 수 있다.

③ 지방의회의 의장이나 위원장은 회의장이 소란하여 질서를 유지하기 어려우면 회의를 중지하거나 산회를 선포할 수 있다.

**제95조(모욕 등 발언의 금지)** ① 지방의회의원은 본회의나 위원회에서 다른 사람을 모욕하거나 다른 사람의 사생활에 대하여 발언해서는 아니 된다.

② 본회의나 위원회에서 모욕을 당한 지방의회의원은 모욕을 한 지방의회의원에 대하여 지방의회에 징계를 요구할 수 있다.

**제96조(발언 방해 등의 금지)** 지방의회의원은 회의 중에 폭력을 행사하거나 소란한 행위를 하여 다른 사람의 발언을 방해할 수 없으며, 지방의회의 의장이나 위원장의 허가 없이 연단(演壇)이나 단상(壇上)에 올라가서는 아니 된다.

**제97조(방청인의 단속)** ① 방청인은 의안에 대하여 찬성·반대를 표명하거나 소란한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지방의회의 의장은 회의장의 질서를 방해하는 방청인의 퇴장을 명할 수 있으며, 필요하면 경찰관서에 인도할 수 있다.

③ 지방의회의 의장은 방청석이 소란하면 모든 방청인을 퇴장시킬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방청인 단속에 필요한 사항은 회의규칙으로 정한다.

**제98조(징계의 사유)** 지방의회는 지방의회의원이 이 법이나 자치법규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면 윤리특별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의결로써 징계할 수 있다.

**제99조(징계의 요구)** ① 지방의회의 의장은 제98조에 따른 징계대상 지방의회의원이 있어 징계 요구를 받으면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한다.

② 제95조제1항을 위반한 지방의회의원에 대하여 모욕을 당한 지방의회의원이 징계를 요구하려면 징계사유를 적은 요구서를 지방의회의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지방의회의 의장은 제2항의 징계 요구를 받으면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한다.

**제100조(징계의 종류와 의결)** ① 징계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1. 공개회의에서의 경고
2. 공개회의에서의 사과
3. 30일 이내의 출석정지

#### 4. 제명

② 제1항제4호에 따른 제명 의결에는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제101조(징계에 관한 회의규칙)** 징계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한 사항 외에 필요한 사항은 회의규칙으로 정한다.

**제142조(예산의 편성 및 의결)** ② 시·도의회는 제1항의 예산안을 회계연도 시작 15일 전까지, 시·군 및 자치구의회는 회계연도 시작 10일 전까지 의결하여야 한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의 예산안을 제출한 후 부득이한 사유로 그 내용의 일부를 수정하려면 수정예산안을 작성하여 지방의회에 다시 제출할 수 있다.

**제148조(재정부담이 따르는 조례 제정 등)** 지방의회는 새로운 재정부담이 따르는 조례나 안전을 의결하려면 미리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제149조(예산의 이송·고시 등)** ① 지방의회 의장은 예산안이 의결되면 그날부터 3일 이내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이송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예산을 이송받으면 지체 없이 시·도에서는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시·군 및 자치구에서는 시·도지사에게 각각 보고하고, 그 내용을 고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121조에 따른 재의 요구를 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50조(결산)**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출납 폐쇄 후 80일 이내에 결산서와 증명서류를 작성하고 지방의회가 선임한 감사위원의 감사의견서를 첨부하여 다음 해 지방의회 승인을 받아야 한다. 결산의 심사 결과 위법하거나 부당한 사항이 있는 경우에 지방의회는 본회의 의결 후 지방자치단체 또는 해당 기관에 변상 및 징계 조치 등 그 시정을 요구하고, 지방자치단체 또는 해당 기관은 시정 요구를 받은 사항을 지체 없이 처리하여 그 결과를 지방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승인을 받으면 그날부터 5일 이내에 시·도에서는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시·군 및 자치구에서는 시·도지사에게 각각 보고하고, 그 내용을 고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감사위원의 선임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법률)」 (2023.8.16. 일부개정, 2024.2.17. 시행)

**제3조(주민조례청구권의 보장 등)**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구권자가 지방의회에 주민조례청구를 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청구권자가 전자적 방식을 통하여 주민조례청구를 할 수 있도록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하여야 한다. 이 경우 행정안전부장관은 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하는 데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구권자의 주민조례청구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주민조례청구의 요건, 참여·서명 방법 및 절차 등을 홍보하여야 한다.

**제11조(이의신청 등)** ① 지방의회 의장은 청구인명부의 서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

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서명을 무효로 결정하고 청구인명부를 수정한 후 그 사실을 즉시 대표자에게 알려야 한다.

1. 청구권자가 아닌 사람의 서명
- 2.누구의 서명인지 확인하기 어려운 서명
- 3.제7조제1항에 따른 서명요청권이 없는 사람이 받은 서명
- 4.한 사람이 동일한 사안에 대하여 2개 이상의 유효한 서명을 한 경우 그 중 하나의 서명을 제외한 나머지 서명
- 5.제8조제1항에 따른 서명요청 기간 외의 기간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서명요청 제한 기간에 받은 서명
- 6.제9조제2항에 따라 청구권자가 서명 취소를 요청한 서명
- 7.강요·속임수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받은 서명

② 청구인명부의 서명에 이의가 있는 사람은 제10조제2항에 따른 열람기간에 지방의회의 의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③ 지방의회의 의장은 제2항에 따른 이의신청을 받으면 제10조제2항에 따른 열람기간이 끝난 날부터 14일 이내에 이를 심사·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이의신청이 이유 있다고 결정하는 경우에는 청구인명부를 수정하고, 그 사실을 이의신청을 한 사람과 대표자에게 알려야 하며, 이의신청이 이유 없다고 결정하는 경우에는 그 뜻을 즉시 이의신청을 한 사람에게 알려야 한다.

④ 지방의회의 의장은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결정으로 청구인명부에 서명한 청구권자의 수가 제5조제1항에 따른 청구요건에 미치지 못할 때에는 대표자로 하여금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의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기간 내에 보정하게 할 수 있다.

- 1.시·도: 15일 이상
- 2.시·군 및 자치구: 10일 이상

⑤ 제4항에 따라 보정된 청구인명부의 제출, 공표 및 이의신청 등에 관하여는 제10조 및 이 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제10조제1항 본문 중 “제8조제1항에 따른 서명요청 기간”은 “제11조제4항에 따른 보정 기간”으로 본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이의신청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12조(청구의 수리 및 각하)** ① 지방의회의 의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제4조, 제5조 및 제10조제1항(제11조제5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요건에 적합한 경우에는 주민조례청구를 수리하고, 요건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주민조례청구를 각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수리 또는 각하 사실을 대표자에게 알려야 한다.

1. 제11조제2항(같은 조 제5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하며, 이하 같다)에 따른

이의신청이 없는 경우

2. 제11조제2항에 따라 제기된 모든 이의신청에 대하여 같은 조 제3항(같은 조 제5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결정이 끝난 경우

② 지방의회의 의장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의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제1항에 따라 주민조례청구를 수리하거나 각하하여야 한다.

1. 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제10조제2항에 따른 열람기간이 끝난 날(제11조제5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에는 보정된 청구인명부에 대한 열람기간이 끝난 날)부터 3개월 이내

2. 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모든 이의신청에 대하여 제11조제3항에 따른 심사·결정이 끝난 날(제11조제5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에는 보정된 청구인명부의 서명에 제기된 모든 이의신청에 대한 심사·결정이 끝난 날)부터 3개월 이내

③ 지방의회의 의장은 제1항에 따라 주민조례청구를 각하하려면 대표자에게 의견을 제출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④ 지방의회의 의장은 「지방자치법」 제76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이 조 제1항에 따라 주민조례청구를 수리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지방의회의 의장 명의로 주민청구조례안을 발의하여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주민조례청구의 수리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지방의회의 회의규칙으로 정한다.

**제13조(주민청구조례안의 심사 절차)** ① 지방의회는 제12조제1항에 따라 주민청구조례안이 수리된 날부터 1년 이내에 주민청구조례안을 의결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본회의 의결로 1년 이내의 범위에서 한 차례만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 지방의회는 심사 안건으로 부쳐진 주민청구조례안을 의결하기 전에 대표자를 회의에 참석시켜 그 청구의 취지(대표자와의 질의·답변을 포함한다)를 들을 수 있다.

③ 「지방자치법」 제79조 단서에도 불구하고 주민청구조례안은 제12조제1항에 따라 주민청구조례안을 수리한 당시의 지방의회의원의 임기가 끝나더라도 다음 지방의회의원의 임기까지는 의결되지 못한 것 때문에 폐기되지 아니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주민청구조례안의 심사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지방의회의 회의규칙으로 정한다.

## □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법률)」(2022.1.11. 일부개정, 2022.7.12.시행)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공기관”이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을 말한다.

2. “기록물”이란 공공기관이 업무와 관련하여 생산하거나 접수한 문서·도서·대장·카드·도면·시청각물·전자문서 등 모든 형태의 기록정보 자료와 행정박물(行政博物)을 말한다.

3. “기록물관리”란 기록물의 생산·분류·정리·이관(移管)·수집·평가·폐기·보존·공개·활용 및 이에 부수되는 모든 업무를 말한다.

4. “기록물관리기관”이란 일정한 시설 및 장비와 이를 운영하기 위한 전문인력을 갖추고 기록물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을 말하며, 영구기록물관리기관, 기록관 및 특수기록관으로 구분한다.

**제4조(공무원 등의 의무)** ① 모든 공무원과 공공기관의 임직원은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기록물을 보호·관리할 의무를 갖는다.

② 공공기관 및 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은 기록물이 국민에게 공개되어 활용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기록물의 전자적 생산·관리)** 공공기관 및 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은 기록물이 전자적으로 생산·관리되도록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하며, 전자적 형태로 생산되지 아니한 기록물도 전자적으로 관리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3조(기록관)** ① 공공기관의 기록물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은 기록관을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다만, 제14조에 따른 특수기록관을 설치·운영하는 공공기관의 경우에는 그 공공기관 내에 기록관을 설치할 수 없다.

② 기록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관할 공공기관의 기록물관리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시행
2. 해당 공공기관의 기록물관리
3. 기록관이 설치되지 아니한 관할 공공기관의 기록물관리
4. 해당 공공기관의 기록물에 대한 정보공개 청구의 접수
5. 관할 공공기관의 기록물관리에 대한 지도·감독 및 지원
6. 관할 공공기관의 기록물관리에 관한 교육·훈련
7. 다른 기록물관리기관과의 연계·협조
8. 그 밖에 기록물관리에 관한 사항

**제16조(기록물 생산의 원칙)** ① 공공기관은 효율적이고 책임 있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업무의 입안단계부터 종결단계까지 업무수행의 모든 과정 및 결과가 기록물로 생산·관리될 수 있도록 업무과정에 기반한 기록물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기록물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및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 「지방자치법 시행령(대통령령)」 (2023.12.14. 일부개정·시행)

**제56조(지방의회의 회의록 작성 및 보고)** ① 지방의회는 회의 내용을 속기나 녹음으로 기록·보존해야 한다.

- ② 지방의회의 의장은 회의가 끝난 날부터 30일 이내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법 제84조제3항에 따라 회의 결과를 통보해야 한다.
- ③ 제2항에 따라 회의 결과를 전달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안전부장관이나 시·도지사가 요구하는 경우에는 그 요구일부부터 5일 이내에 회의록 사본을 첨부하여 보고해야 한다.
- ④ 법 및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회의록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회의규칙으로 정한다.

**제60조(의원의 사직)** ① 지방의회의원은 사직하려면 본인이 서명하거나 도장을 찍은 사직서를 지방의회의 의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 ② 법 제89조제1항에 따른 사직의 허가 여부는 토론하지 않고 표결한다.

**제61조(의원의 자격심사)** ① 법 제91조제1항에 따라 지방의회의원의 자격심사 청구를 받은 의장은 그 청구서의 복사본을 심사 대상인 지방의회의원(이하 이 조에서 “심사대상의원”이라 한다)에게 송달하고 기간을 정하여 답변서를 제출하도록 해야 한다.

- ② 지방의회의 의장은 심사대상의원이 정당한 이유 없이 제1항에 따른 기간 내에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청구서만으로 해당 지방의회의원의 자격을 심사할 수 있다.
- ③ 지방의회는 필요한 경우 자격심사를 청구한 지방의회의원과 심사대상의원을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질문할 수 있다.
- ④ 심사대상의원은 다른 지방의회의원으로 하여금 출석하여 발언하게 할 수 있다.

## □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2022.7.5 일부개정 2022.7.12 시행)

**제10조(기록관의 설치)** ① 법 제13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공기관으로서 그 기관 및 소속 기관의 연간 기록물 생산량이 1천권 이상이거나 보존대상 기록물이 5천권 이상인 공공기관을 말한다. 다만, 제6호에 해당하는 공공기관(「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행정시는 제외한다)이 법 제11조제3항에 따라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을 설치·운영하는 경우(공동 설치한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기록관을 따로 두지 않고 그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이 기록관의 업무를 수행한다.

6. 시·군·구(지방자치단체인 구를 말한다) 및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제주자치도에 두는 행정시

## □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위원회 조례(조례)」(2023.11.10 전부개정 2024.7.1 시행)

**제2조(위원회의 종류)**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는 「지방자치법」 제64조제2항에 따라 상임위원회와 특별위원회를 둘 수 있다.

**제8조(상임위원회의 직무와 그 소관)** ① 상임위원회는 그 소관에 속하는 의안과 청원심사 등을 처리하는 직무를 수행한다.

② 상임위원회의 소관은 다음과 같다.

1. 의회운영위원회

- 가. 의회운영에 관한 사항
- 나. 제2조에 따른 특별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 다. 의회사무국 소관에 속한 사항
- 라. 회의규칙 및 의회운영과 관련된 각종 규칙에 관한 사항

2. 행정복지위원회

- 가. 법무감사실 소관에 속하는 사항
- 나. 자치행정국 소관에 속하는 사항
- 다. 교육복지국 소관에 속하는 사항
- 라. 문화관광국 소관에 속하는 사항
- 마. 읍·면사무소 소관에 속하는 사항
- 바. 달성교육재단 소관에 속하는 사항
- 사. 달성복지재단 소관에 속하는 사항
- 아. 달성문화재단 소관에 속하는 사항

3. 경제건설위원회

- 가. 기획예산실 소관에 속하는 사항
- 나. 정책추진단 소관에 속하는 사항
- 다. 경제환경국 소관에 속하는 사항
- 라. 건설도시국 소관에 속하는 사항
- 마. 보건소 소관에 속하는 사항
- 바.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속하는 사항
- 사. 달성군시설관리공단 소관에 속하는 사항

③ 접수된 의안 또는 청원에 대한 상임위원회의 소관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에는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소관 상임위원회를 결정한다. 이 경우 의장은 필요에 따라 의회운영위원회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16조(예산결산특별위원회)** ① 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처리하기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본회의 의결로 둘 수 있다.

- 1. 예산안
- 2. 세입세출결산
- 3. 기금운용계획안 및 기금결산
- 4. 그 밖에 의장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처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7조(윤리특별위원회)** ① 의회는 「지방자치법」 제65조제1항에 따라 의원의 윤리강령

과 윤리실천규범 준수 여부 및 징계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윤리특별위원회를 둔다.

② 제1항에 따른 윤리특별위원회(이하 “윤리특별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6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 「대구광역시 달성군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조례)」

(2024.2.13. 일부개정, 2024.2.17. 시행)

**제9조의2(수리·각하 결정 및 통지)** ① 의장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이내에 해당 주민조례청구에 대해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수리·각하 여부를 결정하고 그 사실을 대표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1. 법 제1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경우 :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열람기간이 끝난 날(법 제11조제5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에는 보정된 청구인명부의 열람기간이 끝난 날)부터 3개월

2. 법 제1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경우 : 모든 이의신청에 대하여 법 제11조제3항에 따른 심사·결정이 끝난 날(법 제11조제5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에는 보정된 청구인명부의 서명에 제기된 모든 이의신청에 대한 심사·결정이 끝난 날)부터 3개월

② 의장은 제1항에 따라 주민조례청구를 각하하려면 미리 대표자에게 의견을 제출할 기회를 주어야 하되, 의견 제출기한은 14일로 한다.

③ 의장은 제출된 청구인명부상 서명수(제7조제1항 단서에 따른 전자서명수 포함)가 제3조제1항에 따른 서명수에 현저하게 미달하는 경우에는 법 제11조에 따른 서명 유효·무효 심사 및 이의신청과 제2항에 따른 의견제출 절차를 생략하고 각하할 수 있다.

④ 의장은 청구인명부의 유효한 서명이 제3조제1항에 따른 서명수 이상으로 확인된 경우 나머지 청구인명부의 서명확인을 보류하고 제1항에 따라 수리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제10조(이의신청 등)** ① 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청구인명부의 서명에 이의를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이의신청서를 의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법 제11조제3항에 따른 심사·결정에 대한 절차는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회의 규칙」을 준용한다.

③ 법 제11조제4항에 따른 청구인명부의 보정기간은 10일로 한다.

#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윤리심사자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 규칙안 검토보고서

1. 의안번호: 제2508호

2. 발 의 일: 2024년 6월 4일

3. 발 의 자: 전홍배 의원 등 12인

## 4. 제안사유

- 「지방자치법」 제66조 및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회의 규칙」 제 101조에 따라 윤리특별위원회에 설치·운영해야 하는 윤리심사자문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 5. 주요내용

-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구성 및 위원회의 기능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2조~제3조)
- 위원의 임기와 위원장·부위원장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4조~제5조)
- 위원회의 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6조)
- 위원·위원이었던 사람에 대한 비밀 엄수 사항 규정(안 제7조)

## 6.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회의 규칙」

## 7. 검토의견

- 본 규칙안은 「지방자치법」 제66조 및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회의규칙」에 따라 설치·운영되는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구성과 그 운영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세부적으로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 주요내용은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기능을 명문화하고, 회의 운영 절차를 구체화하였으며, 상위법령과 관계법규에 맞게 조문을 정비한 것입니다.
- 본 규칙안은 윤리심사자문위원회가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의원의 겸직 및 영리행위, 윤리강령과 윤리실천규범 준수 여부 및 징계에 관해 의장 및 윤리특별위원회의 자문에 응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규칙의 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 붙임 1. 규칙안 1부.  
2. 관계법령 1부. 끝.

#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윤리심사자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 규칙안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회의 규칙」 제101조에 따라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구성 등) ①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5명의 민간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특정 성별이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의장(이하 “의장” 이라 한다)이 위촉한다.

1. 변호사·교수
2. 전직 지방의회의원·공무원
3. 그 밖에 지방자치 등 관련 분야 전문가

제3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자문에 응한다.

1.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의원(이하 “의원” 이라 한다)의 겸직 및 영리 행위 등에 관한 의장의 자문
2. 의원의 윤리강령과 윤리실천규범 준수 여부에 관한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윤리특별위원회(이하 “윤리특별위원회” 라 한다)의 자문

3. 의원의 징계에 관한 윤리특별위원회의 자문

4. 그 밖에 위 각 호에 준하는 사항에 대한 의장이나 윤리특별위원회의 자문

**제4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의 임기는 위촉된 날부터 2년으로 하고,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5조(위원장과 부위원장)** ①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과 부위원장(이하 “부위원장”이라 한다)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장이 선출될 때까지는 위원 중 연장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③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위원회의 회의운영 등)** ① 위원회는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나 윤리특별위원회의 위원장 또는 재적 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요구가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하지 않는다. 다만, 자문사항에 관한 의결 내용은 공개할 수 있으며, 위원회의 의결이 있는 경우에는 회의를 공개한다.

④ 위원장은 위원회 의결 후 3일 이내 그 결과를 윤리특별위원회를

거쳐 의장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제7조(비밀엄수 의무)** 위원회의 위원 또는 위원이었던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제8조(준용)**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이 규칙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대구광역시 달성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를 따른다.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구성과 그 위원 위촉에 관한 경과조치 및 그 위원 임기에 관한 적용례)** 이 규칙 시행 당시 의회규칙 제27호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 제83조의2에 따른 윤리심사자문위원회와 그 위원은 이 규칙 제2조에 따라 구성되고 위촉된 것으로 보되, 그 위원에 대해서도 이 규칙 제4조를 적용한다.

**제3조(윤리심사자문위원회 위원장·부위원장의 선출 및 그 임기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의회규칙 제27호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 제83조의2에 따른 윤리심사자문위원회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이 규칙 제5조에 따라 선출된 것으로 보되, 그 임기는 각 선출된 날부터 기산한다.

**참고****상위 및 관계법령(발췌)****□ 「지방자치법(법률)」 (2023.3.21. 일부개정, 2023.9.22. 시행)**

**제43조(겸직 등 금지) ⑥** 지방의회의 의장은 지방의회의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겸한 직을 사임할 것을 권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방의회의 의장은 제66조에 따른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그 의견을 존중하여야 한다.

1. 제5항에 해당하는 데도 불구하고 겸한 직을 사임하지 아니할 때
2. 다른 직을 겸하는 것이 제44조제2항에 위반된다고 인정될 때

**⑦** 지방의회의 의장은 지방의회의원의 행위 또는 양수인이나 관리인의 지위가 제5항 또는 제6항에 따라 제한되는지와 관련하여 제66조에 따른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65조(윤리특별위원회) ①** 지방의회의원의 윤리강령과 윤리실천규범 준수 여부 및 징계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윤리특별위원회를 둔다.

**②** 제1항에 따른 윤리특별위원회(이하 “윤리특별위원회”라 한다)는 지방의회의원의 윤리강령과 윤리실천규범 준수 여부 및 지방의회의원의 징계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전에 제66조에 따른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그 의견을 존중하여야 한다.

**제66조(윤리심사자문위원회) ①** 지방의회의원의 겸직 및 영리행위 등에 관한 지방의회의 의장의 자문과 지방의회의원의 윤리강령과 윤리실천규범 준수 여부 및 징계에 관한 윤리특별위원회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윤리특별위원회에 윤리심사자문위원회를 둔다.

**②**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위원은 민간전문가 중에서 지방의회의 의장이 위촉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회의규칙으로 정한다.

**□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회의 규칙(의회규칙)」 (2022.2.28. 일부개정·시행, 개정 전)**

**제83조의2(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구성·운영) ①** 의회에 의원의 윤리강령과 윤리실천 규범 준수 여부 및 징계에 관한 윤리특별위원회의 자문에 응하기 위한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이하 “자문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대구광역시 달성군 보조금지원 표지판 설치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1. 의안번호: 제2501호

2. 발 의 일: 2024년 6월 4일

3. 발 의 자: 김보경 의원 등 3인

## 4. 제안사유

- 대구광역시 달성군이 보조금을 지원 중인 공사나 시설 또는 단체 등에 대하여 주민들이 쉽게 알 수 있도록 보조금지원 표지판을 설치하여 시설의 공공활용도를 높이고 보조금 집행의 투명성 강화 및 공정한 운영과 관리를 도모하고자 함.

## 5. 주요내용

-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 및 적용범위 규정(안 제2조~제3조)
- 표지판의 설치조건 및 표지판의 종류·내용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4조~제5조)
- 공사·시설·운영표지판의 설치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6조~제8조)
- 표지판의 설치장소, 비용, 관리감독 및 평가 등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9조~제11조)

## 6. 관계법령

-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건설산업기본법」 제42조, 「대구광역시 달성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 7. 검토의견

- 본 조례안은 달성군이 보조금을 지원 중인 공사나 시설 또는 단체 등에 보조금지원 표지판을 설치함으로써 군민들이 인지하여 시설의 공공활용도 제고 및 공정한 운영과 관리를 도모하여 투명하게 보조금 집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 지방보조금은 공공보다 민간이 서비스를 공급하기에 유리하고 외부 효과 창출 가능성이 우수한 경우에 지원하여 공공서비스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으로, 지방보조금의 규모와 사회적 역할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 하지만 지속적으로 지방보조금의 목적 외 사용, 부정수급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어, 투명하고 공정한 운영과 관리가 필요합니다.
- 중앙정부에서도 「보조금 부정수급 근절방안」, 「지방보조금 관리 강화 방안」 등의 계획 발표,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개정 등 제도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며, ‘국민감시단 운영’, ‘주민참여예산위원회 등 주민대표기구 활용’ 등과 같이 보조사업 감시와 관련하여 주민참여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 이에 ' 24. 5월 기준 91개 지방자치단체에서 조례를 제정하였으며, 대구광역시의 경우 본청, 남구, 서구에서 제정되었습니다.
- 본 조례안은 보조금표지판을 설치하여 주민들이 지방보조금 사용처를 쉽게 인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사업 홍보 및 감시하는 효과도 있어 보조금 운영의 투명성 제고에 이바지할 것으로 판단되어 조례의 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 붙임 1. 조례안 1부.  
2. 관계법령 1부. 끝.

# 대구광역시 달성군 보조금지원 표지판 설치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구광역시 달성군이 보조금을 지원 중인 공사나 시설 또는 단체 등에 대하여 보조금지원 표지판을 설치함으로써 시설의 활용도를 높이고 보조금의 공정한 운영과 관리를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보조금”이란 법인·단체(영리·비영리를 불문한다. 이하 같다) 또는 개인 등이 수행하는 사무 또는 사업 등의 조성·지원이라는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대구광역시 달성군(이하 “군”이라 한다)이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과 「대구광역시 달성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그 법인·단체 또는 개인 등(이하 “보조사업자”라 한다)에게 교부하는 자금을 말한다.
2. “보조금지원 표지판(이하 “표지판”이라 한다)”이란 군의 보조금이 지원된 공사나 시설 또는 단체 등임을 알 수 있도록 문자와 기호 등을 사용하여 공사 현장이나 시설 또는 단체 등의 내·외부에 설치한 제5조제1항에 따른 각종 표지판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① 이 조례는 군의 보조금을 지원받아 시설자금이나 운영비로 사용하는 보조사업자에 대하여 적용한다.

- ② 표지판의 설치가 필요한 보조사업자 및 이를 설치하기 위한 보조금액의 기준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4조(표지판의 설치조건 부여) 대구광역시 달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보조사업자에게 보조금 교부 결정 시,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라 표지판을 설치하도록 조건을 붙일 수 있다.

**제5조(표지판의 종류 및 내용)** ① 이 조례에 따라 설치하는 표지판은 공사표지판, 시설표지판, 운영표지판으로 나눈다.

② 제1항에 따른 각종 표지판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보조사업명 및 보조사업자 명칭
2. 군수가 정하는 보조사업의 주요 내용 및 보조금액
3. 그 밖에 군수가 정하는 사항

**제6조(공사표지판의 설치)** ① 보조금을 지원받아 공사를 수행하는 보조사업자 중 제3조제2항 및 제4조에 따라 표지판을 설치할 의무가 있는 보조사업자는 제5조에 따라 설치한 공사표지판에 제5조제2항 각 호의 사항 외에 보조금을 지원받아 시행하는 공사임을 표기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보조사업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42조제1항에 따른 건설공사 표지에 제1항에 따른 사항을 표기함으로써 제1항에 따른 공사표지판의 설치 및 사항의 표기를 갈음할 수 있다.

**제7조(시설표지판의 설치)** ① 보조금을 지원받아 시설을 건립한 보조사업자 중 제3조제2항 및 제4조에 따라 표지판을 설치할 의무가 있는 보조사업자는 제5조에 따라 설치한 시설표지판에 제5조제2항 각 호의 사항 외에 보조금을 지원받아 건립한 시설임을 표기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보조사업자는 시설상징물에 제1항에 따른 사항을 표기함으로써 제1항에 따른 시설표지판의 설치 및 사항의 표기를 갈음할 수 있다.

**제8조(운영표지판의 설치)** 보조금을 지원받아 사무소나 시설을 운영하는 보조사업자 중 제3조제2항 및 제4조에 따라 표지판을 설치할 의무가 있는 보조사업자는 그 지원·운영 기간 동안 주된 사무소 또는 관리·운영 중인 시설에 운영표지판을 설치하고 그에 제5조제2항 각 호의 사항 외에 보조금을 지원받아 운영하는 사무소 또는 시설임을 표기하여야 한다.

**제9조(표지판의 설치장소 등)** ① 표지판은 사람들이 보기 쉬운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표지판의 설치가 곤란한 시설에 대해서는 군수와 협의하여 그 위치, 규격 등을 조정할 수 있다.

② 제8조에 따른 운영표지판은 해마다 보조금 지원내용에 맞게 변경하여야 한다.

③ 표지판의 규격, 형식 및 재질 등에 관한 사항은 군수가 정한다.

**제10조(설치 등의 비용)** 표지판의 설치·관리 및 철거비용은 보조사업자가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11조(관리감독 및 평가)** 표지판의 관리감독은 해당 보조사업 담당부서에서 하며, 매년 표지판의 관리 실태를 평가하여 다음 해 보조금 지원 시에 반영할 수 있다.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보조금지원 표지판 설치 및 운영 적용례)** 이 조례에 따른 표지판의 설치는 2025년 1월 1일 이후 보조금이 교부되는 보조금지원사업부터 적용한다.

-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법률)」(2023.4.11. 일부개정, 2023.10.12 시행)  
 제9조(지방보조금의 교부 조건)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보조금의 교부를 결정할 때 법령, 조례와 예산에서 정하는 지방보조금의 교부 목적을 달성하는데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보조금의 교부를 결정하는 경우 지방보조사업이 완료된 때에 그 지방보조사업자에게 상당한 수익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그 지방보조금의 교부 목적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이미 교부한 지방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방자치단체에 반환하게 하는 조건을 붙일 수 있다.
- 「건설산업기본법(법률)」(2023.8.8. 타법개정, 2024.5.17. 시행)  
 제42조(건설공사 표지의 게시) ① 건설사업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설공사의 공사명, 발주자, 시공자, 공사기간 등을 적은 표지를 건설공사 현장 인근의 사람들이 보기 쉬운 곳에 게시하여야 한다.
- ② 건설사업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건설공사를 완공하면 그 공사의 발주자, 설계자, 감리자와 시공한 건설사업자의 상호 및 대표자의 성명 등을 적은 표지판을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람들이 보기 쉬운 곳에 영구적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건축공사의 경우 「건축법」 제48조의2에 따른 내진등급 및 같은 법 제48조의3에 따른 내진능력을 표지판에 포함하여야 한다.
- ③ 발주자는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표지의 게시 비용 및 표지판의 설치 비용을 해당 건설공사의 공사 비용에 계상(計上)하여야 한다.

# 대구광역시 달성군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1. 의안번호: 제2503호

2. 발 의 일: 2024년 6월 4일

3. 발 의 자: 최재규 의원 등 3인

## 4. 제안사유

- 「청년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조문을 정비하고, 사업대상자인 청년의 범위를 확대하고, 청년센터 위탁운영에 대한 근거를 신설하여, 청년정책이 안정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되어 관내 청년들이 달성군에서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받으며 건전한 민주시민으로서의 책무를 다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고자 함.

## 5. 주요내용

- 청년의 범위 확대 및 조문 정비(안 제2조)
- 상위법 개정사항 반영하여 조문 정비(기본계획 수립, 지원 시책 등)  
(안 제3조제2항, 제4조제2항, 제5조제4항, 제14조제2항, 제15조제1항, 제16조)
- 청년센터 위탁운영 근거·공개 규정 신설(안 제14조제4항 및 제5항)

## 6. 관계법령

- 「청년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

## 7. 검토의견

-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달성군 청년층이 증가하면서 그에 따라 행정 수요가 증가하여 청년정책 추진의 중요성이 커지고 「청년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이 개정된 제도적 변화를 반영하여 청년정책이 안정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되어 관내 청년들이 달성군에서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받으며 건전한 민주시민으로서의 책무를 다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 청년은 당초 19세 이상 39세 이하면서 군에 주민등록을 두는 사람으로 규정하였으나 이에 군 소재 법인·사업장에 재직하고 있는 사람과 군에 소재하는 초·중·고등학교 및 대학교에 재학하거나 군에 주민등록을 둔 학교 밖 청소년도 더하여 사업대상자를 확대하여 더 많은 청년들이 청년정책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 또한 상위법령에서 기본계획 수립·시행에 대해 취약계층 청년에 대한 별도 대책 수립 의무가 신설되어 우리 군도 중앙부처의 청년정책 흐름과 발맞추기 위해 청년 기본계획 수립·시행에도 취약계층 청년에 대한 별도 대책 수립 의무를 함께 규정하였습니다.
- 제14조제4항과 제5항에서는 청년센터를 위탁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상위법령에 따라 그 수탁기관에 대한 공개규정을 신설하여 청년정책이 안정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 것으로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 붙임 1. 조례안 1부.  
2. 관계법령 1부. 끝.

# 대구광역시 달성군 청년 기본 조례

##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달성군 청년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조(정의) ①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년”이란 19세 이상 39세 이하이면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다만, 청년정책 사업의 개별적 성격, 그 밖의 관계법령에 따라 적용대상 연령을 다르게 할 수 있다.

가. 대구광역시 달성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사람

나. 군 소재 법인 또는 사업장에 재직하고 있는 사람

다. 군에 소재하는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또는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 사람

라. 군에 주민등록을 두면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나목 또는 다목에 해당하는 사람

2. “청년활동”이란 청년정책의 활성화를 위하여 청년 또는 청년 단체가 행하는 동아리, 친목 도모, 행사 또는 사업 등 다양한 활동을 말한다.

②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제1항에서 정하는 것 외에는 「청년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중 “군수”를 “대구광역시 달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군수는 청년발전과 청년의 공정한 기회 보장에 필요한 제도적 장치 마련에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청년과 관련된 정책 및 청년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할 때에는 이 조례의 취지에 맞도록 하여야 한다.

제5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1항의”를 “제1항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관한”을 “관한 분야별”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기본계획”을 “제1항에 따라 기본계획”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군수는 제1항에 따라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할 때에는 취약계층 청년에 대한 별도의 대책을 포함하여야 한다.

제6조제2항 중 “제1항의”를 “제1항에 따른”으로 한다.

제7조제2항제3호 중 “필요하다고 인정되는”을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으로 한다.

제14조제3항 중 “제1항의”를 “제1항에 따른”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4항과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청년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청년센터 운영계획의 수립 및 시행

2. 제15조제1항에 따른 지원사업
3. 청년의 참여 확대를 위한 청년활동 지원 및 민·관협력 활성화
4. 국내외 청년 네트워크 구축 및 교류활동
5. 그 밖에 청년정책에 관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④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청년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필요한 경우 전문성을 가진 청년 관련 기관, 법인 또는 단체에 그 운영사무의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위탁에 관한 방법과 절차 등은 「대구광역시 달성군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⑤ 군수는 제4항에 따라 위탁하는 경우 법 시행령 제21조의3제3항에 따라 위탁받은 자와 위탁 내용에 관한 사항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여야 한다.

제1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사업”을 “지원사업”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부터 제11호까지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청년의 활동지원 및 참여 확대를 위한 사업
2. 청년의 능력·재능·기술 등의 개발을 위한 사업
3. 청년의 고용촉진 및 일자리 질 향상을 위한 사업
4. 청년의 창업 촉진 및 창업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
5. 청년의 주거안정과 주거 수준 향상을 위한 사업
6. 청년의 금융소비자 교육 및 상담 지원 사업
7. 청년의 생활 안정 및 육체적·정신적 건강 증진과 삶의 질 개선 등 복지 증진을 위한 사업
8. 청년의 문화역량 제고 및 문화 향유권 확대를 위한 사업

9. 청년의 권리 보호를 위한 사업

10. 청년을 위한 시설의 설치·운영 사업

11. 그 밖에 청년정책 추진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1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6조(청년의 군정 참여 기회 확대 등) 군수는 군의 각종 위원회의 심의·자문 과정에 청년의 의사를 최대한 반영하고 군정에 청년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기 위한 다각적인 정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제17조제2항 중 “제1항의” 를 “제1항에 따른” 으로 한다.

제18조제2항 중 “「대구광역시 달성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를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을 따르거나 「대구광역시 달성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p> <p>1. “청년”이란 대구광역시 달성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거주하는 19세 이상 39세 이하인 사람을 원칙으로 하되, 청년정책 사업의 개별적 성격, 그 밖의 관계 법령에 따라 적용대상 연령을 다르게 할 수 있다.</p> <p>2. “청년정책”이란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 청년의 참여 확대, 권익증진, 자기계발 지원을 목적으로 대구광역시 달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추진하는 시책을 말한다.</p> <p>3. “청년단체”란 청년에 대한 권익증진을 위하여 자발적으로 조직한 법인이나 단체를 말한다.</p> <p>4. “청년활동”이란 청년정책의 활성화를 위하여 청년 또는 청년단체가 행하는 동아리, 친</p>	<p>제2조(정의) ①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p> <p>1. “청년”이란 19세 이상 39세 이하이면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다만, 청년정책 사업의 개별적 성격, 그 밖의 관계 법령에 따라 적용대상 연령을 다르게 할 수 있다.</p> <p style="margin-left: 20px;">가. 대구광역시 달성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사람</p> <p style="margin-left: 20px;">나. 군 소재 법인 또는 사업장에 재직하고 있는 사람</p> <p style="margin-left: 20px;">다. 군에 소재하는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또는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 사람</p> <p style="margin-left: 20px;">라. 군에 주민등록을 두면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나목 또는 다목에 해당하는 사람</p>

목 도모, 행사 또는 사업 등 다양한 활동을 말한다.

5. “청년시설”이란 청년활동을 지원하고 청년의 자발적인 참여를 이끌어냄으로써 청년정책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조성된 시설을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 군수는 청년들의 청년활동을 최대한 보장하고 청년들이 청년정책에 능동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신 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생략)

<신 설>

2. “청년활동”이란 청년정책의 활성화를 위하여 청년 또는 청년단체가 행하는 동아리, 친목 도모, 행사 또는 사업 등 다양한 활동을 말한다.

②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제1항에서 정하는 것 외에는 「청년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군수의 책무) ① 대구광역시 달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

-----  
-----.

② 군수는 청년발전과 청년의 공정한 기회 보장에 필요한 제도적 장치 마련에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① (현행 제목 외의 부분과 같음)

② 청년과 관련된 정책 및 청년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할 때에는 이 조례의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생략)

② 제1항의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생략)
2. 청년정책에 관한 주요사항

3. ~ 5. (생략)

③ 군수는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할 때에는 군의 다른 주요 정책과 연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제6조(청년정책 기초조사 및 정책연구) ① (생략)

② 군수는 제1항의 업무를 전문성을 가진 기관, 법인 및 단체 등으로 하여금 수행하게 할 수 있다.

제7조(청년혁신위원회의 설치 및

취지에 맞도록 하여야 한다.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 따른 -----  
-----.

1. (현행과 같음)

2. ----- 관한 분야별 ----  
--

3. ~ 5. (현행과 같음)

③ ---- 제1항에 따라 기본계획-----  
-----.

④ 군수는 제1항에 따라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할 때에는 취약계층 청년에 대한 별도의 대책을 포함하여야 한다.

제6조(청년정책 기초조사 및 정책연구) ① (현행과 같음)

② ---- 제1항에 따른 -----  
-----  
-----.

제7조(청년혁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① (생략)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자문한다.

1. 2. (생략)
3. 그 밖에 청년정책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14조(청년센터의 설치·운영 및 지원) ① (생략)

② 청년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청년센터 운영계획의 수립 및 시행
2. 청년의 참여 확대를 위한 청년 활동 지원 및 민·관협력 활성화
3. 청년의 능력 계발 및 인재 육성을 위한 교육 실행·지원
4. 청년의 자립 성장과 권익보호를 위한 지원
5. 국내외 청년 네트워크 구축 및 교류활동
6. 그 밖에 청년정책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③ 군수는 제1항의 청년센터를 설치·운영 및 지원하는 과정

운영) ① (현행과 같음)

② -----  
-----.

1. 2. (현행과 같음)
3. -----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

제14조(청년센터의 설치·운영 및 지원) ① (현행과 같음)

② 청년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청년센터 운영계획의 수립 및 시행
2. 제15조제1항에 따른 지원사업
3. 청년의 참여 확대를 위한 청년 활동 지원 및 민·관협력 활성화
4. 국내외 청년 네트워크 구축 및 교류활동
5. 그 밖에 청년정책에 관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③ ----- 제1항에 따른 -----  
-----

에서 청년의 참여와 자유로운 활동을 보장하여야 한다.

<신 설>

<신 설>

제15조(청년정책 사업 등) ① 군수는 청년정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청년의 활동지원 및 참여 확대를 위한 사업
2. 청년의 능력계발을 위한 사

-----  
-----.

④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청년 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필요한 경우 전문성을 가진 청년 관련 기관, 법인 또는 단체에 그 운영사무의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위탁에 관한 방법과 절차 등은 「대구광역시 달성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⑤ 군수는 제4항에 따라 위탁하는 경우 법 시행령 제21조의 3제3항에 따라 위탁받은 자와 위탁 내용에 관한 사항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여야 한다.

제15조(청년정책 사업 등) ① ---

-----  
----- 지원사업-----.

1. 청년의 활동지원 및 참여 확대를 위한 사업
2. 청년의 능력·재능·기술

업

3. 청년의 고용 확대 및 일자리 질 향상을 위한 사업

4. 청년의 주거안정을 위한 사업

5. 청년의 금융소비자 교육 및 상담 지원 사업

6. 청년의 생활안정을 위한 지원 사업

7. 청년의 문화역량 제고 및 문화 향유권 확대를 위한 사업

8. 청년의 권리 보호를 위한 사업

9. 청년을 위한 시설의 설치·운영 사업

10. 그 밖에 청년정책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②·③ (생략)

제16조(청년의 군정 참여 기회 확대 등) ① 군수는 군의 각종

등의 개발을 위한 사업

3. 청년의 고용촉진 및 일자리 질 향상을 위한 사업

4. 청년의 창업 촉진 및 창업 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

5. 청년의 주거안정과 주거 수준 향상을 위한 사업

6. 청년의 금융소비자 교육 및 상담 지원 사업

7. 청년의 생활 안정 및 육체적·정신적 건강 증진과 삶의 질 개선 등 복지 증진을 위한 사업

8. 청년의 문화역량 제고 및 문화 향유권 확대를 위한 사업

9. 청년의 권리 보호를 위한 사업

10. 청년을 위한 시설의 설치·운영 사업

11. 그 밖에 청년정책 추진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③ (현행과 같음)

제16조(청년의 군정 참여 기회 확대 등) 군수는 군의 각종 위

위원회의 심의 과정에 청년의 의사를 최대한 반영하고 군정에 청년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기 위한 다각적인 정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청년의 능동적인 사회참여 기회를 보장하기 위하여 교육, 캠페인, 프로그램 운영 등 청년활동의 지원·육성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17조(관련 기관·단체와의 협력) ① (생략)

② 군수는 필요한 경우 제1항의 관련 기관·단체 등과 청년 지원을 위한 협약 등을 체결할 수 있다.

제18조(청년단체 등에 대한 지원)

① (생략)  
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 방법·절차, 그 밖에 정산 등과 관련한 사항은 「대구광역시 달성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위원회의 심의·자문 과정에 청년의 의사를 최대한 반영하고 군정에 청년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기 위한 다각적인 정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제17조(관련 기관·단체와의 협력) ① (현행과 같음)

② ----- 제1항에 따른 -----  
-----.

제18조(청년단체 등에 대한 지원)

① (현행과 같음)  
② -----  
-----  
---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을 따르거나 「대구광역시 달성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 □ 「청년기본법(법률)」(2023.3.21. 일부개정, 2023.9.22. 시행)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년”이란 19세 이상 3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다만, 다른 법령과 조례에서 청년에 대한 연령을 다르게 적용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를 수 있다.
2. “청년발전”이란 청년의 권리보호 및 신장, 정책결정과정 참여확대, 고용촉진, 능력개발, 복지향상 등을 통하여 정치·경제·사회·문화의 모든 영역에서 청년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을 말한다.
3. “청년지원”이란 청년발전을 위하여 청년에게 제공되는 사회적·경제적 지원을 말한다.
4. “청년정책”이란 청년발전을 주된 목표로 하는 것으로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정책을 말한다.
5. “취약계층 청년”이란 고용·교육·복지 등의 분야에서 어려움을 겪는 청년을 말한다.
6. “청년단체”란 청년발전, 청년지원 또는 청년 참여 촉진을 주된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나 단체를 말한다.
7. “청년시설”이란 청년발전, 청년지원 또는 청년 참여 촉진을 위하여 제공되는 시설(청년지원을 위하여 운영되는 기관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청년발전에 필요한 법적·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청년정책 수립 절차에 청년의 참여 또는 의견 수렴을 보장하는 조치를 하여야 한다.
-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청년의 공정한 기회 보장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이 법에 따른 업무 수행에 필요한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실시하여야 한다.
- 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청년발전, 청년지원 및 청년정책과 관련된 내용을 널리 홍보하고 교육하여야 한다.

⑥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청년정책을 수립·실시하는 경우 취약계층 청년에 대한 별도의 지원방안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청년정책 기본계획의 수립)** ① 국무총리는 5년마다 청년정책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청년정책의 기본방향
2. 청년정책의 추진목표
3. 청년정책에 관한 분야별 주요 시책
4. 이전의 기본계획에 관한 분석·평가
5. 청년정책에 관한 기능의 조정
6. 청년정책 추진에 필요한 재원의 조달방법
7. 그 밖에 청년정책과 관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기본계획에는 취약계층 청년에 대한 별도의 대책이 포함되어야 한다.

④ 기본계획의 수립 및 변경은 제13조에 따른 청년정책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

⑤ 그 밖에 기본계획의 수립 및 변경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7조(청년 고용촉진 및 일자리의 질 향상)**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청년고용을 촉진하고 청년 일자리의 질을 향상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취약계층 청년의 자립과 노동시장 진입을 위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18조(청년 창업지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청년의 창업을 촉진하고, 창업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19조(청년 능력개발 지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청년의 능력·재능·기술 등을 개발할 수 있는 교육환경을 조성하고 창의성과 전문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20조(청년 주거지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청년의 주거 안정 및 주거 수준 향상을 위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21조(청년 복지증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청년의 육체적·정신적 건강 증진과 삶의 질 개선 등 복지 증진을 위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22조(청년 금융생활 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청년의 경제적 자립과 안정적인 금융생활을 지원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취약계층 청년의 채무여건 개선 및 금융 접근성 제고를 위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23조(청년 문화활동 지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청년의 다양하고 창의적인 문화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24조(청년 국제협력 지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청년의 국제평화증진 운동과 국제협력 활동 기회를 보장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24조의2(청년시설의 설치·운영 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청년발전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청년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청년시설의 설치·운영을 청년단체 또는 청년발전을 위하여 활동하거나 기여한 법인·단체(이하 “청년단체등”이라 한다)에 위탁할 수 있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2항에 따라 청년시설의 설치·운영을 위탁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그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청년시설의 설치·운영 및 위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4조의3(지방자치단체 등에 대한 지원)** ① 국가는 지방자치단체가 수행하는 청년발전 및 청년지원과 관련된 사업에 필요한 예산을 보조할 수 있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청년단체등의 청년지원 활동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지원의 범위·절차 및 관리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 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 「청년기본법 시행령(대통령령)」(2023.9.12. 일부개정, 2023.9.22. 시행)

**제21조의3(청년시설의 설치·운영 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24조의2 제1항에 따라 청년시설을 설치·운영하는 경우에는 청년발전 지원을 위한 전

문인력을 두어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24조의2제1항에 따라 청년시설의 효율적인 설치·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기관·법인·단체 등에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24조의2제2항에 따라 청년시설의 설치·운영을 위탁한 때에는 위탁받은 자와 위탁 내용에 관한 사항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해야 한다.

**제21조의4(청년단체 등에 대한 지원 범위)** 법 제24조의3제2항에 따른 국가의 행정적·재정적 지원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다음 각 목의 청년지원 활동에 필요한 사업비 지원

가. 청년 고용촉진, 창업지원, 능력개발 지원, 주거지원, 복지증진, 금융생활 지원, 문화활동 지원 등 청년발전에 관한 사업

나. 국제평화증진과 국제협력을 위한 국내외 청년 관련 국제행사

다. 그 밖에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청년단체 등의 육성 또는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2. 청년지원 활동에 대한 상담·홍보·교육 지원

3. 그 밖에 청년지원 활동의 효율적 수행에 필요하다고 국무총리가 인정하는 사항

# 대구광역시 달성군 공공심야약국 운영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1. 의안번호: 제2510호

2. 발 의 일: 2024년 6월 4일

3. 발 의 자: 양은숙 의원 등 3인

## 4. 제안사유

- 「약사법」에 따라 공공심야약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심야시간 및 공휴일에 의약품·의약외품 접근성 보장 및 구매편의 제공과 약사의 복약지도를 통한 의약품 오·남용 방지와 안전사용에 기여하여 대구광역시 달성군민의 건강 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함.

## 5. 주요내용

-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 및 책무 등 규정(안 제2조~제3조)
- 공공심야약국의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4조)
- 공공심야약국의 관리 및 지정 취소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5조~제6조)
- 홍보 및 준용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7조~제8조)

## 6. 관계법령

- 「약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시행규칙

## 7. 검토의견

- 본 조례안은 공공심야약국 지정 및 운영을 통해 심야시간 및 공휴일에 의약품·의약외품 접근성을 보장하고, 의약품 사용의 안전성과 유효성을 통한 국민 건강 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 심야시간대 의약품 구매 불편 문제 이슈, 안전상비의약품의 편의점 판매 한계 등에 대책을 강구하기 위해 그간 약사회와 함께 지방자치단체에서 개별적으로 공공심야약국 조례를 제정하고 운영해왔습니다.
- 2022년 7월 정부에서 공공심야약국 시범사업 시행 및 2023년 4월 「약사법」에 공공심야약국 지정 및 운영지원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 '24. 5월 기준 60개 지방자치단체에서 조례를 제정하였으며, 대구광역시의 경우 본청, 중구, 북구에서 제정하였습니다. 대구시는 「약사법」 개정 전부터 심야약국 1개소, 자정약국 9개소를 운영해 왔으며, 중구의 경우 구비로 추가로 지정 및 운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군 내에는 공공심야약국이 없어 타지역 대비 심야시간 및 공휴일에 약국의 접근성이 낮은 상황입니다.
- 공공심야약국은 의약품 관련 상담 및 구매뿐만 아니라 지역사회 안전망으로서 취약 시간대 1차 보건의료기관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군은 면적이 넓고, 도심 대비 교통이 불편하기에 더욱 공공심야약국 운영이 필요하다고 판단 됩니다.

○ 본 조례안은 이러한 국내 흐름에 발맞춰 상위법에서 명시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상위법령에 저촉되지 않고, 달성군민의 심야시간 및 공휴일에 의약품·의약외품 구매편의 제공 및 건강증진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으로 조례의 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 붙임 1. 조례안 1부.  
2. 관계법령 1부. 끝.

# 대구광역시 달성군 공공심야약국 운영 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약사법」에 따라 공공심야약국 지정 및 운영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심야시간대 및 공휴일에 의약품·의약외품 접근성을 보장하고 약사의 복약지도를 통한 의약품 오·남용을 방지하여 대구광역시 달성군민의 건강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① “공공심야약국”이란 「약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0조에 따라 개설등록한 약국 중에서 대구광역시 달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로부터, 법 제21조의3에 따른 심야시간대 및 공휴일에 의약품 또는 의약외품을 판매하는 약국으로 지정받은 약국을 말한다.

②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제1항에서 정하는 것 외에는 법 제2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책무 등)** ① 군수는 공공심야약국의 지정을 통해 대구광역시 달성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에게 의약품 및 의약외품 구매의 편의 제공과 군민의 건강 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공공심야약국의 지정 및 운영에 약국개설자 또는 약국 관련 단체·협회 등의 자발적인 참여를 확대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공공심야약국으로 지정받은 약국개설자 및 근무 약사는 약사윤리기준, 약사윤리강령을 준수하고 법 제24조에 따른 의무 사항을 준수하여 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법 제21조의3에 따라 공공심야약국의 근무일과 운영시간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4조(공공심야약국의 지정 및 지원)** ① 군수는 법 제21조의3에 따라 공공심야약국으로 지정받으려는 약국개설자의 신청을 받아 공공심야약국을 지정·운영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제1항에 따른 공공심야약국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보조금의 교부 및 정산 등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을 따르거나 「대구광역시 달성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5조(공공심야약국의 관리)** ① 군수는 공공심야약국을 지도·감독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필요한 경우 공공심야약국의 운영 실태를 정기적으로 조사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제2항의 조사 결과에 따라 운영 실태가 저조하고 효율적이지 않다고 판단될 때에는 제4조제2항에 따른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

**제6조(지정 취소 등)** ① 군수는 법 제21조의3제5항에 따라 공공심야약국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지정이 취소된 경우 해당 공공심야약국에 지급한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제7조(홍보)** 군수는 공공심야약국이 활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관내 약국 및 군민에게 적극 홍보하여야 한다.

**제8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공공심야약국 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는 법 및 법 시행령·시행규칙의 규정을 따른다.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 「약사법(법률)」(2023.4.18. 일부개정, 2024.4.19. 시행)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약사(藥事)”란 의약품·의약외품의 제조·조제·감정(鑑定)·보관·수입·판매[수여(授與)]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와 그 밖의 약학 기술에 관련된 사항을 말한다.
2. “약사(藥師)”란 한약에 관한 사항 외의 약사(藥事)에 관한 업무(한약제제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를 담당하는 자로서, “한약사”란 한약과 한약제제에 관한 약사(藥事) 업무를 담당하는 자로서 각각 보건복지부장관의 면허를 받은 자를 말한다.
3. “약국”이란 약사나 한약사가 수여할 목적으로 의약품 조제 업무[약국제제(藥局製劑)를 포함한다]를 하는 장소(그 개설자가 의약품 판매업을 겸하는 경우에는 그 판매업에 필요한 장소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다만, 의료기관의 조제실은 예외로 한다.
4. “의약품”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을 말한다.
  - 가. 대한민국약전(大韓民國藥典)에 실린 물품 중 의약외품이 아닌 것
  - 나. 사람이나 동물의 질병을 진단·치료·경감·처치 또는 예방할 목적으로 사용하는 물품 중 기구·기계 또는 장치가 아닌 것
  - 다. 사람이나 동물의 구조와 기능에 약리학적(藥理學的) 영향을 줄 목적으로 사용하는 물품 중 기구·기계 또는 장치가 아닌 것
5. “한약”이란 동물·식물 또는 광물에서 채취된 것으로 주로 원형대로 건조·절단 또는 정제된 생약(生藥)을 말한다.
6. “한약제제(韓藥製劑)”란 한약을 한방원리에 따라 배합하여 제조한 의약품을 말한다.
7. “의약외품(醫藥外品)”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제4호나목 또는 다목에 따른 목적으로 사용되는 물품은 제외한다)으로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지정하는 것을 말한다.
  - 가. 사람이나 동물의 질병을 치료·경감(輕減)·처치 또는 예방할 목적으로 사용되는 섬유·고무제품 또는 이와 유사한 것

나. 인체에 대한 작용이 약하거나 인체에 직접 작용하지 아니하며, 기구 또는 기계가 아닌 것과 이와 유사한 것

다. 감염병 예방을 위하여 살균·살충 및 이와 유사한 용도로 사용되는 제제

8. “신약”이란 화학구조나 본질 조성이 전혀 새로운 신물질의약품 또는 신물질을 유효성분으로 함유한 복합제제 의약품으로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지정하는 의약품을 말한다.

9. “일반의약품”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의약품을 말한다.

가. 오용·남용될 우려가 적고, 의사나 치과의사의 처방 없이 사용하더라도 안전성 및 유효성을 기대할 수 있는 의약품

나. 질병 치료를 위하여 의사나 치과의사의 전문지식이 없어도 사용할 수 있는 의약품

다. 의약품의 제형(劑型)과 약리작용상 인체에 미치는 부작용이 비교적 적은 의약품

10. “전문의약품”이란 일반의약품이 아닌 의약품을 말한다.

11. “조제”란 일정한 처방에 따라서 두 가지 이상의 의약품을 배합하거나 한 가지 의약품을 그대로 일정한 분량으로 나누어서 특정한 용법에 따라 특정인의 특정된 질병을 치료하거나 예방하는 등의 목적으로 사용하도록 약제를 만드는 것을 말한다.

12. “복약지도(服藥指導)”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의약품의 명칭, 용법·용량, 효능·효과, 저장 방법, 부작용, 상호 작용이나 성상(性狀) 등의 정보를 제공하는 것

나. 일반의약품을 판매할 때 진단적 판단을 하지 아니하고 구매자가 필요한 의약품을 선택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

13. “안전용기·포장”이란 5세 미만 어린이가 열기 어렵게 설계·고안된 용기나 포장을 말한다.

14. “위탁제조판매업”이란 제조시설을 갖추지 아니하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으로부터 제조판매품목허가를 받은 의약품을 의약품제조업자에게 위탁하여 제조판매하는 영업을 말한다.

15. “임상시험”이란 의약품 등의 안전성과 유효성을 증명하기 위하여 사람을

대상으로 해당 약물의 약동(藥動)·약력(藥力)·약리·임상적 효과를 확인하고 이상반응을 조사하는 시험(생물학적 동등성시험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다만,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첨단재생의료 임상연구는 제외한다.

16. “비임상시험”이란 사람의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시험물질의 성질이나 안전성에 관한 각종 자료를 얻기 위하여 실험실과 같은 조건에서 동물·식물·미생물과 물리적·화학적 매체 또는 이들의 구성 성분으로 이루어진 것을 사용하여 실시하는 시험을 말한다.

17. “생물학적 동등성시험”이란 임상시험 중 생물학적 동등성을 입증하기 위한 생체시험으로서 동일 주성분을 함유한 두 제제의 생체이용률이 통계학적으로 동등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시험을 말한다.

18. “희귀의약품”이란 제4호에 따른 의약품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의약품으로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지정을 받은 의약품을 말한다.

가. 「희귀질환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희귀질환을 진단하거나 치료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되는 의약품

나. 적용 대상이 드문 의약품으로서 대체 가능한 의약품이 없거나 대체 가능한 의약품보다 현저히 안전성 또는 유효성이 개선된 의약품

19. “국가필수의약품”이란 질병 관리, 방사능 방재 등 보건의료상 필수적이거나 시장 기능만으로는 안정적 공급이 어려운 의약품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지정하는 의약품을 말한다.

**제20조(약국 개설등록)** ①약사 또는 한약사가 아니면 약국을 개설할 수 없다.

②약국을 개설하려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개설등록을 하여야 한다. 등록된 사항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③제2항에 따른 등록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기준에 따라 필요한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④시·도지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시·도의 규칙으로 약국의 개설등록 기준을 정할 수 있다.

⑤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개설등록을 받지 아니한다.

1. 제76조에 따라 개설등록이 취소된 날부터 6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자인 경우

2. 약국을 개설하려는 장소가 의료기관의 시설 안 또는 구내인 경우
3. 의료기관의 시설 또는 부지의 일부를 분할·변경 또는 개수(改修)하여 약국을 개설하는 경우
4. 의료기관과 약국 사이에 전용(專用) 복도·계단·승강기 또는 구름다리 등의 통로가 설치되어 있거나 이를 설치하는 경우
- ⑥ 제2항에 따라 개설등록한 약국이 아니면 약국의 명칭이나 이와 비슷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제21조의3(공공심야약국의 지정·운영 등)** ①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심야시간대 및 공휴일에 의약품 또는 의약외품을 판매하는 약국(이하 “공공심야약국”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

- ② 공공심야약국으로 지정받으려는 약국개설자는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 ③ 공공심야약국을 관리하는 약사 또는 한약사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심야시간대 및 공휴일의 운영시간을 준수하여야 한다.
- ④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공공심야약국의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⑤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공공심야약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지원한 예산을 부당하게 집행하거나 목적과 다르게 사용한 경우
3. 제8항에 따른 지정 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
4. 제69조의4제1호의2에 따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5. 그 밖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 ⑥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5항에 따라 지정이 취소된 경우 해당 공공심야약국에 지급한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 ⑦ 제5항에 따라 지정이 취소된 자는 지정이 취소된 날부터 1년 이내에 다시 공공심야약국으로 지정받을 수 없다.
- ⑧ 제1항에 따른 공공심야약국 지정의 기준·방법 및 절차, 제2항에 따른 신청

및 제5항에 따른 지정 취소의 방법·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24조(의무 및 준수 사항)** ①약국에서 조제에 종사하는 약사 또는 한약사는 조제 요구를 받으면 정당한 이유 없이 조제를 거부할 수 없다.

②약국개설자(해당 약국 종사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와 의료기관 개설자(해당 의료기관의 종사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담합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약국개설자가 특정 의료기관의 처방전을 가진 자에게 약제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하여 주는 행위

2. 삭제

3. 의료기관 개설자가 처방전을 가진 자에게 특정 약국에서 조제 받도록 지시하거나 유도하는 행위(환자의 요구에 따라 지역 내 약국들의 명칭·소재지 등을 종합하여 안내하는 행위는 제외한다)

4. 의사 또는 치과의사가 제25조제2항에 따라 의사회 분회 또는 치과의사회 분회가 약사회 분회에 제공한 처방의약품 목록에 포함되어 있는 의약품과 같은 성분의 다른 품목을 반복하여 처방하는 행위(그 처방전에 따라 의약품을 조제한 약사의 행위도 또한 같다)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행위와 유사하여 담합의 소지가 있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③제23조제2항에 따른 의료기관의 조제실에 근무하는 약사 또는 한약사가 의약품을 조제할 때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과 협의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지켜야 한다.

④약사는 의약품을 조제하면 환자 또는 환자보호자에게 필요한 복약지도(服藥指導)를 구두 또는 복약지도서(복약지도에 관한 내용을 환자가 읽기 쉽고 이해하기 쉬운 용어로 설명한 서면 또는 전자문서를 말한다)로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복약지도서의 양식 등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⑤보건복지부장관은 약사가 적정한 처방건수를 조제하게 하여 제4항에 따른 복약지도를 충실히 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할 수 있다.

# 대구광역시 달성군 청년 1인가구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1. 의안번호: 제2511호

2. 발 의 일: 2024년 6월 4일

3. 발 의 자: 양은숙 의원 등 3인

## 4. 제안사유

- 국가산업단지 조성 등으로 대구광역시 달성군에 거주하는 청년 1인가구가 증가하면서 그에 따른 정책 수요에 부응하고자 청년 1인가구의 사회안전망 구축 및 공동체 활동 등을 지원하여 청년 1인가구 삶의 질 향상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관내 청년 1인가구가 달성군에 안정적으로 정착하는 데에 기여하고자 함.

## 5. 주요내용

-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에 관한 사항(안 제2조)
- 청년 1인가구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군수의 책무에 관한 사항(안 제3조)
- 사업·시설 등 사업과 운영 및 예산 지원에 관한 사항(안 제4조~제7조)
- 공공시설 사용 허가 및 사업 홍보에 관한 사항(안 제8조~제9조)

## 6. 관계법령

- 「청년기본법」, 「대구광역시 달성군 청년 기본 조례」

## 7. 검토의견

- 「청년기본법」에서는 청년이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실현하고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받으며 건전한 민주시민으로서의 책무를 다할 수 있도록 보장하고 있습니다.
- 본 조례안은 이러한 상위법령에서 규정한 내용에 따라 국가산업단지 조성 등으로 달성군 청년 인구 증가에 따라 자연스럽게 청년 1인가구도 증가하게 되면서 그에 따라 늘어난 정책수요에 부응하고자 청년 1인가구를 위한 사회안전망을 구축하고 공동체 활동 등을 지원함으로써 청년 1인가구가 느끼는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 이로써 군에 거주하는 청년 1인가구가 경제적·정서적 지지기반을 지역에서 쌓아 지역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므로 본 조례안의 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 붙임 1. 조례안 1부.  
2. 관계법령 1부. 끝.

## 대구광역시 달성군 청년 1인가구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구광역시 달성군에 거주하는 청년 1인가구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대구광역시 달성군 청년 1인가구를 위한 사회안전망을 구축하고 삶의 질을 향상하는 데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년”이란 「대구광역시 달성군 청년 기본 조례」 제2조제1항을 따른다.
2. “1인가구”란 「건강가정기본법」 제3조제2호의2를 따른다.
3. “청년 1인가구 정책”이란 대구광역시 달성군(이하 “군”이라 한다) 청년 1인가구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모든 분야에서의 참여 확대, 권익 증진, 삶의 질 향상 등을 목적으로 하는 정책을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 ① 대구광역시 달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청년 1인가구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정책을 마련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② 군수는 청년 1인가구 지원정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사업)** 군수는 청년 1인가구에 대한 삶의 질을 향상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범죄예방 등 사회안전망 구축사업
2. 주거, 문화, 여가 생활 지원사업

3. 사회관계망 형성 등 공동체 활성화 사업

4. 건강 및 식생활 교육 지원사업

5. 그 밖에 청년 1인가구의 복지향상과 안정적 생활기반 구축을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지원시설 설치·운영)** 군수는 제4조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지원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제6조(예산지원)** 군수는 청년 1인가구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제4조에 따른 사업 또는 제5조에 따른 지원시설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7조(사무의 위탁)** ① 군수는 청년 1인가구 지원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제4조에 따른 사업의 추진 또는 제5조에 따른 지원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청년 1인가구 정책과 관련된 법인, 단체나 전문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수탁기관의 선정절차 및 기준, 방법, 내용 등의 구체적인 사항은 「대구광역시 달성군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를 준용한다.

**제8조(공공시설 사용)** 군수는 제4조에 따른 사업 추진을 할 때 필요한 경우 그 사업대상자에게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및 「대구광역시 달성군 공유재산관리 조례」에 따라 군 공유재산 사용을 허가할 수 있으며, 제7조제1항에 따른 수탁기관의 수탁사무 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을 사용하게 할 수 있다.

**제9조(홍보)** 군수는 청년 1인가구 지원 시책을 사업대상자를 포함한 주민에게 적극 홍보하여야 한다.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 「청년기본법(법률)」 (2023.3.21. 일부개정, 2023.9.22. 시행)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년”이란 19세 이상 3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다만, 다른 법령과 조례에서 청년에 대한 연령을 다르게 적용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를 수 있다.
2. “청년발전”이란 청년의 권리보호 및 신장, 정책결정과정 참여확대, 고용촉진, 능력개발, 복지향상 등을 통하여 정치·경제·사회·문화의 모든 영역에서 청년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을 말한다.
3. “청년지원”이란 청년발전을 위하여 청년에게 제공되는 사회적·경제적 지원을 말한다.
4. “청년정책”이란 청년발전을 주된 목표로 하는 것으로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정책을 말한다.
5. “취약계층 청년”이란 고용·교육·복지 등의 분야에서 어려움을 겪는 청년을 말한다.
6. “청년단체”란 청년발전, 청년지원 또는 청년 참여 촉진을 주된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나 단체를 말한다.
7. “청년시설”이란 청년발전, 청년지원 또는 청년 참여 촉진을 위하여 제공되는 시설(청년지원을 위하여 운영되는 기관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청년발전에 필요한 법적·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청년정책 수립 절차에 청년의 참여 또는 의견 수렴을 보장하는 조치를 하여야 한다.
-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청년의 공정한 기회 보장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이 법에 따른 업무 수행에 필요한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실시하여야 한다.
- 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청년발전, 청년지원 및 청년정책과 관련된 내용을 널리 홍보하고 교육하여야 한다.
- ⑥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청년정책을 수립·실시하는 경우 취약계층 청년에 대한 별도의 지원방안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7조(청년 고용촉진 및 일자리의 질 향상)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청년고용을 촉진하고 청년 일자리의 질을 향상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취약계층 청년의 자립과 노동시장 진입을 위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19조(청년 능력개발 지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청년의 능력·재능·기술 등을 개발할 수 있는 교육환경을 조성하고 창의성과 전문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20조(청년 주거지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청년의 주거 안정 및 주거 수준 향상을 위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21조(청년 복지증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청년의 육체적·정신적 건강 증진과 삶의 질 개선 등 복지 증진을 위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23조(청년 문화활동 지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청년의 다양하고 창의적인 문화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 □ 「대구광역시 달성군 청년 기본 조례(조례)」 (2023.2.28. 일부개정·시행개정 전)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년”이란 대구광역시 달성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거주하는 19세 이상 39세 이하인 사람을 원칙으로 하되, 청년 정책 사업의 개별적 성격, 그 밖의 관계 법령에 따라 적용대상 연령을 다르게 할 수 있다.
2. “청년정책”이란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 청년의 참여 확대, 권익 증진, 자기계발 지원을 목적으로 대구광역시 달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추진하는 시책을 말한다.
3. “청년단체”란 청년에 대한 권익증진을 위하여 자발적으로 조직한 법인이나 단체를 말한다.
4. “청년활동”이란 청년정책의 활성화를 위하여 청년 또는 청년단체가 행하는 동아리, 친목 도모, 행사 또는 사업 등 다양한 활동을 말한다.
5. “청년시설”이란 청년활동을 지원하고 청년의 자발적인 참여를 이끌어냄으로써 청년정책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조성된 시설을 말한다.

**제15조(청년정책 사업 등)** ① 군수는 청년정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청년의 활동지원 및 참여 확대를 위한 사업
2. 청년의 능력계발을 위한 사업
3. 청년의 고용 확대 및 일자리 질 향상을 위한 사업
4. 청년의 주거안정을 위한 사업
6. 청년의 생활안정을 위한 지원 사업
7. 청년의 문화역량 제고 및 문화 향유권 확대를 위한 사업

# 대구광역시 달성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1. 의안번호: 제2515호

2. 제 출 일: 2024년 6월 13일

3. 제 출 자: 달성군수

## 4. 제안사유

-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구 등에 관한 규정 개정(3. 29.시행)에 따른 국장급 기구수 상한이 폐지됨에 따라 민선8기 공약 및 주요 현안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한 동력을 확보하기 위해 국을 신설하고, 정부 인력운영 방침인 인력재배치를 통해 일하는 조직, 책임 있는 조직운영을 위해 행정기구를 개편하고자 함.

## 5. 주요내용

- 조직개편에 따른 개정사항
  - 국 단위 개정사항 : 안 제5조, 제8조
    - 국 신설 : 기획전략국 - 기획예산과, 교육정책과, 도시공원과, 미래공간과
    - 명칭변경 : 교육복지국 → 주민복지국
  - 과 단위 개정사항 : 안 제4조, 제5조(신설), 제7 ~ 10조
    - 정책추진단 : 폐지
    - 기획예산실 : 명칭변경(기획예산실 → 기획예산과), 국 이동(기획예산실 → 기획전략국)
    - 교육정책과 : 국 이동(교육복지국 → 기획전략국)
    - 도시공원과 : 과 분리(공원녹지과 → 도시공원과, 산림과), 국 이동(문화관광국 → 기획전략국)

- 공공시설과 : 명칭변경(미래공간과), 국 이동(건설도시국 → 기획전략국)
- 일자리경제과 : 명칭 변경(경제산업과)
- 청소위생과 : 국 이동(경제환경국 → 주민복지국)
- 생활보장과 : 명칭 변경(사회복지과)
- 희망지원과 : 명칭 변경(행복나눔과)
- 안전총괄과 : 명칭 변경(안전하천과)
- 도시계획과 : 명칭 변경(도시정책과)
- 팀 단위 개정사항 : 안 제5조, 제7 ~ 10조, 제12조
  - 정책추진단 : 폐지(정책사업1, 정책사업2, 정책사업3)
  - 기획예산과 : 신설(정책사업, 인구청년정책)
  - 교육정책과 : 신설(교육협력), 명칭 변경(평생교육→교육청소년), 폐지(청소년)
  - 도시공원과 : 팀 이동(녹지, 정원, 공원개발, 공원관리 ← 공원녹지과)
  - 미래공간과 : 신설(공간지원), 명칭 변경(공공시설1→공간창조 / 공공시설2→공간조성)
  - 경제산업과 : 신설(원스톱기업), 폐지(사회적경제)
  - 농업정책과 : 신설(농촌활력)
  - 복지정책과 : 신설(노인시설)
  - 사회복지과 : 팀 이동(장애인복지 ← 행복나눔과, 주거의료복지 → 행복나눔과)
  - 행복나눔과 : 팀 이동(주거의료복지 ← 사회복지과, 장애인복지 → 사회복지과)
  - 건축과 : 명칭 변경(건축물관리 → 건축안전)
  - 문화예술과 : 신설(국가유산관리), 명칭 변경(국가유산 → 국가유산정책)
  - 관광과 : 명칭 변경(관광개발 → 관광개발1, 교도소후적지개발 → 관광개발2)
  - 산림과 : 신설(산림정책), 팀 이동(산림조성, 산림보호 ← 공원녹지과)
  - 건강증진과 : 명칭 변경(질환관리 → 방문보건)

## 6. 관계 법령

○ 「지방자치법」 제125조,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3조·제14조

## 7. 검토의견

- 본 개정조례안은 민선8기 공약 및 주요 현안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한 동력을 확보하기 위해 국을 신설하고, 일하는 조직, 책임 있는 조직 운영을 위해 행정기구를 개편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 새로운 행정수요 대응 및 군 주요 사업 추진을 위해 국 신설 및 과 분리, 명칭변경 등의 업무 조정을 개편하는 내용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24.3.29) 개정·시행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실·국·본부 기구 수 상한을 폐지하여 국장급 기구의 설치를 자율화함에 따라 본 조직개편은 상위법령에 저촉되지 않고,
- 현 정부 인력운영 방침에 따른 인력 재배치를 통해 군정 목표를 효율적으로 달성할 것으로 판단되어 본 개정조례안은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 붙임 1. 조례안 1부.  
2. 관계법령 1부. 끝.

# 대구광역시 달성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달성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 제목 “(국장 및 실·단·과·소장 등의 직급 등)” 을 “(국장 및 실·과·소장 등의 직급 등)” 으로 하고, 같은 조 중 “실장, 단장, 과장” 을 “실장, 과장” 으로 한다.

제3조 중 “위하여 자치행정국” 을 “위하여 기획전략국·자치행정국” 으로 한다.

제4조제1항 중 “기획예산실·법무감사실·정책추진단” 을 “법무감사실” 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및 제4항을 각각 삭제한다.

제5조부터 제23조까지를 각각 제6조부터 제24조까지로 하고, 제5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조(기획전략국) ① 기획전략국에 기획예산과, 교육정책과, 도시공원과, 미래공간과를 둔다.

② 기획전략국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기획·정책사업·예산·홍보·혁신평가·인구청년정책에 관한 사항

2. 교육기획 · 교육협력 · 보육 · 교육청소년에 관한 사항
3. 녹지 · 정원 · 공원개발 · 공원관리에 관한 사항
4. 공간기획 · 공간창조 · 공간조성 · 공간지원에 관한 사항

제7조(중전의 제6조)제1항 중 “일자리경제과 · 교통과 · 환경과 · 농업정책과 · 청소위생과” 를 “경제산업과 · 교통과 · 환경과 · 농업정책과” 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1호 및 제4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 제5호를 삭제한다.

1. 지역경제 · 에너지관리 · 기업지원 · 원스톱기업·일자리창출에 관한 사항
4. 농정기획 · 농촌활력 · 축산 · 가축방역 · 친환경농업 · 농산유통에 관한 사항

제8조(중전의 제7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8조(주민복지국) ① 주민복지국에 복지정책과 · 사회복지과 · 행복나눔과 · 청소위생과를 둔다.

② 주민복지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복지기획 · 노인복지 · 노인시설 · 여성가족에 관한 사항
2. 기초생활보장 · 장애인복지 · 복지조사 · 복지관리에 관한 사항
3. 복지나눔 · 복지연계 · 주거의료복지 · 드림스타트 · 아동보호에 관한 사항
4. 청소행정 · 재활용 · 폐기물관리 · 위생행정 · 위생지도 · 식품안전에 관한 사항

제9조(중전의 제8조)제1항 중 “건설과 · 안전총괄과 · 도시계획과 · 도

시정비과·건축과·공공시설과·토지정보과”를 “건설과·안전하천과·도시정책과·도시정비과·건축과·토지정보과”로 하고, 같은 항 제7호 중 “건축물관리”를 “건축안전”으로 하며, 같은 항 제8호를 삭제한다.

제10조(중전의 제9조)제1항 중 “문화예술과·체육진흥과·관광과·공원녹지과”를 “문화예술과·체육진흥과·관광과·산림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문화관광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문화예술·문화시설·국가유산정책·국가유산관리에 관한 사항
2. 체육진흥·공공체육시설·생활체육시설에 관한 사항
3. 관광정책·관광콘텐츠·관광개발에 관한 사항
4. 산림정책·산림조성·산림보호에 관한 사항

제12조(중전의 제11조)제3항제2호 중 “질환관리”를 “방문보건”으로 한다.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대구광역시 달성군 자치 군정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 본문 중 “기획예산실장”을 “기획예산과장”으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실·단·과장”을 “실·과장”으로 한다.

② 대구광역시 달성군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 같은 조제3호 및 제4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실·단·과장”을 각각 “실·과장”으로 한다.

③ 대구광역시 달성군 정책연구용역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4항제1호 다목 중 “국장·소장·실장·단장”을 “국장·소장·실장”으로 한다.

제14조제2항 본문 중 “실·단·과장”을 “실·과장”으로 한다.

④ 대구광역시 달성군 공무원직장협의회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항 및 제3조제3항 중 “실·단·과”를 각각 “실·과”로 한다.

⑤ 대구광역시 달성군 명예군민증 수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중 “실·단·과장”을 “실·과장”으로 한다.

⑥ 대구광역시 달성군 물품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항 중 “실·단·과”를 “실·과”로 한다.

⑦ 대구광역시 달성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0조 중 “국장 및 실·단·과장”을 “국·소장 및 실·과장”으로 한다.

⑧ 대구광역시 달성군 관광진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3조제2항제1호 중 “실·단·과장”을 “실·과장”으로 한다.

##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국장 및 실·단·과·소장 등의 직급 등) 대구광역시 달성군(이하 “군”이라 한다)본청의 국장 및 실장, 단장, 과장, 직속기관의 소장 및 과장, 하부행정기관의 장인 읍·면장 등의 직급 및 사무분장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2조(국장 및 실·과·소장 등의 직급 등) ----- 실장, 과장, ----- -----.
제3조(국의 설치) 군의 행정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자치행정국·경제환경국·교육복지국·건설도시국·문화관광국을 둔다.	제3조(국의 설치) ----- ----- 위하여 기획전략국·자치행정국·----- -----.
제4조(국에 속하지 아니하는 보좌·보조기관의 설치) ① 부군수 밑에 기획예산실·법무감사실·정책추진단을 둔다.	제4조(국에 속하지 아니하는 보좌·보조기관의 설치) ① -----법무감사실----- -----.
② 기획예산실장은 기획·예산·홍보·혁신평가에 관한 사항을 분장한다.	② (삭제)
③ (생략)	③ (현행과 같음)
④ 정책추진단장은 정책사업에 관한 사항을 분장한다.	④ (삭제)
제5조 ~ 제9조 (생략)	제6조 ~ 제10조 (현행 제5조 ~ 제9조와 같음)
(신설)	제5조(기획전략국) ① 기획전략국에

	<p>기획예산과, 교육정책과, 도시공원과, 미래공간과를 둔다.</p> <p>② 기획전략국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기획·정책사업·예산·홍보·혁신평가·인구청년정책에 관한 사항</li> <li>2. 교육기획·교육협력·보육·교육청소년에 관한 사항</li> <li>3. 녹지·정원·공원개발·공원관리에 관한 사항</li> <li>4. 공간기획, 공간창조, 공간조성, 공간지원에 관한 사항</li> </ol>
<p><b>제6조(경제환경국)</b> ① 경제환경국에 일자리경제과·교통과·환경과·농업정책과·청소위생과를 둔다.</p> <p>② (생략)</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지역경제·에너지관리·기업지원·일자리창출·사회적경제에 관한 사항</li> <li>2. ~ 3. (생략)</li> <li>4. 농정기획·축산·가축방역·친환경농업·농산유통에 관한 사항</li> <li>5. 청소행정·재활용·폐기물관리·위생행정·위생지도·식품안전에 관한 사항</li> </ol>	<p><b>제7조(경제환경국)</b> ① -----경제산업과·교통과·환경과·농업정책과-----.</p> <p>② (현행과 같음)</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지역경제·에너지관리·기업지원·원스톱기업·일자리창출-----</li> <li>2. ~ 3. (현행과 같음)</li> <li>4. 농정기획·농촌활력·축산·가축방역·친환경농업·농산유통-----</li> </ol> <p>(삭제)</p>
<p><b>제7조(교육복지국)</b> ① 교육복지국에</p>	<p><b>제8조(주민복지국)</b> ① 주민복지국에</p>

<p>교육정책과 · 복지정책과 · 생활보장 과 · 희망지원과를 둔다.</p>	<p>복지정책과 · 사회복지과 · 행복나눔 과 · 청소위생과-----.</p>
<p>② 교육복지국장은 다음 각 호의 사 항을 분장한다</p>	<p>② 주민복지국장은 다음 각 호의 사 항을 분장한다</p>
<p>1. 교육기획 · 보육 · 평생교육 · 청소년 에 관한 사항</p>	<p>1. 복지기획 · 노인복지 · 노인시설 · 여 성가족에 관한 사항</p>
<p>2. 복지기획 · 노인복지 · 여성가족에 관한 사항</p>	<p>2. 기초생활보장 · 장애인복지 · 복지조 사 · 복지관리에 관한 사항</p>
<p>3. 기초생활보장 · 복지조사 · 복지관 리 · 주거의료복지에 관한 사항</p>	<p>3. 복지나눔 · 복지연계 · 주거의료복지 · 드림스타트 · 아동보호에 관한 사항</p>
<p>4. ~ 7. (생략)</p>	<p>4. 청소행정 · 재활용 · 폐기물관리 · 위 생행정 · 위생지도 · 식품안전에 관한 사항</p>
<p>8. 복지나눔 · 복지연계 · 장애인복지 · 드림스타트 · 아동보호에 관한 사항</p>	<p>제8조(건설도시국) ① 건설도시국에 건설과 · 안전총괄과 · 도시계획과 · 도 시정비과 · 건축과 · 공공시설과 · 토지 정보과를 둔다.</p>
<p>제8조(건설도시국) ① 건설도시국에 건설과 · 안전총괄과 · 도시계획과 · 도 시정비과 · 건축과 · 공공시설과 · 토지 정보과를 둔다.</p>	<p>제9조(건설도시국) ① ----- 건설과 · 안전하천과 · 도시정책과 · 도 시정비과 · 건축과 · 토지정보과----- -----.</p>
<p>② (생략)</p>	<p>② (현행과 같음)</p>
<p>1. ~ 6. (생략)</p>	<p>1. ~ 6. (현행과 같음)</p>
<p>7. 건축행정 · 주택 · 공동주택관리 · 건 축물관리에 관한 사항</p>	<p>7. 건축행정 · 주택 · 공동주택관리 · 건 축안전에 관한 사항</p>
<p>8. 공간기획 · 공공시설에 관한 사항</p>	<p>8. (삭제)</p>
<p>9. (생략)</p>	<p>9. (현행과 같음)</p>
<p>제9조(문화관광국) ① 문화관광국에 문화예술과 · 체육진흥과 · 관광과 · 공</p>	<p>제10조(문화관광국) ① ----- 문 화예술과 · 체육진흥과 · 관광과 · 산림</p>

원녹지과를 둔다.	과-----.
② 문화관광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② 문화관광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u>문화예술·문화시설·국가유산에 관한 사항</u>	1. <u>문화예술·문화시설·국가유산정책·국가유산관리에 관한 사항</u>
2. (생략)	2. <u>체육진흥·공공체육시설·생활체육시설에 관한 사항</u>
3. <u>관광정책·관광콘텐츠·관광개발·교도소후적지개발에 관한 사항</u>	3. <u>관광정책·관광콘텐츠·관광개발에 관한 사항</u>
4. <u>녹지·정원·산림조성·산림보호·공원개발·공원관리에 관한 사항</u>	4. <u>산림정책·산림조성·산림보호에 관한 사항</u>
5. (생략)	
6. <u>체육진흥·공공체육시설·생활체육시설에 관한 사항</u>	
<b>제11조(소장) ① ~ ③ (생략)</b>	<b>제12조(소장) ① ~ ③ (현행과 같음)</b>
1. (생략)	1. (현행과 같음)
2. <u>건강증진·질환관리·가족보건·치매관리·건강증진센터운영</u>	2. ----- <u>방문보건</u> ----- -----

□ 「지방자치법」

제125조(행정기구와 공무원) ① 지방자치단체는 그 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정기구와 지방공무원을 둔다.

② 제1항에 따른 행정기구의 설치와 지방공무원의 정원은 인건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지방공무원의 정원이 적절하게 운영되고 다른 지방자치단체와의 균형이 유지되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권고할 수 있다.

④ 지방공무원의 임용과 시험·자격·보수·복무·신분보장·징계·교육·훈련 등에 관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

⑤ 지방자치단체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공무원을 둘 수 있다.

⑥ 제5항에 규정된 국가공무원의 경우 「국가공무원법」 제32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5급 이상의 국가공무원이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제청으로 소속 장관을 거쳐 대통령이 임명하고, 6급 이하의 국가공무원은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제청으로 소속 장관이 임명한다.

□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3조(시·군·구의 기구설치기준) ① 시·군·구 본청의 실·국이나 과·담당관과 자치구가 아닌 구의 과·담당관의 설치에 관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되, 인구 30만명 이상인 시·군·구는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자체감사기구를 두어야 한다.

② 시·군·구 본청의 실장·국장과 과장·담당관의 직급과 실·과·담당관의 사무분장 등에 관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한다.

③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제외한다)는 관할 시·군·구 조직간의 균형을 유지하기 위하여 기구의 설치·운영에 관한 지침을 작성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통보할 수 있다.

④ 시장·군수·구청장은 실·국과 실·과·담당관의 명칭과 사무분장을 시·도와 시·군·구간 사무의 연계성과 그 기능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정하여야 한다.

# 대구광역시 달성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1. 의안번호: 제2516호

2. 제 출 일: 2024년 6월 13일

3. 제 출 자: 달성군수

## 4. 제안사유

-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구 등에 관한 규정 개정(3. 29시행)에 따른 국장급 기구수 상한이 폐지됨에 따라 민선8기 공약 및 주요 현안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한 동력을 확보하기 위해 국을 신설하고, 정부 인력운영 방침인 인력재배치를 통해 일하는 조직, 책임 있는 조직운영을 위한 행정기구 개편에 따른 정원을 조정하고자 함.

## 5. 주요내용

- 조직개편에 따른 정원 조정(안 제2조)
  - 안 제2조(정원의 총수) 중 지방공무원 정원 개정 : 1,030명 → 1,040명
  - 안 제2조(정원의 총수) 제1호 집행기관의 정원 : 1,005명 → 1,015명

○ 직급별 정원채정기준 개정(안 별표2)

- 별정직 공무원 직급별 비율 조정

- 5급 상당 이상 : 30% 이상
- 6급 상당 : 40% 이내

○ 직급별 공무원 정원표 개정 : 인[별표 3]

- 총 정원 : 1,030명 → 1,040명(+10)
- 본청 정원 : 659명 → 669명(+10)
- 기타 직급별 세부 인원 조정

## 6.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제125조,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9조, 제30조, 제38조

## 7. 검토의견

○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시행 및 「대구광역시 달성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에 따른 행정기구 개편으로 정원을 조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 「지방자치법」 및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행정기구 설치와 지방공무원 정원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 5년간 기준인력을 동결하기로 한 현 정부 인력운영 방침에 따라 인력 재배치를 우선으로 하되, 새로운 행정수요에 대응하기에 인력증원 없는 인력 재배치만으로는 효율적인 행정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조직 구축에 한계가 있어 최소한의 인력을 증가한 것으로 보입니다.
- 정원 조정을 통해 민선8기 군정과제의 성공적 추진과 군의 주요 현안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할 것으로 판단되어 본 개정조례안은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 붙임 1. 조례안 1부.  
2. 관계법령 1부. 끝.

## 대구광역시 달성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달성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1,030명” 을 “1,040명” 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1,005명” 을 “1,015명” 으로 한다.

별표 2 및 별표 3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 부 칙

이 조례는 202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2조(정원의 총수) 대구광역시 달성군 (이하 “군” 이라 한다)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이하 “정원” 이라 한다)을 <u>1,030명</u>으로 하고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p> <p>1. 집행기관의 정원 : <u>1,005명</u></p> <p>[별표2] 직급별 정원책정기준(제3조제2항 관련)</p> <p>3. 별정직 공무원</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margin-top: 10px;"> <thead> <tr> <th style="width: 10%;">구 분</th> <th style="width: 15%;">5급상당 이상</th> <th style="width: 15%;">6급상당</th> <th style="width: 15%;">7급상당</th> <th style="width: 15%;">8급상당</th> <th style="width: 15%;">9급상당</th> </tr> </thead> <tbody> <tr> <td>비 율</td> <td style="text-align: center;">-</td> <td style="text-align: center;">70% 이내</td> <td style="text-align: center;">30% 이상</td> <td style="text-align: center;">-</td> <td style="text-align: center;">-</td> </tr> </tbody> </table> <p>[별표3] 정원관리기관별 직급별 정원표(제4조 관련)</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margin-top: 10px;"> <thead> <tr> <th style="width: 10%;">구 분</th> <th style="width: 10%;">총 계</th> <th style="width: 10%;">본 청</th> <th style="width: 10%;">의 회 사 무 국</th> <th style="width: 10%;">직 속 기 관</th> <th style="width: 10%;">읍 및 그 출 장 소</th> <th style="width: 10%;">면</th> </tr> </thead> <tbody> <tr> <td>총 계</td> <td style="text-align: center;">1,030</td> <td style="text-align: center;">659</td> <td style="text-align: center;">25</td> <td style="text-align: center;">111</td> <td style="text-align: center;">177</td> <td style="text-align: center;">58</td> </tr> <tr> <td>정무직 계</td> <td style="text-align: center;">1</td> <td style="text-align: center;">1</td> <td></td> <td></td> <td></td> <td></td> </tr> <tr> <td>군 수</td> <td style="text-align: center;">1</td> <td style="text-align: center;">1</td> <td></td> <td></td> <td></td> <td></td> </tr> <tr> <td>일반직 계</td> <td style="text-align: center;">995</td> <td style="text-align: center;">651</td> <td style="text-align: center;">25</td> <td style="text-align: center;">84</td> <td style="text-align: center;">177</td> <td style="text-align: center;">58</td> </tr> <tr> <td>3급</td> <td style="text-align: center;">1</td> <td style="text-align: center;">1</td> <td></td> <td></td> <td></td> <td></td> </tr> <tr> <td>4급</td> <td style="text-align: center;">8</td> <td style="text-align: center;">5</td> <td style="text-align: center;">1</td> <td style="text-align: center;">1</td> <td style="text-align: center;">1</td> <td></td> </tr> <tr> <td>5급</td> <td style="text-align: center;">43</td> <td style="text-align: center;">29</td> <td style="text-align: center;">2</td> <td style="text-align: center;">2</td> <td style="text-align: center;">7</td> <td style="text-align: center;">3</td> </tr> <tr> <td>6급이하 계</td> <td style="text-align: center;">943</td> <td style="text-align: center;">616</td> <td style="text-align: center;">22</td> <td style="text-align: center;">81</td> <td style="text-align: center;">169</td> <td style="text-align: center;">55</td> </tr> </tbody> </table>	구 분	5급상당 이상	6급상당	7급상당	8급상당	9급상당	비 율	-	70% 이내	30% 이상	-	-	구 분	총 계	본 청	의 회 사 무 국	직 속 기 관	읍 및 그 출 장 소	면	총 계	1,030	659	25	111	177	58	정무직 계	1	1					군 수	1	1					일반직 계	995	651	25	84	177	58	3급	1	1					4급	8	5	1	1	1		5급	43	29	2	2	7	3	6급이하 계	943	616	22	81	169	55	<p>제2조(정원의 총수) ----- ----- -----<u>1,040명</u>----- -----.</p> <p>1. ----- : <u>1,015명</u></p> <p>[별표2] 직급별 정원책정기준(제3조제2항 관련)</p> <p>3. 별정직 공무원</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margin-top: 10px;"> <thead> <tr> <th style="width: 10%;">구 분</th> <th style="width: 15%;">5급상당 이상</th> <th style="width: 15%;">6급상당</th> <th style="width: 15%;">7급상당</th> <th style="width: 15%;">8급상당</th> <th style="width: 15%;">9급상당</th> </tr> </thead> <tbody> <tr> <td>비 율</td> <td style="text-align: center;"><u>30% 이상</u></td> <td style="text-align: center;"><u>40% 이내</u></td> <td style="text-align: center;">30% 이상</td> <td style="text-align: center;">-</td> <td style="text-align: center;">-</td> </tr> </tbody> </table> <p>[별표3] 정원관리기관별 직급별 정원표(제4조 관련)</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margin-top: 10px;"> <thead> <tr> <th style="width: 10%;">구 분</th> <th style="width: 10%;">총 계</th> <th style="width: 10%;">본 청</th> <th style="width: 10%;">의 회 사 무 국</th> <th style="width: 10%;">직 속 기 관</th> <th style="width: 10%;">읍 및 그 출 장 소</th> <th style="width: 10%;">면</th> </tr> </thead> <tbody> <tr> <td>총 계</td> <td style="text-align: center;"><u>1,040</u></td> <td style="text-align: center;"><u>669</u></td> <td style="text-align: center;">25</td> <td style="text-align: center;">111</td> <td style="text-align: center;">177</td> <td style="text-align: center;">58</td> </tr> <tr> <td>정무직 계</td> <td style="text-align: center;">1</td> <td style="text-align: center;">1</td> <td></td> <td></td> <td></td> <td></td> </tr> <tr> <td>군 수</td> <td style="text-align: center;">1</td> <td style="text-align: center;">1</td> <td></td> <td></td> <td></td> <td></td> </tr> <tr> <td>일반직 계</td> <td style="text-align: center;"><u>1,005</u></td> <td style="text-align: center;"><u>661</u></td> <td style="text-align: center;">25</td> <td style="text-align: center;">84</td> <td style="text-align: center;">177</td> <td style="text-align: center;">58</td> </tr> <tr> <td>3급</td> <td style="text-align: center;">1</td> <td style="text-align: center;">1</td> <td></td> <td></td> <td></td> <td></td> </tr> <tr> <td>4급</td> <td style="text-align: center;"><u>9</u></td> <td style="text-align: center;"><u>6</u></td> <td style="text-align: center;">1</td> <td style="text-align: center;">1</td> <td style="text-align: center;">1</td> <td></td> </tr> <tr> <td>5급</td> <td style="text-align: center;">43</td> <td style="text-align: center;">29</td> <td style="text-align: center;">2</td> <td style="text-align: center;">2</td> <td style="text-align: center;">7</td> <td style="text-align: center;">3</td> </tr> <tr> <td>6급이하 계</td> <td style="text-align: center;"><u>952</u></td> <td style="text-align: center;"><u>625</u></td> <td style="text-align: center;">22</td> <td style="text-align: center;">81</td> <td style="text-align: center;">169</td> <td style="text-align: center;">55</td> </tr> </tbody> </table>	구 분	5급상당 이상	6급상당	7급상당	8급상당	9급상당	비 율	<u>30% 이상</u>	<u>40% 이내</u>	30% 이상	-	-	구 분	총 계	본 청	의 회 사 무 국	직 속 기 관	읍 및 그 출 장 소	면	총 계	<u>1,040</u>	<u>669</u>	25	111	177	58	정무직 계	1	1					군 수	1	1					일반직 계	<u>1,005</u>	<u>661</u>	25	84	177	58	3급	1	1					4급	<u>9</u>	<u>6</u>	1	1	1		5급	43	29	2	2	7	3	6급이하 계	<u>952</u>	<u>625</u>	22	81	169	55
구 분	5급상당 이상	6급상당	7급상당	8급상당	9급상당																																																																																																																																																		
비 율	-	70% 이내	30% 이상	-	-																																																																																																																																																		
구 분	총 계	본 청	의 회 사 무 국	직 속 기 관	읍 및 그 출 장 소	면																																																																																																																																																	
총 계	1,030	659	25	111	177	58																																																																																																																																																	
정무직 계	1	1																																																																																																																																																					
군 수	1	1																																																																																																																																																					
일반직 계	995	651	25	84	177	58																																																																																																																																																	
3급	1	1																																																																																																																																																					
4급	8	5	1	1	1																																																																																																																																																		
5급	43	29	2	2	7	3																																																																																																																																																	
6급이하 계	943	616	22	81	169	55																																																																																																																																																	
구 분	5급상당 이상	6급상당	7급상당	8급상당	9급상당																																																																																																																																																		
비 율	<u>30% 이상</u>	<u>40% 이내</u>	30% 이상	-	-																																																																																																																																																		
구 분	총 계	본 청	의 회 사 무 국	직 속 기 관	읍 및 그 출 장 소	면																																																																																																																																																	
총 계	<u>1,040</u>	<u>669</u>	25	111	177	58																																																																																																																																																	
정무직 계	1	1																																																																																																																																																					
군 수	1	1																																																																																																																																																					
일반직 계	<u>1,005</u>	<u>661</u>	25	84	177	58																																																																																																																																																	
3급	1	1																																																																																																																																																					
4급	<u>9</u>	<u>6</u>	1	1	1																																																																																																																																																		
5급	43	29	2	2	7	3																																																																																																																																																	
6급이하 계	<u>952</u>	<u>625</u>	22	81	169	55																																																																																																																																																	

연구직 계	4	4				
연구관						
연구사	4	4				
지도직 계	27			27		
지도관	2			2		
지도사	25			25		
별정직 계	3	3				
5급 상당						
6급상당 이하 계	2	2				
7급상당 이하 계	1	1				

연구직 계	4	4				
연구관						
연구사	4	4				
지도직 계	27			27		
지도관	2			2		
지도사	25			25		
별정직 계	3	3				
5급 상당	1	1				
6급상당 이하 계	1	1				
7급상당 이하 계	1	1				

【별표 2】 (개정 2024. 7. 1.)

**직급별 정원채정기준(제3조제2항 관련)**

1. 일반직 공무원

구 분	4급 이상	5급	6급	7급	8급	9급
비 율	1.1% 이내	5.9% 이내	27% 이내	31% 이내	28% 이내	7% 이상

비 고 : 읍·면의 공무원정원을 포함한다.

2. 연구직·지도직 공무원

구 분	연 구 직		지 도 직	
	연 구 관	연 구 사	지 도 관	지 도 사
비 율	3% 이내	97% 이상	10% 이내	90% 이상

비 고 : 읍·면의 공무원정원을 포함한다.

3. 별정직 공무원

구 분	5급상당 이상	6급상당	7급상당	8급상당	9급상당
비 율	<u>30% 이상</u>	<u>40% 이내</u>	30% 이상	-	-

비 고

1. 일반직과 별정직의 복수로 책정된 정원을 포함한다.
2. 읍·면의 공무원정원을 포함한다.

【별표 3】

정원관리기관별 직급별 정원표(제4조 관련)

구 분	총 계	본 청	의 회 사무국	직 속 기 관	읍 및 그 출장소	면
총 계	1,040	669	25	111	177	58
정무직 계	1	1				
군 수	1	1				
일반직 계	1,005	661	25	84	177	58
3급	1	1				
4급	9	6	1	1	1	
5급	43	29	2	2	7	3
6급이하 계	952	625	22	81	169	55
연구직 계	4	4				
연 구 관						
연 구 사	4	4				
지도직 계	27			27		
지 도 관	2			2		
지 도 사	25			25		
별정직 계	3	3				
5급 상당	1	1				
6급상당 이하 계	1	1				
7급상당 이하 계	1	1				

□ 「지방자치법」

제125조(행정기구와 공무원) ① 지방자치단체는 그 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정기구와 지방공무원을 둔다.

② 제1항에 따른 행정기구의 설치와 지방공무원의 정원은 인건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지방공무원의 정원이 적절하게 운영되고 다른 지방자치단체와의 균형이 유지되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권고할 수 있다.

④ 지방공무원의 임용과 시험·자격·보수·복무·신분보장·징계·교육·훈련 등에 관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

⑤ 지방자치단체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공무원을 둘 수 있다.

⑥ 제5항에 규정된 국가공무원의 경우 「국가공무원법」 제32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5급 이상의 국가공무원이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제청으로 소속 장관을 거쳐 대통령이 임명하고, 6급 이하의 국가공무원은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제청으로 소속 장관이 임명한다.

□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9조(직급별 정원) 지방자치단체의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합리적인 직급체제를 이룰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직급별 정원책정기준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30조(정원의 규정) ①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1. 집행기관의 정원(제2호와 제3호에 따른 공무원의 정원은 제외한다)
2. 분청·소방학교와 소방서에 두는 소방공무원의 정원

3. 지방공립대학에 두는 교육공무원의 정원

4. 의회사무기구의 정원

5. 합의제행정기관의 정원

②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지방전문경력관 규정」 제2조에 따른 지방전문경력관(이하 “지방전문경력관”이라 한다)의 정원을 포함한다]은 제1항에 따른 정원의 총수 범위에서 제22조제2항에 따른 정원관리기관별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다만, 시·도의 5급 이하(시·군·구는 6급 이하) 직급별 정원과 지방전문경력관의 정원은 조례로 그 총수만 정하고 그 범위에서 제22조제2항에 따른 정원의 관리기관별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한다.

③ 지방공무원의 직렬별 정원(지방전문경력관의 경우에는 「지방전문경력관 규정」 제4조 제1항에 따른 직위군별 정원을 말한다)은 제1항에 따른 정원의 총수 범위에서 제22조 제2항에 따른 정원관리기관별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한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에 따른 정원의 범위에서 공무원을 임용하거나 임용제청하여야 한다. 다만, 상위직급에 결원이 있을 경우에는 그 결원의 범위에서 동일 직렬의 직근 하위직급을 임용하거나 임용제청할 수 있다.

⑤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겸임의 경우에는 제4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38조(기구와 정원에 관한 조례·규칙의 입법예고)**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구나 정원의 조정을 내용으로 하는 조례·규칙의 제정·개정안을 마련한 경우에는 입법예고를 하여야 한다. 다만, 추가적인 경비가 소요되지 아니하거나 기구·정원의 감축 또는 하위직으로의 직급 조정을 내용으로 하는 경우(추가적인 경비가 소요되지 아니하지만 상위직으로의 직급 조정을 내용으로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입법예고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구와 정원의 조정으로 추가로 경비가 드는 조례안을 제1항에 따라 입법예고하는 경우 그 추가로 드는 경비를 나타내야 한다.

# 대구광역시 달성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1. 의안번호: 제2517호

2. 제출일: 2024년 6월 13일

3. 제출자: 달성군수

## 4. 제안사유

- 2023. 10. 23. 국민권익위원회의 「지방자치단체 통합재정안정화기금 관리·운용 합리성 제고」 방안에 따른 권고사항을 반영하여 통합기금의 효율적 관리 의무를 명시하고,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운영 내실화를 위해 심의사항 및 활동내역을 규정하여 통합기금의 투명하고 합리적인 운용체계를 개선하고자 함.

## 5. 주요내용

- 가. 재정안정화계정 적립 확대를 위한 적립기준 완화(안 제4조)
- 나. 고금리 예금 예치 등 효율적 운용관리 의무 명시(안 제5조)
- 다. 재정안정화계정 적립에 관한 사항 포함(안 제7조제2항제5호)
- 라. 금융기관 예치현황 및 심의내역 조항 신설(안 제7조제4항, 제7조제5항)
- 마. 통합기금의 존속기한 2029년 12월 31일까지 연장(안 제11조)

## 6. 관계법령

- 「지방기금법」 제4조, 제8조, 제13조, 제16조

## 7. 검토의견

- 본 개정조례안은 국민권익위원회의 「지방자치단체 통합재정안정화 기금 관리·운용 합리성 제고」 방안에 따른 권고사항을 반영하여 효율적으로 기금을 운용하기 위함입니다.
-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일반·특별회계, 각종 기금의 여유 재원을 효율적으로 통합 관리하기 위해 설치·운용하는 것입니다. 막대한 자금을 운용하는 통합기금을 저금리 예금에 방치하는 등의 문제로 작년 10월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지방자치단체 통합재정안정화기금 관리·운용 합리성 제고」 방안을 발표하였습니다.
- 이에 따라 통합기금 효율적 관리 의무규정을 신설하고, 재정안정화 계정 적립 확대를 위한 규정 개정, 통합기금 운용심의위원회 운영 내실화 등의 내용을 반영하여 개정하고,
- 「지방기금법」 제4조에 5년 이내의 범위에서 존속기한을 조례에 명시하도록 되어있어 존속기한을 2024년에서 2029년으로 변경한 것으로, 통합기금의 투명하고 합리적으로 운용체계를 개선하고 지방재정 책임성이 강화될 것으로 판단되어 조례의 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 붙임 1. 조례안 1부.  
2. 관계법령 1부. 끝.

## 대구광역시 달성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달성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제3호 중 “직전 회계연도”를 “직전 회계연도 결산서상”으로 하고, “150%”를 “110%”로 하며, “20%”를 “50%”로 한다.

제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5조(통합기금의 관리·운용) 군수는 통합기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별도의 기금 계좌를 설치하되, 여유재원에 대해서는 이자율이 높은 금융상품으로 예치·관리하고,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이 통합기금을 운용하여야 한다.

제7조제2항제5호를 제6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에 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재정안정화계정 적립에 관한 사항

④ 군수는 제2항 각 호 사항의 심의를 위하여 통합기금의 금융기관 예치현황(금융상품별 계좌번호·금액, 약정기간, 이자율, 예상 이자액 등)을 심의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⑤ 통합기금 담당부서의 장은 매년 다음 각 호의 심의위원회 활동 내역을 관리하여야 한다.

1. 심의위원회 회의 개최 실적
2. 심의위원회 주요 심의·의결 내용
3. 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변경사항 등

제11조 중 “2024년” 을 “2029년” 으로 한다.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4조(재정안정화계정의 재원과 용도)</p> <p>① (생략)</p> <p>② (생략)</p> <p>1. ~ 2. (생략)</p> <p>3. 직전 회계연도 일반회계 순세 계잉여금이 최근 3년 평균금액의 <u>150%</u>를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분의 <u>20%</u>이상에 해당하는 금액</p> <p>4. (생략)</p> <p>제5조(통합기금의 관리·이용)</p> <p><u>군수는 통합기금을 군 금고에 별도의 계좌를 설치하여 예치·관리하고,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운용하여야 한다.</u></p> <p>제7조(통합기금의 운용심의) ①(생략)</p> <p>② 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p>	<p>제4조(재정안정화계정의 재원과 용도)</p> <p>① (현행과 같음)</p> <p>② (현행과 같음)</p> <p>1. ~ 2. (현행과 같음)</p> <p>3. 직전 회계연도 결산서상 ----- ----- --<u>110%</u>----- -----<u>50%</u>----- --</p> <p>4. (현행과 같음)</p> <p>제5조(통합기금의 관리·이용)</p> <p><u>군수는 통합기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별도의 기금 계좌를 설치하되, 여유재원에 대해서는 이자율이 높은 금융상품으로 예치·관리하고,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이 통합기금을 운용하여야 한다.</u></p> <p>제7조(통합기금의 운용심의) ①(현행과 같음)</p> <p>② ----- -----.</p>

1. ~ 4. (생략)

<신설>

5. (생략)

③ (생략)

<신설>

<신설>

제11조(존속기한) 통합기금의 존속  
기한은 2024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1. ~ 4. (현행과 같음)

5. 재정안정화계정 적립에 관한  
사항

6. (현행 제5호와 같음)

③ (현행과 같음)

④ 군수는 제2항 각 호 사항의 심  
의를 위하여 통합기금의 금융기관  
예치현황(금융상품별 계좌번호·  
금액, 약정기간, 이자율, 예상 이  
자액 등)을 심의위원회에 보고하  
여야 한다.

⑤ 통합기금 담당부서의 장은 매  
년 다음 각 호의 심의위원회 활동  
내역을 관리하여야 한다.

1. 심의위원회 회의 개최 실적

2. 심의위원회 주요 심의·의결  
내용

3. 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변경사  
항 등

제11조(존속기한)-----  
- 2029년 -----  
--.

## □ 「지방기금법」

**제4조(기금의 존속기한)** ① 지방자치단체가 기금을 신설하여 운용하려는 경우에는 기금의 존속기한을 해당 조례에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법률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운용되는 기금과 「지방공기업법」 제19조제2항에 따른 지역개발을 위한 기금은 존속기한을 명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기금의 존속기한은 기금의 설치목적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기간으로 설정하여야 하며, 그 기간은 5년을 초과할 수 없다.

③ 존속기한을 넘어서까지 기금을 존치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조례를 개정하여 5년의 범위에서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지방재정법」 제33조제9항에 따른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금의 존속기한 및 통합·폐지에 관한 사항 등을 포함한 5년 단위의 기금정비계획을 매년 작성하여 이를 「지방재정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8조(기금운용계획 및 결산)**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고,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안과 기금결산보고서를 회계연도마다 각각 세입·세출 예산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지방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아야 한다.

③ 지방의회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동의 없이 기금운용계획안의 주요 항목 지출금액을 늘리거나, 새로운 비목(費目)을 설치할 수 없다.

④ 기금운용계획안 및 결산보고서의 작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3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 ① 지방자치단체는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기금별로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다만,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심의위원회를 통합하여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1. 제8조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결산보고서의 작성

2. 제14조에 따른 기금 운용의 성과 분석

3.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중요 사항으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심의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③ 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16조(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설치·운용)** ① 지방자치단체는 회계연도 간의 재정 수입 불균형 등의 조정 및 재정의 안정적 운용 또는 각종 회계·기금 운용 상 여유재원 또는 예치금의 통합적 관리를 위하여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하 “통합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할 수 있다. 통합기금은 통합 계정과 재정안정화 계정으로 구분하여 운용하여야 한다.

② 통합 계정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지방재정법」 제9조의2에 따라 다른 회계 또는 기금으로부터 예탁받는 자금(이하 이 조에서 “예수금”이라 한다)

2. 다른 회계 또는 기금에 예탁한 자금의 원금 및 이자 수입

3. 통합기금 운용으로 발생하는 수익금

③ 통합 계정의 용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다른 회계 및 기금으로의 예탁

2. 예수금 원금 및 이자 상환

3. 통합기금의 운용·관리에 필요한 경비

④ 재정안정화 계정은 세입 및 결산상 잉여금 등 다른 회계로부터의 전입금을 재원으로 한다. 다만, 특별회계로부터의 전입은 법령 또는 조례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 한정한다.

⑤ 재정안정화 계정의 용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다른 회계로의 전출

2. 지방채 원리금 상환

⑥ 지방자치단체가 한 회계연도에 재정안정화 계정에서 사용할 수 있는 금액은 전년도 말 기준 재정안정화 계정 적립금 총액 중 조례로 정하는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지방채 원리금 상환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통합기금의 조성, 용도 및 운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 대구광역시 달성군 학교복합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안 검토보고서

1. 의안번호: 제2518호

2. 제 출 일: 2024년 6월 13일

3. 제 출 자: 달성군수

## 4. 제안사유

- 학생과 지역주민이 함께 이용할 수 있는 학교복합시설의 설치에 따라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효율적인 시설 관리 및 운영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 5.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 및 정의(안 제1조~안 제2조)

나. 시설의 기능(안 제4조)

다. 시설의 설치 및 운영관리(안 제5조~안 제7조)

라. 시설의 위탁운영 등에 관한 사항(안 제8조~안 제11조)

## 6. 관계법령

- 「학교복합시설 설치 및 운영·관리에 관한 법률」 제3조, 제5조, 제6조

## 7. 검토의견

- 본 조례안은 학교복합시설 설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효율적으로 시설을 관리하고 운영하기 위함입니다.
- 학교복합시설 사업은 학생과 지역주민이 함께 이용할 수 있도록 학교 유휴부지 등에 교육·돌봄, 문화·체육·복지시설을 복합적으로 설치하는 사업으로, 지역 간 격차 감소 및 지역소멸 방지, 늘봄학교 지원 등을 위한 인프라를 구축하는 것입니다.
- 우리 군은 교육부에서 주관하는 ‘2023년 학교복합시설 공모사업’에 ‘화원초등학교 체육공원 조성 사업’, ‘달성중학교 어울림센터 건립 사업’ 2곳이 선정되어 학교복합시설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 학교복합시설을 설치함으로써 학생들에게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고 지역주민의 정주 여건을 개선할 것으로 예상되어 본 조례안의 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 붙임 1. 조례안 1부.  
2. 관계법령 1부. 끝.

# 대구광역시 달성군 학교복합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학교복합시설 설치 및 운영·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학생과 지역주민이 함께 이용할 수 있는 학교복합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학교”란 대구광역시 달성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있는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2. “학교복합시설”이란 「학교복합시설 설치 및 운영·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 ① 대구광역시 달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학교복합시설의 원활한 설치·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하며, 학교 및 지역주민 간의 유기적인 협력관계가 구축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학교복합시설의 설치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범죄, 안전사고 등의 위험으로부터 학생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책무를 다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

정적·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4조(기능)** 학교복합시설에서 수행하는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돌봄 및 다양한 방과 후 활동 지원
2. 학생과 주민의 정서 함양, 지역 문화 발전을 위한 문화·예술 활동 지원
3. 학교 교육 과정과 연계한 다양한 교육지원 프로그램 운영
4. 교양 및 능력 개발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 개설 운영
5. 여가선용(餘暇善用) 및 체력증진을 위한 체육시설 운영
6.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학교복합시설의 설치)**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학교복합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1. 학교복합시설을 설치하려는 학교의 「초·중등교육법」 제6조에 따른 감독기관의 장(이하 “감독기관의 장”이라 한다)이 학교복합시설을 설치하는 데 동의한 경우

2. 감독기관의 장이 학교복합시설을 설치하여 줄 것을 요청한 경우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감독기관의 장은 교육활동 및 지역사회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학교복합시설 설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군수와 협의하여 학교복합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제6조(학교복합시설의 운영 및 관리)** ① 학교복합시설은 제5조에 따라 학교복합시설을 설치한 자가 운영·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학생 또

는 지역주민의 주된 사용 공간, 이용 빈도 및 이용 시간 등을 고려하여 군수와 감독기관의 장이 협의하여 달리 정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보유한 운영·관리 권한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해당 학교복합시설의 운영·관리에 관한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다만, 이 위탁으로 해당 학교의 교육활동 및 학교운영이 제한 또는 침해받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1. 군이 출자하거나 출연하여 설립하고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지정·고시된 출자 또는 출연 기관

2. 「지방공기업법」 제5조, 제49조 및 제76조에 따라 군이 설립한 같은 법제3조제1항에 따른 지방공기업

3. 문화·체육·복지·교육 분야에 대한 운영 능력을 보유한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③ 군수가 제2항 본문에 따라 학교복합시설의 운영·관리업무를 위탁할 경우 수탁자와 위탁협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그 협약에서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도 정할 수 있다.

**제7조(운영지원)** 군수는 수탁자의 수탁사무 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수탁자에게 지원할 수 있다.

**제8조(수탁자의 의무 등)** ① 수탁자는 효율적으로 학교복합시설(이하 “시설”이라 한다)을 운영·관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한다.

② 수탁자는 제7조에 따라 받은 지원금을 시설 운영·관리에 적합한

목적으로만 사용하여야 한다.

- ③ 수탁자는 시설 내 기존 시설물을 변경하거나 새로운 시설물을 설치하려는 경우에 군수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수리나 경미한 보수에 대해서는 사후에 보고할 수 있다.

**제9조(지도 및 감독)** ① 군수는 수탁자로부터 시설의 위탁 운영·관리와 관련한 보고를 받을 수 있으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시설을 방문하여 위탁 관련 서류 일체 및 그 밖에 필요한 자료 등을 조사, 검사하게 할 수 있다.

-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조사, 검사 결과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시정요구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10조(위탁의 해지)**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제6조제3항에 따른 위탁협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불가피한 사유로 해지를 원하는 경우
2. 수탁자가 이 조례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3. 수탁자가 위탁협약을 위반한 경우
4. 수탁자가 수탁사무를 수행할 능력이 없다고 판단될 경우
5. 그 밖에 공익상 위탁 운영·관리를 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 ② 수탁자가 제1항제1호에 따라 위탁협약을 해지하고자 할 때에는 해지 예정일 90일 전까지 그 사유를 명시하여 서면으로 군수에게 통지해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긴급을 요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군수는 제1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유로 위탁협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한 문서로 수탁자에게 통보하고 사전에 의견 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11조(원상회복 및 손해배상)** ① 수탁자는 제10조제1항에 따라 위탁협약이 해지되거나 협약기간이 만료된 경우에는 시설의 원상회복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제8조제3항 본문에 따라 변경하거나 설치한 시설물로서 군수가 시설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청하는 때에는 그 시설물이 있는 상태로 반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원상회복이 불가능한 경우 수탁자는 그에 상응하는 비용을 배상하여야 한다.

**제12조(준용)** 이 조례에서 특별히 정한 것 이외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대구광역시 달성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대구광역시 달성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등을 따르거나 준용한다.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 「학교복합시설 설치 및 운영·관리에 관한 법률」

**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교복합시설의 원활한 설치·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교와 지역주민 간의 유기적인 협력관계가 구축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교복합시설의 설치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범죄, 안전사고 등의 위험으로부터 학생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책무를 다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력 및 예산을 확보하는 등 행정적·재정적 지원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5조(학교복합시설의 설치)**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학교복합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1. 학교복합시설을 설치하려는 학교의 「초·중등교육법」 제6조에 따른 감독기관의 장(이하 “감독기관의 장”이라 한다)이 학교복합시설을 설치하는 데 동의한 경우

2. 감독기관의 장이 학교복합시설을 설치하여 줄 것을 요청한 경우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감독기관의 장은 교육활동 및 지역사회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학교복합시설 설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하여 학교복합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학교복합시설을 설치하려는 경우 학교복합시설의 기획, 설계 및 공사 등의 건축은 각 항의 설치 주체가 시행하는 것으로 하되,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감독기관의 장이 협의하여 달리 정할 수 있다.

④ 학교복합시설의 소유권은 증축·개축, 리모델링 등 건축방식, 재정 분담 비율 등을 고려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감독기관의 장이 협의하여 정할 수 있으며, 사립학교의 경우에는 학교의 설립주체와 협의하여 정한다.

⑤ 학교복합시설의 설치 등 사업시행에 필요한 절차는 이 법에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학교시설사업 촉진법」에 따른다.

⑥ 그 밖에 학교복합시설의 설치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조(학교복합시설의 운영·관리 원칙)** ① 학교복합시설은 제5조에 따라 학교복합시설을 설치한 자가 운영·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학생 또는 지역주민의 주된 사

용 공간, 이용 빈도 및 이용 시간 등을 고려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감독기관의 장이 협의하여 달리 정할 수 있다.

② 학교복합시설을 운영·관리하는 자는 학생, 학부모, 교직원 및 지역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학교복합시설을 안전하고 쾌적하게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③ 학교복합시설을 운영·관리하는 자는 학교복합시설의 설치·운영으로 인하여 학생의 교육과정, 교직원의 업무 등 해당 학교의 정상적인 교육활동 및 학교운영이 제한 또는 침해받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④ 학교복합시설을 운영·관리하는 자는 해당 학교의 교육활동 및 학교운영이 제한 또는 침해받지 아니하도록 학교복합시설의 운영·관리에 관한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비영리법인, 단체 또는 제9조에 따른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⑤ 그 밖에 학교복합시설의 운영·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달성군 화원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위탁운영 동의안 검토보고서

1. 의안번호: 제2519호
2. 제 출 일: 2024년 6월 13일
3. 제 출 자: 달성군수
4. 제안사유

○ 장애인의 자활의욕을 고취하고 안정된 직업생활 영위와 경제적 자립을 촉진하고자 전문성 있는 위탁 기관을 선정하여 화원권역의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을 운영하고자 함.

## 5. 주요내용

### 가. 위탁대상 현황

시 설 명	소 재 지	시 설 규 모	비 고
달성군 화원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화원읍 비슬로 506길 14, 달성중 학교복합시설 내	630.94m <sup>2</sup>	※ 시설준공 : 2025년 7월 예정

### 나. 위탁대상 사무의 범위 및 내용

- 「대구광역시 달성군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제3조에 따른 사무

- 장애인 직업훈련 및 직업생활 시설 운영 전반

- (가칭)달성군 화원 장애인재활작업장 시설관리 전반

다. 위탁기간 : 5년(2025. 7. 1~ 2030. 6. 30) ※시설준공에 맞춰 변경 가능

라. 수탁기관 선정방식 : 공개모집(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

- 「대구광역시 달성군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른 공개모집

- 「동 조례」 및 「동 조례 시행규칙」에 따른 민간위탁심의위원회를 거쳐 선정

마. 향후일정

- 2024. 6. : 민간위탁 공개모집

- 2024. 6. ~ 2024. 7. : 수탁기관 선정 및 위·수탁 협약 체결

- 2025. 7. : 건물 준공 및 화원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위탁운영

## 6. 관계법령

○ 「장애인복지법」 제58조, 제59조,

「대구광역시 달성군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제3조, 제4조

## 7. 검토의견

○ 본 (가칭)달성군 화원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위탁운영 동의안은 장애인의 자활의욕 고취와 경제적 자립 촉진을 위해 화원지역의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을 설치하고 전문성 있는 위탁기관을 선정하여 권역별로 장애인 복지를 증진하고자 의회 동의를 구하는 것으로

○ 위탁시설은 현재 학교복합시설사업에 포함된 화원읍 비슬로 506길 14, 달성중학교 내 2층 630.94㎡이며, 위탁대상 사무는 장애인 직업

훈련 및 직업재활시설 관리 운영 전반이며, 위탁기간은 2025. 7. 1.  
~ 2030. 6. 30.까지입니다.

- 본 시설은 일반 작업환경에서 일하기 어려운 장애인이 특별히 준비된 작업환경에서 직업훈련을 받거나 직업생활을 하여야 하므로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을 다년간 운영한 노하우와 전문인력을 보유한 기관에 민간 위탁 운영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붙임 1. 관계법령 1부.

2. 민간위탁 적정성 사전 검토서 1부. 끝.

□ 「장애인복지법」

제58조(장애인복지시설) ①장애인복지시설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장애인 거주시설: 거주공간을 활용하여 일반가정에서 생활하기 어려운 장애인에게 일정 기간 동안 거주·요양·지원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동시에 지역사회생활을 지원하는 시설
2. 장애인 지역사회재활시설 : 장애인을 전문적으로 상담·치료·훈련하거나 장애인의 일상생활, 여가활동 및 사회참여활동 등을 지원하는 시설
3.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 일반 작업환경에서는 일하기 어려운 장애인이 특별히 준비된 작업환경에서 직업훈련을 받거나 직업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시설(직업훈련 및 직업 생활을 위하여 필요한 제조·가공 시설, 공장 및 영업장 등 부속용도의 시설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포함한다)
4. 장애인 의료재활시설: 장애인을 입원 또는 통원하게 하여 상담, 진단·판정, 치료 등 의료재활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②제1항 각 호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의 구체적인 종류와 사업 등에 관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59조(장애인복지시설 설치) 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복지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규정된 자 외의 자가 장애인복지시설을 설치·운영하려면 해당 시설 소재지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신고한 사항 중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할 때에도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제62조에 따른 폐쇄 명령을 받고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시설의 설치·운영 신고를 할 수 없다.

③ 시장·군수·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④ 제58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장애인 거주시설의 정원은 30명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특수한 서비스를 위하여 일정 규모 이상이 필요한 시설 등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제58조제1항제4호에 따른 의료재활시설의 설치는 「의료법」에 따른다.

⑥ 제2항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의 시설기준·신고·변경신고 및 이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 □ 「대구광역시 달성군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제3조(시설의 종류 및 업종)** 대구광역시 달성군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이하 “재활시설”이라 한다)은 「장애인복지법」 제58조제1항제3호의 장애인 직업재활시설로 하며, 그 업종은 장애인들이 충분히 일할 수 있는 업종으로 한다.

**제4조(운영의 위탁)** ① 재활시설은 필요한 경우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에 위탁 운영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재활시설을 수탁 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신청하여야 하며, 군수는 신청자 중에서 수탁운영자(이하 “수탁자”라 한다)를 지정하여 별지 제2호 서식의 위탁운영 결정통지서를 교부한다. 위탁운영기간을 갱신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③ 군수는 위탁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붙임

민간위탁 적정성 사전 검토서

## 민간위탁 적정성 사전 검토서

### 1 기본 검토사항

대상사무	달성군 화원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민간위탁 운영
민간위탁 추진목적	○ 장애인의 자활의욕을 고취하고 안정된 직업생활 영위와 경제적 자립을 촉진하고자 전문성 있는 위탁 기관을 선정하여 화원권역의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을 운영하고자 함
위탁근거	○ 법적 근거 - 「장애인복지법」 제58조, 제59조 - 「대구광역시 달성군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제3조, 제4조 - 「대구광역시 달성군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 제5조 - 「대구광역시 달성군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시행규칙」 제2조
위탁내용	○ 추진경위 - 화원지역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의 운영으로 권역별 장애인 복지 증진에 기여 ○ 위탁기간: 5년 ○ 위탁내용 - 「대구광역시 달성군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제3조에 따른 장애인 직업훈련 및 직업생활시설 운영 전반 - 달성군 화원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시설관리 전반 ○ 다른 사무방식으로의 수행 가능성 : 불가 - 직접 운영 시 문제점 · 재활시설 운영 및 직업훈련 관리자의 직접 채용이 어려움 · 장애인 직업훈련 전문지식 부족으로 인한 서비스 질 저하

<p>적 정 성 검 토</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서비스 공급의 공공성 및 안정성 : 확보 가능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정부 정책에 맞는 맞춤형 장애인 직업재활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공공성을 확보하고 담당부서의 지속적인 관리 감독을 통한 안정성 확보</li> </ul> </li> <li>○ 경제적 효율성 : 확보 가능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적절한 운영 예산 편성으로 경제적 효율성 확보</li> </ul> </li> <li>○ 민간의 전문지식 및 기술 활용 가능성 : 확보 가능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을 다년간 운영하여 쌓은 노하우와 전문인력을 보유하고 있는 기관에 위탁하여 해당 기관의 자원을 그대로 활용 가능</li> </ul> </li> <li>○ 성과 측정의 용이성 : 확보 가능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장애인 직업재활 프로그램 추진실적을 통하여 성과 측정 가능</li> </ul> </li> <li>○ 관리 및 운영의 투명성 : 확보 가능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연간 1회 이상 민간위탁사무 자체 감사를 통해 관리 및 운영의 투명성 점검 및 보조금 정산</li> </ul> </li> </ul>
<p>수 탁 기 관 선 정 방 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선정방법 : 공개모집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위탁대상 :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li> <li>- 위탁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대구광역시 달성군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른 공개모집</li> <li>· 「동 조례」 및 「동 조례 시행규칙」에 따른 민간위탁심의위원회를 거쳐 선정</li> </ul> </li> </ul> </li> </ul>
<p>민 간 위 탁 금 *예산지원형 위탁시 기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신규 위탁 : 연간 위탁금 예상액( 400,000천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위탁 금액의 세부적인 사항은 수탁기관 선정 후 사업계획 수립에 따라 담당부서(희망지원과) 검토 후 보조금의 범위 내 지원</li> </ul> </li> </ul>

<p>기대효과 및 향후 계 획</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기대효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화원지역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의 운영으로 권역별 장애인 복지 증진에 기여</li> <li>- 전문기관 운영 위탁으로 업무의 전문성 및 효율성 증대</li> </ul> </li> <li>○ 향후계획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024. 6. : 민간위탁 모집공고</li> <li>- 2024. 6. ~ 2024. 7. : 수탁기관 선정 및 위·수탁 협약체결</li> <li>- 2024. 7. ~ 2025. 6. : 건물 설계 및 리모델링 공사</li> <li>- 2025. 7. : 건물 준공 및 화원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위탁운영</li> </ul> </li> </ul>
<p>전 문 가 의 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민간위탁심의위원회 심의 예정</li> </ul>

## ② 시설위탁 시 작성

시설개요	시설명	(가칭)화원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소재지	달성군 화원읍 비슬로506길 14, 달성중 학교복합시설 건물 내		
	시설규모	연면적 630.94㎡		
	시설용도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준공일자	2025. 7. (예정)	개원일자	2025. 7. (예정)
	이용대상	화원 지역(달성군) 장애인	수용인원	40명 정도
	보유장비	사무실(가구, PC 등), 직업재활시설 관련 장비 (위탁기관 선정 후 업종을 고려하여 결정)		
위치도				
지역여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도5호선을 인접하고 있어 대중교통 이용이 편리하여 지리적 접근성 용이</li> <li>○ 학교복합시설 사업의 일환으로 건물 1층~4층까지 문화, 복지, 교육 시설로 구성하여 지역 정주여건 개선</li> </ul>			

# 달성청년혁신센터 공유재산 사용료 면제 동의안 검토보고서

1. 의안번호: 제2520호

2. 제 출 일: 2024년 6월 13일

3. 제 출 자: 달성군수

## 4. 제안사유

- 달성청년혁신센터가 위치해 있는 달성여성문화복지센터 별관 3, 4층 (645.58㎡)에 대한 공유재산 사용료 면제를 통해 청년(예비)창업가 모집 및 입주·정착 지원, 실전창업교육 및 아카데미 운영, 청년들의 커뮤니티 및 청년세대간의 소통을 지원하여 청년창업을 성공시키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

## 5. 주요내용

### ○ 시설물 현황

- 기 관 명 : 달성청년혁신센터
- 위 치 : 화원읍 성천로 5(달성군여성문화복지센터 별관 3, 4층)
- 수탁기관 : 대구경북과학기술원
- 수탁기간 : 2023. 1. 1. ~ 2025. 12. 31.(3년)
- 규 모 : 518.16㎡

시 설 명	층 별	연면적	시 설 구 성	비 고
달성청년 혁신센터	3층	259.08㎡	- START-UP 카페 - 센터 사무실, 디지털 스튜디오	
	4층	259.08㎡	- 입주기업사무실 - 메이커 스페이스, 회의실	

### ○ 추진상황

- 2022. 7. : 달성청년혁신센터 설립계획 수립
- 2022. 9. : 센터 설치·운영 조례 제정 및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 승인
- 2022. 11. : 수탁기관 선정(DGIST)
- 2022. 12. : 위·수탁 협약체결, 리모델링 착공
- 2023. 2. : 민간위탁금 교부, 신규 직원 채용
- 2023. 3. : 리모델링 준공
- 2023. 4. : 달성청년혁신센터 개소
- 2023. 4. ~ 현재 : 기업 입주 및 창업 프로그램 등 운영

### ○ 사용료 면제

- 근 거 : 「특정연구기관 육성법」 및 동법 시행령에 의거  
대구경북과학기술은 공유재산 사용료 면제 대상
- 면제규모 : 518.16㎡(달성청년혁신센터 3, 4층)
- 면제기간 : 2023. 1. 1. ~ 2025. 12. 31.(3년)

## 6. 관계법령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  
「특정연구기관 육성법」, 「대구광역시 달성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 7. 검토의견

- 본 달성혁신센터 공유재산 사용료 면제 동의안은 달성청년혁신센터가 위치해 있는 화원읍 성천로 5, 달성여성문화복지센터 별관 3층 및 4층 연면적 645.58㎡에 대해 수탁기관인 대구경북과학기술원에 사용료를 면제해 주기 위해 의회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것으로
- 청년혁신센터는 청년(예비)창업가 모집 및 입주·정착 지원, 실전창업교육 및 아카데미 운영, 청년들의 커뮤니티 및 청년세대간의 소통을 지원하여 청년창업을 성공시키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위탁운영하는 기관으로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4조(사용료의 감면)제1항제4호,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사용허가의 방법)제3항제14호, 특정연구기관 육성법 제2조(특정연구기관)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연구기관의 지정)제3호에 따라 대구경북과학기술원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구기관으로 사용료 면제 대상이므로 수탁기간 중 사용료 면제는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붙임 1. 관계법령 1부. 끝.

##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의2(공유재산관리계획)**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의회에서 예산을 의결하기 전에 중기공유재산관리계획에 따라 매년 다음 회계연도의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이하 “공유재산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그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 확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한 후 부득이한 사유로 그 내용이 취소되거나 일부를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②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는 회계연도 개시 50일 전까지,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회계연도 개시 40일 전까지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지방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회계연도 중에 사업계획이 변경되거나 긴급하게 공유재산을 취득·처분하여야 할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 회계연도 중에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제출할 수 있다. 이 경우 제출 절차는 「지방자치법」 제55조에 따른다.

④ 공유재산관리계획에 포함하여야 할 공유재산의 범위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 공유재산관리계획에 관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았을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7조제1항제6호에 따른 중요 재산의 취득·처분에 관한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은 것으로 본다.

**제16조(공유재산심의회)** ① 공유재산의 관리 및 처분에 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자문하기 위하여 각 지방자치단체에 공유재산심의회를 둔다.

② 제1항에 따른 공유재산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제10조 및 제10조의2에 따라 중기공유재산관리계획 또는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는 경우
2. 제11조에 따라 행정재산의 용도를 변경하거나 폐지하려는 경우
3. 제11조에 따라 일반재산을 행정재산으로 용도를 변경하려는 경우
4. 제12조 단서에 따라 무상으로 회계 간의 재산 이관을 하는 경우
5. 제24조 또는 제34조 및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라 사용료 또는 대부료를 감면하는 경우
6. 그 밖에 공유재산의 관리·처분 등에 대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경우

③ 제1항에 따른 공유재산심의회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2명을 포함한 7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1. 위원장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부단체장으로 한다.

2. 부위원장은 해당 지방자치단체 소속 재산관리 담당 국장과 민간위원 각 1명으로 하되, 민간위원인 부위원장은 공유재산심의회에서 호선한다.

3. 위원은 해당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과 공유재산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민간위원의 정수는 전체 위원 정수의 과반수가 되어야 한다.

④ 그 밖에 공유재산심의회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4조(사용료의 감면)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재산의 사용허가를 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제22조에도 불구하고 그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1. 국가나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해당 행정재산을 공용·공공용 또는 비영리 공익사업용으로 사용하려는 경우

2. 제7조제2항제1호에 따라 행정재산으로 할 목적으로 기부를 받아들인 재산에 대하여 기부자, 그 상속인, 그 밖의 포괄승계인에게 사용허가하는 경우

3. 건물 등을 신축하여 기부채납을 하려는 자가 신축기간에 그 부지를 사용하는 경우

**4. 재난을 입은 지역주민에게 일정 기간 사용허가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로서 지방의회가 동의한 경우**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2조에도 불구하고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용료를 감경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재산의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재난으로 그 재산을 일정 기간 사용하지 못하였을 때에는 복구 완료기간의 사용료와 그 이자를 일할계산하여 감경할 수 있다.

##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13조(사용허가의 방법) ①** 법 제20조제2항에 따라 일반입찰, 제한경쟁 또는 지명경쟁에 부치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지정·고시하는 정보처리장치(이

하 “지정정보처리장치”라 한다)를 이용하여 입찰공고 및 개찰·낙찰 선언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일간신문 등에 게재하는 방법을 병행할 수 있다.

② 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일반입찰, 제한경쟁 또는 지명경쟁은 사용료 예정 가격 이상으로 입찰한 1개 이상의 유효한 입찰이 있는 경우에 최고가격으로 응찰한 자를 낙찰자로 한다.

③ 법 제20조제2항제1호에 따라 수의(隨意)의 방법으로 행정재산의 사용허가를 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가·지방자치단체·공법인·공익법인이 직접 사용하려는 경우
2. 일단(一團)의 면적이 1만제곱미터 이하인 농경지를 경작의 목적으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거주하는 농업인(「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사용허가를 하는 경우
3. 청사(廳舍)의 구내재산을 공무원 후생 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그 재산의 사용허가를 하는 경우
4. 법률에 따라 해당 재산의 무상 사용허가를 받을 수 있는 자에게 그 재산의 유상 사용허가를 하는 경우
5. 법 제24조제1항 또는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사용료 면제의 대상이 되는 자에게 사용허가를 하는 경우
6. 사용허가의 신청 당시 제31조제2항 각 호의 방법을 적용해서 산출한 가격(행정재산 중 일부에 대해 사용허가를 하는 경우에는 해당 행정재산 전체의 가격을 말한다)이 1천만원(특별시·광역시의 자치구에 소재하는 재산인 경우에는 3천만원) 이하인 재산의 사용허가를 하는 경우
7. 2회에 걸쳐 유효한 일반입찰이 성립되지 아니한 경우
8. 지역경제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해당지역특산품 또는 해당지역생산제품 등을 생산·전시 및 판매하는데 필요하다고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경우
9.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사업을 위하여 이전하는 공익시설의 소유자가 그 공익시설과 직접 관련된 재산을 그 공익시설을 이전하는 기간 동안 사용하려는 경우
10. 건물 등을 신축하여 기부하려는 자가 신축기간 동안 그 부지를 사용하는 경우
11.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재난(이하 “재난”이라 한다)의 복구 및 구호 목적을 위해 사용허가를 하는 경우
12. 공익사업을 위하여 자진철거를 전제로 하여 임시로 사용허가를 하는 경우

13. 다른 법률에 따라 공유재산을 우선 임대할 수 있는 자에게 그 재산의 사용허가를 하는 경우

14.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특정연구기관 육성법」 제2조에 따른 특정연구기관(이하 “정부출연연구기관등”이라 한다) 또는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42조제1항에 따른 전문생산기술연구소에 사용허가를 하는 경우

15. 지방자치단체와 재산을 공유하는 자에게 지방자치단체의 지분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해 사용허가를 하는 경우

16. 지방자치단체의 현재의 사용 및 이용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해당 공유재산의 공중·지하에 건물이 아닌 공작물을 설치하는 경우

17. 공유재산을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 따른 창업기업에 창업을 위한 사무실 또는 사업장 등 창업 공간(창업보육센터는 제외하며, 이하 “창업공간”이라 한다)으로 사용허가를 하는 경우

18.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구 또는 단체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기구 또는 단체에 사용허가를 하는 경우

가. 국제기구(국제연합과 그 산하기구·전문기구, 정부 간 기구, 준정부 간 기구를 말한다)

나. 50개국 이상의 서로 다른 국가의 회원을 보유한 비영리민간단체

19. 이동용 음식판매 용도의 자동차를 이용하여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가목의 휴게음식점영업 또는 같은 호 바목의 제과점영업을 하려는 사람에게 사용허가를 하는 경우

20.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한 비영리 공공법인 또는 공법인의 비영리사업을 위하여 사용허가를 하는 경우

21.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수립한 일자리정책에 따라 미취업 청년 등 미취업자의 창업을 위해 행정재산의 사용허가를 하는 경우

22.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취약계층 고용비율을 충족하는 다음 각 목의 기업 또는 조합에 사용허가를 하는 경우

가.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

나.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

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8조에 따른 자활기업

라.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항제9호에 따른

마을기업으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적합한 기업

23. 「고용보험법」 제19조제2항에 따른 우선지원 대상기업으로서 청년 친화적 근로조건을 갖추고 있다고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공고하는 기업에 사용허가를 하는 경우

24. 제1호부터 제23호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행정재산의 위치·형태·용도 등이나 계약의 목적·성질 등으로 보아 일반입찰에 부치기 곤란한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그 내용 및 범위를 정한 경우

④ 법 제20조제2항제1호에 따라 제한경쟁의 방법으로 행정재산의 사용허가를 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해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주소를 둔 자로 한정하여 경쟁에 부칠 필요가 있는 경우

2. 재산의 위치·형태·용도나 계약의 목적·성질 등을 고려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주소를 둔 자로 한정하여 경쟁에 부칠 필요가 있는 경우

⑤ 법 제20조제2항제1호에 따라 지명경쟁의 방법으로 행정재산의 사용허가를 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토지의 용도 등을 고려할 때 해당 재산에 인접한 토지의 소유자를 지명하여 경쟁에 부칠 필요가 있는 경우

2. 제3항에 따른 사용허가의 신청이 경합하는 경우

3.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재산의 위치·형태·용도 등이나 계약의 목적·성질 등으로 보아 사용허가를 받을 자를 지명할 필요가 있는 경우

⑥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3항제19호에 따라 수의의 방법으로 행정재산의 사용허가를 하는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모집방법과 우선대상자 선정기준 등을 정하여 1명 이상에게 일수별 또는 시간별로 하나 이상의 행정재산을 사용·수익하게 할 수 있다.

**제17조(사용료 감면)** ① 법 제24조제1항제2호에 따른 사용료 면제기간은 기부채납된 재산의 가액을 연간 사용료로 나눈 연수(年數)를 초과할 수 없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 제4조제1항제5호에 따른 지식재산(이하 “지식재산”이라 한다)의 사용료 면제기간은 20년으로 한다.

③ 건물이나 그 밖의 시설물을 기부채납한 경우에는 공유재산인 그 부지의 사용료를 제1항의 연간 사용료에 합산한다. 다만, 부지 사용료를 따로 받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기부채납된 재산의 가액과 제3항에 따라 연간 사용료에 합산할 부지 사용료를 계산할 때 기준이 되는 부지의 가액은 최초의 사용허가 당시를 기준으로

제31조를 준용하여 산출하며, 사용료는 예상수익을 고려하여 결정한다.

⑤ 법 제24조제1항제4호에서 “재난을 입은 지역주민에게 일정 기간 사용허가 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재해를 입은 지역주민에게 일정 기간 사용허가를 하는 경우
2.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사업을 위하여 이전하는 공익시설의 소유자가 그 공익시설과 직접 관련된 재산을 그 공익시설을 이전하는 기간 동안 사용하려는 경우
- 2의2.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한 비영리 공공법인 또는 공법인의 비영리 사업을 위한 경우
3.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또는 지방공단의 비영리사업을 위한 경우
4. 제13조제3항제8호 및 제14호에 해당하여 수의의 방법으로 사용허가를 하는 경우
5. 「지방자치법」 제176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조합(이하 “지방자치단체조합”이라 한다) 중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구성원인 지방자치단체조합에 사용허가를 하는 경우

⑥ 법 제24조제2항에서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제13조제3항제8호에 해당하여 수의의 방법으로 사용허가를 한 경우
2. 제13조제3항제21호·제22호 또는 제23호에 해당하여 수의의 방법으로 사용허가를 한 경우
3.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귀책사유로 사용허가를 받은 행정재산의 사용에 제한을 받은 경우. 다만, 법 제21조제4항제2호에 따라 허가기간을 연장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4. 「지역 산업위기 대응 및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특별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고용정책 기본법」 제32조의2에 따라 선포된 고용재난지역 또는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고시하는 지역에 있는 행정재산의 사용허가를 한 경우

⑦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24조제2항에 따라 행정재산의 사용료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경할 수 있다.

1. 제6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사용료의 100분의 30

2. 제6항제2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 사용료의 100분의 50
3. 제6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 사용·수익하지 못한 기간에 대한 사용료의 100분의 100

## □ 「특정연구기관 육성법」

제2조(특정연구기관) 이 법에 따라 정부의 보호·육성을 받을 수 있는 연구기관은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연구기관과 재단법인인 연구기관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지정하는 연구기관(이하 “특정연구기관”이라 한다)으로 한다.

## □ 「특정연구기관 육성법 시행령」

제3조(연구기관의 지정) 법 제2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구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연구기관을 말한다.

1. 「한국과학기술원법」에 따른 한국과학기술원
2. 「광주과학기술원법」에 따른 광주과학기술원
3. 「대구경북과학기술원법」에 따른 대구경북과학기술원
- 3의2. 「울산과학기술원법」에 따른 울산과학기술원
4.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법」에 따른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5. 「방사선 및 방사성동위원소 이용진흥법」 제13조2에 따른 한국원자력의학원
6. 「원자력안전법」 제6조에 따른 한국원자력통제기술원
7. 「한국연구재단법」에 따른 한국연구재단
8. 「과학기술기본법」에 따른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및 한국과학창의재단
9. 「산업기술혁신 촉진법」에 따른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 한국세라믹기술원 및 한국산업기술시험원
10. 「정보통신산업 진흥법」에 따른 정보통신산업진흥원
11.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4조에 따른 기초과학연구원

# 대구광역시 달성군 농공단지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1. 의안번호: 제2523호

2. 제 출 일: 2024년 6월 13일

3. 제 출 자: 달성군수

## 4. 제안사유

- 달성군에 조성된 농공단지의 효율적인 관리와 활성화에 필요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공단지 및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

## 5. 주요내용

- 가. 조례 제정 목적, 정의 및 적용범위(안 제1조 ~ 제3조)
- 나. 농공단지 활성화 지원(안 제4조)
- 다. 입주기업체 지원(안 제5조)
- 라. 입주기업협의회 설립 및 운영, 기능(안 제6조 ~ 제7조)
- 마. 관리업무의 위탁 등에 관한 사항(안 제8조 ~ 제10조)

## 6. 관계법령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30조~제31조, 제44조

## 7. 검토의견

- 본 조례안은 농촌지역의 농민 소득 증대를 위한 산업을 유치하고 육성하기 위해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8조를 근거로 지정된 농공단지에 대하여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1조제10항에 따라 관리의 효율성과 운영의 활성화를 위해 지원함으로써 농공단지와 지역경제 모두 발전할 수 있도록 기반을 마련하는 것으로
- 도농복합지역인 우리 군 특성상 현재 구지(구지면 고봉리)와 옥포(옥포읍 강림리 및 논공읍 금포리)에 각각 1개씩 농공단지가 지정되어 관리·운영되고 있습니다.
- 현재까지 6개 광역지자체와 21개 기초지자체에서 관련 조례를 제정하였으며, 대구광역시 내에서는 현재 군위군도 입법예고 중에 있습니다.
- 본 조례안이 농공단지 내 입주기업체에 대한 경영 지원과 근로자의 복지증진 등 근무환경에 대한 개선 등 다양한 지원으로 농공단지가 활성화되고 지역경제가 발전할 수 있도록 마중물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며, 조례의 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 붙임 1. 조례안 1부.  
2. 관계법령 1부. 끝.

# 대구광역시 달성군 농공단지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달성군에 조성된 농공단지의 효율적인 관리와 활성화에 필요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여 농공단지 및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공단지”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 라목에 따른 산업단지로서 대구광역시 달성군(이하 “군”이라 한다)이 조성한 것을 말한다.
2. “농공단지의 관리”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15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에 따른 업무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농공단지 활성화 및 지원과 농공단지 관리에 관하여 법령 및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농공단지 활성화 지원)** ① 대구광역시 달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농공단지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거나 이 사업을 하는 법인, 단체 등에 대한 지원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할 수 있다.

1. 농공단지 입주기업체 근로자의 복리증진에 관한 사업
2. 농공단지 내 노후화된 기반시설 및 공공시설의 설치·정비에 관한 사업

3. 산업재해예방 및 환경오염방지 등 농공단지 환경정비에 관한 사업
4. 그 밖에 농공단지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사업

**제5조(입주기업체 지원)** ① 군수는 농공단지의 활성화를 위해 그 입주기업체의 경영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그 입주기업체에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을 받고자 하는 농공단지 입주기업체는 사업계획서 및 지원비용 집행 계획서 등의 서류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③ 전항들에 따른 지원금의 지급 절차, 관리, 정산 등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을 따르거나 「대구광역시 달성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6조(입주기업협의회의 설립 및 운영)** ① 군수는 농공단지의 효율적 관리와 입주기업체의 상호협력 및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농공단지 내에 입주기업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협의회를 설립하려는 자는 설립인가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붙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창립총회 회의록
2. 정관 또는 회칙
3. 농공단지 관리계획서
4. 임원의 명단 및 이력서

③ 군수는 제2항에 따라 협의회 설립인가 신청을 받은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고 이상이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를 승인

한다.

1. 제2항제2호에 따른 정관 또는 회칙이 법령 및 조례에 위반되는지 여부

2. 농공단지 관리능력 및 관리에 소요되는 재정자립 유무

④ 협의회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세부사항은 협의회에서 자율적으로 정한다.

⑤ 협의회 설립 및 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을 따른다.

**제7조(입주기업협의회 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입주기업체 현황, 근로자 수 등 농공단지 내 현황 관리

2. 입주기업체의 인력, 자금, 기술 등에 대한 애로사항 발굴 및 의견 수렴

3. 입주기업체 및 유관기관 등과 연계한 협력사업 발굴

4. 농공단지 활성화를 위한 세미나·강연회·홍보활동 등 행사 개최

5. 제8조에 따른 위탁 관리업무의 효율적 추진

6. 그 밖에 농공단지 발전 및 입주기업체 지원에 필요한 사업 발굴

**제8조(관리업무의 위탁)** ① 군수는 농공단지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협의회에 농공단지의 관리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농공단지의 관리업무를 위탁할 때에는 협의회의 장과 위탁업무, 위탁기간, 위탁조건, 관리책임, 그 밖에 관리에 필요한 사항이 포함된 위탁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협의회의 수탁사무 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을 사용하게 하거나,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협의회에 지원할 수 있다.

④ 위탁관리와 관련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하는 사항은 「대구광역시 달성군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9조(지도·감독)** ①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협의회장에게 농공단지 관리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협의회장 농공단지 관리에 관한 장부, 서류 등을 조사 또는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보고를 받거나 조사 또는 검사 결과 시정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제10조(포상)** 군수는 농공단지 활성화에 상당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개인, 단체, 기업 및 공무원에 대하여 「대구광역시 달성군 포상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전 군수가 한 농공단지 활성화 지원, 그 입주기업체 지원은 이 조례 제4조 및 제5조에 따라 한 것으로 본다.

② 이 조례 시행 전 입주기업협회의 설립 및 그 인가는 이 조례 제6조에 따른 것으로 본다.

③ 이 조례 시행 전 군수가 농공단지의 관리업무를 입주기업협회에 위탁한 경우 그 위탁은 이 조례에 따른 것으로 본다.

##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 제2조(정의)

1. ~ 7의3. (생략)

8. “산업단지”란 제7호의2에 따른 시설과 이와 관련된 교육·연구·업무·지원·정보처리·유통 시설 및 이들 시설의 기능 향상을 위하여 주거·문화·환경·공원녹지·의료·관광·체육·복지 시설 등을 집단적으로 설치하기 위하여 포괄적 계획에 따라 지정·개발되는 일단(一團)의 토지로서 다음 각 목의 것을 말한다.

가. 국가산업단지: 국가기간산업, 첨단과학기술산업 등을 육성하거나 개발 촉진이 필요한 낙후지역이나 둘 이상의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 또는 도에 걸쳐 있는 지역을 산업단지로 개발하기 위하여 제6조에 따라 지정된 산업단지

나. 일반산업단지: 산업의 적정한 지방 분산을 촉진하고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하여 제7조에 따라 지정된 산업단지

다. 도시첨단산업단지: 지식산업·문화산업·정보통신산업, 그 밖의 첨단산업의 육성과 개발 촉진을 위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에 제7조의2에 따라 지정된 산업단지

라. 농공단지(農工團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어촌지역에 농어민의 소득 증대를 위한 산업을 유치·육성하기 위하여 제8조에 따라 지정된 산업단지

8의2 ~ 12. (생략)

##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 제2조(정의)

1. ~ 14의3. (생략)

15. “산업단지의 관리”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를 말한다.

가. 산업단지의 용지 및 시설의 매각·임대 및 사후관리

나. 산업단지에서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반시설의 설치·유지·보수 및 개량  
다. 입주기업체 및 지원기관의 사업활동 지원

16. ~ 23. (생략)

**제30조(관리권자 등) ①** 관리권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가산업단지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
2. 일반산업단지 및 도시첨단산업단지는 시·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지정한 산업단지인 경우에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을 말한다)

**3. 농공단지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

② 관리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관리권자
2. 관리권자로부터 관리업무를 위임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
3. 관리권자로부터 관리업무를 위탁받은 공단 또는 제31조제2항의 산업단지관리공단
- 4. 관리권자로부터 관리업무를 위탁받은 제31조제2항의 입주기업체협의회**
5. 관리권자로부터 관리업무(일반산업단지, 도시첨단산업단지 및 농공단지의 관리업무만 해당한다)를 위탁받은 기관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제31조(산업단지관리공단 등) ①** 관리권자는 산업단지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30조제2항에 따른 관리기관에 관리업무를 전부 또는 일부를 위임 또는 위탁할 수 있다.

② 산업단지관리공단(이하 “관리공단”이라 한다) 또는 산업단지관리업무를 위탁받기 위하여 입주기업체로 구성된 협의회(이하 “입주기업체협의회”라 한다)를 설립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설립요건을 갖추어 관리권자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제44조(입주기업체의 지원) ①** 관리기관은 입주기업체를 위하여 시장정보제공, 에너지이용효율 개선, 에너지공급, 노사관계 증진, 직업훈련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원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

②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및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법」에 따른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는 관리기관·입주기업체 또는 지원기관이 요청하면 경영 및 기술지도(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의 경우에는 농산물가공 및 음식료품 제조업체만 해당한다)를 할 수 있다.

# 대구광역시 달성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1. 의안번호: 제2524호

2. 제 출 일: 2024년 6월 13일

3. 제 출 자: 달성군수

## 4. 제안사유

- 경기침체와 고금리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에게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지원사업」 특례보증 대상을 확대함으로써 소상공인들의 경영난 해소에 도움을 주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

## 5. 주요내용

- 특례보증대상 제외규정 중 정책자금 중복지원 제한 규정 삭제(안 제8조제2항)

## 6. 관계법령

- 「소상공인기본법」 제3조

## 7. 검토의견

-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2023년부터 「대구광역시 달성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특례보증 지원)·제9조(이차보전)에 따라 시중은행의 고금리 기조로 경영자금 확보에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에게 경영안정자금을 지원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사업 대상자를 확대하기 위해 개정되는 것으로,
- 2023년에는 특례보증 I 유형과 II 유형을 합쳐 567건(129억 3천1백만원)을 지원하였고, 2024년에는 5월 31일 기준, 197건(47억 8천3백만원)을 지원하여 소상공인의 어려움 극복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 다만, 팬데믹 기간 동안 국가와 대구광역시 등을 통해 1회라도 지원 받은 경우 제8조제2항제1호에 따라 특례보증대상에서 제외됨에 따라 사업을 신청할 수 있는 대상의 범위에 제한이 발생하면서 불경기가 계속되는 지금, 소상공인들이 느끼는 정책 효용성에 대한 체감도가 다소 떨어진다는 문제가 지적되었습니다.
-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사업대상자를 확대할 수 있도록 특례보증대상 제한 규정 중 국가와 대구광역시, 그 밖의 기관 등에서 지원받은 경우를 삭제함으로써 사업대상자를 확대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으로, 조례의 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 붙임 1. 조례안 1부.  
2. 관계법령 1부. 끝.

## 대구광역시 달성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달성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 중 “(이하 ‘군 “이라 한다) 지역내에서” 를 “(이하 “군” 이라 한다) 지역 내에서” 로 한다.

제4조제1항 중 “소상공인지원계획을” 를 “소상공인 지원계획을” 로 한다.

제4조제2항 중 “경역혁신과” 를 “경영혁신과” 로 한다.

제7조제4항 중 “이행 하여야 한다.” 를 “이행하여야 한다” 로 한다.

제8조제2항제1호를 삭제한다.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특례보증 지원에 관한 적용특례) 제8조제2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전에 제7조에 따른 특례보증 지원을 신청한 자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2조(정의)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p> <p>1. (생략)</p> <p>2. “창업”이란 대구광역시 달성군(이하 ‘군’이라 한다) 지역내에 <u>서</u> 소상공인이 사업을 개시하는 것을 말한다.</p> <p>3. ~ 6. (생략)</p>	<p>제2조(정의)----- -----.</p> <p>1. (현행과 같음)</p> <p>2. ----- --(이하 “군”이라 한다) 지역 내 <u>에서</u> ----- -----.</p> <p>3. ~ 6. (현행과 같음)</p>
<p>제4조(소상공인 지원계획)</p> <p>① 대구광역시 달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소상공인의 효율적인 창업과 경영안정, 성장기반 조성 및 디지털 경영 전환을 통한 경쟁력 강화를 지원하기 위하여 <u>소상공인지원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u></p> <p>② 소상공인은 <u>경영혁신과</u> 지역사회 공헌으로 사회적 책임을 다하여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 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군의 소상공인 지원정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p>	<p>제4조(소상공인 지원계획)</p> <p>① ----- ----- ----- ----- ----- <u>소상공인 지원계획을</u> ----- --.</p> <p>② ----- <u>경영혁신과</u> ----- ----- ----- ----- -----.</p>

제7조(특례보증 지원)

① ~ ③ (생략)

④ 제3항에 따라 협약을 체결한 신용보증기관은 협약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⑤ (생략)

제8조(특례보증대상)

① (생략)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특례보증대상에서 제외한다.

1. 국가, 대구광역시 또는 그 밖의 기관으로부터 소상공인 정책자금을 지원받은 경우

2. ~ 3. (생략)

제7조(특례보증 지원)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이  
-----이  
행하여야 한다.

⑤ (현행과 같음)

제8조(특례보증대상)

① (현행과 같음)

② -----  
-----  
-----.

1. <삭제>

2. ~ 3. (현행과 같음)

□ 「소상공인기본법」[시행 2021. 3. 9.] (법률 제17623호, 2020. 12. 8., 일부개정)

- 제3조(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정부는 소상공인의 보호와 자주적 육성을 위한 종합적인 소상공인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②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소상공인시책에 따라 관할 지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그 지역의 소상공인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③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소상공인 보호·육성에 필요한 재원을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확보하여야 한다.
- ④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상호 간의 협력과 소상공인시책의 연계를 통하여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의 효과를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대구광역시 달성군 공공건축 품질자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1. 의안번호: 제2525호

2. 제출일: 2024년 6월 13일

3. 제출자: 달성군수

## 4. 제안사유

가. 공공건축 건립 및 조성에 있어 품격과 품질을 향상하고, 사업추진 시 다양한 직무분야의 전문가 자문 등을 위해 달성군 공공건축 품질자문위원회를 설치하고자 하며,

나. 이에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 5. 주요내용

가. 위원회의 목적 및 기능 (안 제1조 ~ 제3조)

나. 위원회 구성, 위원장 등의 직무 (안 제4조 ~ 제6조)

다. 자문대상, 자문시기 및 방법 (안 제7조 ~ 제9조)

라. 위원회 및 소위원회 구성·운영 (안 제10조 ~ 제12조)

마. 위원의 제척·해촉, 위원회 수당, 비밀준수 의무 (안 제13조 ~ 제17조)

## 6.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제130조제1항,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78조제1호  
「건축기본법」 제3조, 「건축서비스산업진흥법」 제2조

## 7. 검토의견

- 본 조례안은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제22조의2제1항에 따라 공공건축이 공공적 가치를 올바르게 구현하고, 적절한 수준의 품격을 갖추며, 합리적인 기준에 맞게 건축될 수 있도록 노력하기 위해 기획단계부터 다양한 직무 분야의 전문가에 자문하기 위하여 달성군 공공건축 품질자문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 공공건축 건립·조성 수요는 증가하고 있지만, 사업기획 단계부터 사업비를 과소 책정하는 경우, 사전 행정 절차를 이행하지 못하는 경우, 사업 기간의 부적정한 산정 등 발생하는 업무 실수와 순환보직으로 인한 신규 담당자의 업무 경험 부족 및 업무 숙지에 필요한 소요시간의 부족 등으로 공공건축의 높은 수준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문제가 지적되어 왔습니다.
- 경기 화성시에서는 2020년, 화성시장 방침으로 공공건축 품질자문단을 구성·운영하여 2021년 대한민국 공공건축상 국토부장관상을 수상하는 성과를 얻기도 했습니다. 이 성과를 기반으로 자문단을 제도화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 우리 군에서는 현재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제22조의3에 따라 사업의 건축기획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거나 자문 등에 응하기 위한 공공건축심의위원회를 설치·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해당 위원회는 사업기획 단계부터 자문하기는 어려울 뿐더러, 건축과 관련한 사항 외에 전기공사, 정보통신공사, 소방기술 등 실무과정에서 충실하게 고려되어야 하고 검토되어야 하는 부분에 대해 자문하기 어렵다는 한계가 있습니다.
- 경기 화성시의 사례와 같이 우리 군도 공공건축심의위원회가 갖는 한계도 보완하며, 사업기획 단계부터 실무과정에서 다양한 직무 분

야의 전문가에 자문할 수 있도록 공공건축 품질자문위원회를 구성·운영함으로써 앞으로 달성군에서 건립·조성될 공공건축 수준이 더 높아질 수 있을 것이라 기대되며, 조례의 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 붙임 1. 조례안 1부.  
2. 관계법령 1부. 끝.

# 대구광역시 달성군 공공건축 품질자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구광역시 달성군 공공건축 건립 및 조성에 있어 품격과 품질을 향상하기 위해 달성군 공공건축 품질자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건축” 및 “건축물”이란 각각 「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 및 제8호에 따른다.
2. “공공건축”이란 대구광역시 달성군(이하 “군”이라 한다)이 건축하거나 조성하는 건축물 또는 공간환경을 말한다.
3. “공간환경”이란 건축물을 이루는 공간구조·공공공간 및 경관을 말한다.
4. “공공공간”이란 가로(街路)·공원·광장 등의 공간과 그 안에 부속되어 공중이 이용하는 시설물을 말한다.
5. “품격”이란 주변환경과의 관계, 규모, 형태, 구조, 재료, 시공수준 등을 통하여 해당 공공건축의 목적과 그 소재 지역의 정체성을 창출할 수 있는 적절성을 말한다.
6. “품질”이란 안전, 보건, 기능, 쾌적, 자원절약과 재활용 등의 면에서 해당 공공건축이 가진 객관적 성능을 말한다.

7. “건축기획”이란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제2조제1항제1호의 2에 따라 건축물과 공간환경의 설계 전에 사업의 필요성 검토 및 입지 선정, 발주방식 및 디자인관리방안 검토, 공간구성 및 운영계획 등에 관한 사전전략 수립 등을 하는 것을 말한다.

8. “사업관계자”란 공공건축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기획, 조사, 설계, 시공, 감리 등에 참여하는 공무원 및 민간참여자 등을 말한다.

**제3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대구광역시 달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제2항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달성군 공공건축 품질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군수의 자문에 응한다.

1. 공공건축의 건축 또는 조성 사업의 기획, 이 사업에 필요한 사항의 조사, 공공건축의 설계, 시공, 유지관리 및 운영 등과 관련하여 공공건축의 품격과 품질 향상에 관한 사항

2. 그 밖에 공공건축의 건축 또는 조성 사업과 관련하여 공공건축의 품격과 품질 향상에 자문이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사항

**제4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5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군수가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으로 한다.

③ 위원은 건축, 토목, 조경, 기계, 전기, 정보통신, 소방, 도시계획, 디자인, 교통 등의 분야(이하 “직무분야”라 한다)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이에 따른 위원을 이하 “임명직 위원”이라 한다)하거나 위촉(이에 따른 위원을 이하 “위촉직 위원”이라 한다)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의 성별 구성

에 있어서는 「대구광역시 달성군 양성평등 기본 조례」 제8조를 준용한다.

1. 「건축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건축사
2.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건설기술인의 등급이 고급 이상인 사람
3. 「전기공사업법 시행령」 별표 4의2에 따른 전기공사기술자의 등급이 고급 이상인 사람
4.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별표 6에 따른 정보통신기술자의 등급이 고급 이상인 사람
5.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 별표 4의2에 따른 소방기술자의 기술등급이 고급 이상인 사람
6. 직무분야와 관련하여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기사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
7.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또는 연구기관에서 직무분야의 조교수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8. 직무분야의 박사학위를 취득한 사람
9. 직무분야의 석사학위를 취득한 후 이와 관련된 분야에서 5년 이상 종사한 사람
10. 공무원으로서 직무분야 관련 지도·감독 및 인·허가 업무 등에 종사하거나 한 사람
1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의 임직원으로서 직무분야와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거나 한 사람
  - 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나. 「지방공기업법」 제3조제1항에 따른 지방공기업

12. 그 밖에 직무분야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제5조(위원의 임기)** ① 임명직 위원<sup>의</sup>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sup>의</sup>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 연임할 수 있다.

② 보궐에 따른 위촉직 위원<sup>의</sup>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위촉기간으로 한다.

**제6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부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자문대상)** ① 위원회는 군에서 추진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해 자문을 한다.

1. 추정 총 공사금액 50억원 이상 공공건축의 건축 또는 조성 사업
2. 그 밖의 공공건축의 건축 또는 조성 사업 중 군수가 자문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군수는 제1항 각 호 사업에 관한 제3조제2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른 법령 및 조례에 따른 관련 위원회의 심의나 자문을 받은 경우 위원회에 해당 사항에 대한 자문을 하지 않을 수 있다.

**제8조(자문시기 및 방법)** ① 군수는 제7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자문대상이 다음 각 호의 단계에 있는 때 제3조제2항 각 호의 자문사항을 정리한 문서로써 위원회에 자문하며, 특히 자문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 다음 각 호의 단계가 아닌 때에도 자문할 수 있다.

1. 건축기획 단계

2. 설계 단계

② 제1항에 따른 자문요청을 받은 위원회는 제12조에 따른 해당 소위원회의 구성 여부, 그 소위원회 구성 위원의 내역, 예상 자문 답변 일시 등 자문 답변 계획을 정리한 문서로써 군수에게 통지 후 자문 답변 절차를 진행한다. 그 자문 답변 계획이 변경된 경우에도 같다.

③ 제2항의 자문 답변 계획의 통지, 그 밖에 자문 답변에 관한 위원회의 구체적 운영계획은 위원회 위원장이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제9조(자문답변의 통지)** 위원회는 제8조제2항의 자문 답변 계획에 따른 기한 내에 자문 답변을 정리한 문서로써 군수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0조(회의 등)** ① 위원회 위원장은 군수로부터 제8조제1항에 따른 자문 요청을 받고 위원회 회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그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②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 위원장은 자연적·사회적 재난이 있는 등 부득이한 사유로 회의 소집이 어려운 경우에는 서면으로 회의를 운영하게 할 수 있다.

**제11조(간사 및 서기)**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위원회를 주관하는 부서의 장이 되고, 서기는 그 업무를 담당하는 팀장이 된다.

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사무를 담당하고, 서기는 간사를 보좌한다.

**제12조(소위원회)** ① 위원회 위원장은 군수로부터 제8조제1항에 따른 자문 요청을 받은 때 그 자문대상 사업의 추진단계, 자문 내용에 따라 위원회 위원 중에서 필요한 직무분야의 위원으로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자문에 응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소위원회는 해당 자문에 대한 답변 절차가 종결된 경우 자동 해산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소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의 부위원장이 되며, 그 운영과 관련하여 제8조부터 제10조까지를 준용한다.

③ 군수가 제1항에 따른 소위원회로부터 자문 답변을 받은 경우에는 위원회로부터 자문 답변을 받은 것으로 본다.

**제13조(제척·기피·회피)**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 및 소위원회의 회의·의결과 자문 답변 절차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해당 사업의 설계자, 시공자, 감리자(이하 “참여자 등”이라 하며, 이 호 및 제2호에서는 참여자 등이 법인·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직원을 포함한다)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사업의 참여자 등의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사업에 대하여 자문, 연구, 용역(하도급을 포함한다),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

4. 위원이 임직원으로 종사하고 있거나 최근 3년 내에 종사했던 법인·단체 등이 해당 사업에 대하여 자문, 연구, 용역(하도급을 포함한다),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

5.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단체 등이 해당 사업의 참여자 등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위원에게 공정한 자문 답변을 기대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사업관계자는 위원회에 그 위원의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자문 답변 절차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14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심신쇠약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위원이 장기 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6개월 이상 장기 해외여행 등으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위원이 위원회의 직무와 관련된 비위 사실이 있거나 위원회 위원직을 유지하기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5. 위원이 제13조에 따른 제척 사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6.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의사를 표명한 경우

7. 위원이 제17조에 따른 업무상 비밀 준수 의무를 위반하였거나 그 내용을 개인적으로 이용하거나 그로써 이득을 취한 경우

② 군수는 위원을 해촉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에게 그 사유를 고지하여야 한다.

제15조(의견청취 등) 위원회와 제12조제1항에 따른 소위원회는 그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공무원 및 전문가·사업관계자 등을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 또는 단체 등에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제16조(수당 등) 군수는 위원회 또는 제12조제1항에 따른 소위원회의 회의나 해당 자문 답변 절차에 참여한 위원 중 군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대구광역시 달성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여비 및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7조(업무상 비밀준수 의무) 위원은 위원회와 제12조제1항에 따른 소위원회의 활동을 통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 「지방자치법」

제130조(자문기관의 설치 등) ① 지방자치단체는 소관 사무의 범위에서 법령이나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문기관(소관 사무에 대한 자문에 응하거나 협의, 심의 등을 목적으로 하는 심의회, 위원회 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 □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78조(자문기관의 설치요건)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법 제130조제1항에 따른 자문기관을 설치할 수 있다.

1. 업무 특성상 전문적인 지식이나 경험이 있는 사람의 의견을 들어 결정할 필요가 있을 것
2. 업무의 성질상 다양한 이해관계의 조정 등 특히 신중한 절차를 거쳐 처리할 필요가 있을 것

## □ 「건축기본법」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건축물”이란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부수되는 시설물을 말한다.
2. “공간환경(空間環境)”이란 건축물이 이루는 공간구조·공공공간 및 경관을 말한다.
3. “공공공간(公共空間)”이란 가로·공원·광장 등의 공간과 그 안에 부속되어 공중(公衆)이 이용하는 시설물을 말한다.
4. “건축디자인”이란 품격과 품질이 우수한 건축물과 공간환경의 조성으로 건축의 공공성을 실현하기 위하여 건축물과 공간환경을 기획·설계하고 개선하는 행위를 말한다.
5. “품격”이란 주변환경과의 관계, 규모, 형태, 구조, 재료, 시공수준 등을 통하여 그 목적과 지역의 정체성을 창출할 수 있는 적절성을 말한다.

6. “품질”이란 안전, 보건, 기능, 쾌적, 자원절약과 재활용 등의 객관적 성능을 말한다.
7. “건축”이란 건축물과 공간환경을 기획, 설계, 시공 및 유지관리하는 것을 말한다.

## □ 「건축서비스산업진흥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8. 12. 18.>

1. “건축서비스”란 건축물과 공간환경(이하 “건축물등”이라 한다)을 조성하는데에 요구되는 연구, 조사, 자문, 지도, 기획, 계획, 분석, 개발, 설계, 감리, 안전성 검토, 건설관리, 유지관리, 감정 등의 행위를 말한다.
- 1의2. “건축기획”이란 건축사업의 효율성을 높이고 건축물등의 공공적 가치와 디자인 품격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건축물등의 설계 전에 사업의 필요성 검토 및 입지 선정, 발주방식 및 디자인관리방안 검토, 공간구성 및 운영계획 등에 관한 사전전략 수립 등을 하는 것을 말한다.
2. “건축서비스산업”이란 건축서비스 활동을 통하여 경제적 또는 사회적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산업을 말한다.
3. “건축서비스사업”이란 건축서비스 활동을 수행하는 사업을 말한다.
4. “건축서비스사업자”란 건축서비스사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
5.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 가. 국가기관
  - 나. 지방자치단체
  - 다.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른 공공기관
  - 라.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
6. “공공건축”이란 공공기관이 건축하거나 조성하는 건축물 또는 공간환경을 말한다.
- ② 제1항에 규정된 것 외의 용어에 관하여는 이 법에서 특별히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건축기본법」 제3조에 따른 용어의 예에 따른다.

# 아기사랑 유모차 대여사업 위탁운영 재계약 동의안 검토보고서

1. 의안번호: 제2527호

2. 제 출 일: 2024년 6월 13일

3. 제 출 자: 달성군수

## 4. 제안사유

- 아기사랑 유모차대여사업의 위탁기간 만료 도래 및 수탁기관 재계약 의사 표시에 따라 현 수탁기관과의 민간위탁심의위원회 재계약 적정성 여부를 판단한 결과, 적격으로 의결되었고 이에 의회 동의를 얻고자 함.

## 5. 주요내용

가. 위탁대상: 아기사랑 유모차 대여사업

나. 수탁기관: 재단법인 달성복지재단

다. 위탁대상 사무의 범위 및 내용

- 유모차 대여 및 반납 등에 관한 업무
- 유모차 물품관리에 관한 업무
- 유모차 대여사업 수입금 관리
- 유모차 대여사업 홈페이지 관리

## 라. 조직 및 구성

구 분	계	대표이사	이사	감사	직원
인 원	20	1	9	2	8

마. 위탁기간: 3년(2025. 1. 1.~2027. 12. 31.)

바. 수탁기관 선정방식

- 달성군민간위탁심의위원회 성과 평과 실시 후 70점 이상 시 재계약

사. 민간위탁 추진일정(그간 추진일정)

- 2024. 4.: 민간위탁 재계약 신청 ※ 신청기관: (재)달성복지재단
- 2024. 5.: 민간위탁심의위원회 심의

아. 민간위탁의 적정성 검토 결과

- 별도 첨부

자. 성과평가 결과

- 평균 92.4점으로 재계약 적격 의결(기준 70점)

※ 달성군민간위탁심의위원회 심의자료 붙임첨부

차. 향후일정

- 2024. 6.: 군의회 동의
- 2024. 7.: 위·수탁 협약 체결 및 공보 게재

## 6. 관계법령

- 「대구광역시 달성군 임신·출산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  
「대구광역시 달성군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

## 7. 검토의견

- 본 달성군 아기사랑 유모차 대여사업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은 아기사랑 유모차 대여사업의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운영을 위해 현 수탁기관인 (재)달성복지재단과 재계약하고자 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것으로
- 현 수탁기관인 (재)달성복지재단이 위탁운영 계약 기간(2022. 1. 1. ~ 2024. 12. 31.) 만료에 앞서, 재계약(2025. 1. 1. ~ 2027. 12. 31.) 의사 표시를 해 음에 따라 달성군 민간위탁심의위원회에서 수탁기관의 전문성 등 재계약 적정성 여부를 심사한 결과 92.4점(평균 70점 이상이면 재계약가능)으로 적극적으로 의결되었습니다.
- (재)달성복지재단은 2018. 4. 24. 최초계약하여 아동복지 및 보육, 출산장려 관련 사업을 6년여간 체계적으로 운영하는 등 관련 노하우와 전문인력을 보유하고 있으므로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현 수탁기관인 (재)달성복지재단과 재계약하는 것은 적정하다고 사료됩니다.

- 붙임 1. 관계법령 1부.  
2. 민간위탁 적정성 사전 검토서 1부.  
3. 재계약 사유서 1부. 끝.

## □ 「대구광역시 달성군 임신·출산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임신·출산 및 양육 지원) ① 군수는 달성군민 등의 임신·출산 및 양육 지원 정책을 적극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예산의 수립에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다음 각 호 사업의 추진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임신·출산 및 양육에 관한 정보의 제공, 교육 및 홍보사업
2. 임신지원용품의 지원 사업
3. 출산축하용품의 지원 사업
4. 육아용품의 구입·대여·지원 사업

제7조(육아용품의 이용료 등) ① 군수는 육아용품을 대여할 수 있다. 이 경우 대여대상, 이용료, 대여기간은 별표를 따른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육아용품을 대여 받은 사람이 이를 분실하거나 파손·훼손한 경우 그에게 배상 청구할 수 있으며, 그 기준은 별표를 따른다.

③ 군수는 제1항의 육아용품 대여사무의 효율을 위하여 그 사무를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④ 군수는 제3항에 따라 육아용품 대여사무를 위탁받은 자에게 그 사무 처리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⑤ 제3항 및 제4항 외 육아용품 대여사무 위탁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구광역시 달성군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의 규정을 준용한다.

## □ 「대구광역시 달성군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등) 법령이나 조례에 정한 바에 따라 군수의 소관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군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민간위탁의 필요성 및 타당성을 정기적·종합적으로 판단하여 민간위탁 할 수 있다.

1.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2.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3.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을 요하는 사무
4. 그 밖에 시설관리 등 단순행정 관리사무

**제4조의2(민간위탁의 적정성 검토)** 군수는 제4조에 따라 민간위탁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민간위탁의 적정성을 사전에 검토하여야 한다.

1. 다른 사무방식으로의 수행 가능성
2. 서비스 공급의 공공성 및 안정성
3. 경제적 효율성
4. 민간의 전문지식 및 기술 활용 가능성
5. 성과 측정의 용이성
6. 관리 및 운영의 투명성
7. 그 밖에 민간의 서비스공급 시장여건 등 민간위탁 적정성 검토를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의3(의회동의)** ① 군수는 제4조의 각 호의 사무를 민간위탁(재위탁 및 재계약 포함한다)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민간위탁 계획을 수립한 후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동의안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군수는 그 동의안에 의회 의결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를 붙일 수 있다.

1. 위탁사무의 명칭 및 관련법규
2. 민간위탁 추진 근거 및 필요성
3. 위탁사무의 범위 및 내용
4. 수탁기관 선정방식
5. 민간위탁 추진일정
6. 소요예산 및 산출 근거
7. 제4조의2에 따른 민간위탁의 적정성 검토 결과
8. 제15조에 따른 민간위탁 성과평가 결과
9. 그 밖에 민간위탁 동의 등 여부에 필요한 사항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의회의 동의를 받은 것으로 본다.

1. 수탁기간 1년 이하의 일회성 사무로서 예산의 의결을 받은 경우
2. 청소, 방호 등 연간 반복적 사무로서 예산의 의결을 받은 경우

**제5조(수탁기관의 선정)** ① 군수는 수탁기관을 선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선정하여야 한다.

1. 수탁대상기관의 인력·기구 및 재정부담능력
2. 수탁대상기관의 시설·장비 및 기술보유의 정도
3. 수탁대상기관의 책임능력과 공신력
4. 지역간 균형분포 등

② 제1항에 따른 수탁기관의 선정은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민간위탁의 목적, 성질, 규모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수탁기관의 자격을 제한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공개모집에 응하고자 하는 자는 신청서와 함께 사업계획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라 수탁기관을 선정하는 경우에는 군수는 제6조에 따른 민간위탁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정한다.

**제6조(민간위탁심의위원회)**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구광역시 달성군 민간위탁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수탁기관의 선정
2. 사무의 재위탁 또는 재계약의 적정성
3. 그 밖에 민간위탁사무의 운영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6명이상 9명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소관 국장 또는 소장이 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단, 제5조 또는 관계법령에 따라 수탁기관으로 선정될 수 있거나 선정된 기관의 대표 및 관계 임직원인 경우는 제외한다.

1. 5급 상당 이상의 관계 공무원

2. 다음 각 목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명

가. 의회 의원(단, 민간위탁사무와 관련된 소관 상임위원회에 소속된 의원은 배제한다)

나. 의회에서 민간위탁사무와 관련하여 전문성이 있다고 판단하여 추천하는 사람

3. 변호사·공인회계사·노무사·기술사·건축사 또는 세무사 자격이 있는 사람

4.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에서 추천한 사람

5.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대학의 민간위탁사무 분야와 관련된 학과에서 조교수 이상으로 재직 중인 사람

6. 그 외 민간위탁사무 관련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위원회는 안전심의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 민간위탁사무별로 소관 부서장이 구성하여 운영하고 심의가 끝나면 해산된 것으로 본다.

⑤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위원회는 사업계획서의 심사 및 현장 확인과 신청인에 대하여 필요한 소명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⑦ 위원 구성 및 수당·여비 등의 지급,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구광역시 달성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를 준용한다.

붙임

민간위탁 적정성 사전 검토서

## 민간위탁 적정성 사전 검토서

### 1 기본 검토사항

대상사무	아기사랑 유모차 대여사업
민간위탁 추진목적	○ 아기사랑 유모차 대여사업의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운영
위탁근거	○ 법적 근거 - 「대구광역시 달성군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 제5조, 제6조 - 「대구광역시 달성군 임신·출산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 제7조
위탁내용	○ 추진경위 - 아기사랑 유모차대여사업의 위탁기간 만료 도래 및 수탁기관 재계약 의사표시에 따라 현 수탁기관과의 재계약 적정성 여부를 판단하고자 함  ○ 추진현황 - 최초 위탁 : 2018. 4. 24. ~ 2021. 12. 31. ※ 최초 위탁 후 달성군 민간위탁 심의위원회를 통해 재계약(2022. 1. 1. ~ 2024. 12. 31.) - 수탁기관: (재)달성복지재단  ○ 위탁기간: 3년(2025. 1. 1. ~ 2027. 12. 31.)  ○ 위탁내용: 「아기사랑 유모차대여사업」 운영 전반 - 유모차 대여 및 반납 등에 관한 업무 - 유모차 물품관리에 관한 업무 (보관·보존, 세탁·소독, 수리·배상 등) - 유모차 대여사업 수입금 관리 - 유모차 대여사업 홈페이지 관리

<p>적 정 성 검 토</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다른 사무방식으로의 수행 가능성 : 불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유모차 대여 전산 시스템 부재에 따른 물품관리의 어려움 및 서비스 질 저하 우려로 위탁 사무방식이 사업 추진에 효율적인 것으로 판단</li> </ul> </li> <li>○ 서비스 공급의 공공성 및 안정성 : 확보 가능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아동복지 및 보육, 출산장려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한 이력이 있어 서비스 공급의 공공성 및 안정성이 높은 편임</li> </ul> </li> <li>○ 경제적 효율성 : 확보 가능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적절한 운영 예산 편성으로 경제적 효율성 확보</li> </ul> </li> <li>○ 민간의 전문지식 및 기술 활용 가능성 : 확보 가능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아동복지 및 보육, 출산장려 관련 사업을 다년간 운영하면서 쌓은 노하우와 전문 인력을 보유하고 있는 기관을 재계약 대상으로 심의 후 선정하였기에 해당 기관의 자원을 그대로 활용할 수 있음</li> </ul> </li> <li>○ 성과 측정의 용이성 : 확보 가능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분기별로 아기사랑 유모차대여사업 관련 실적을 보고 받고 있음</li> </ul> </li> <li>○ 관리 및 운영의 투명성 : 확보 가능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연간 1회 이상 민간위탁사무 자체 감사를 통해 관리 및 운영의 투명성 점검</li> </ul> </li> </ul>
<p>기 존 수탁 기 관 및 선 정 방 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수탁기관명 : (재)달성복지재단</li> <li>○ 수탁기간 : 2022. 1. 1. ~ 2024. 12. 31.</li> <li>○ 위탁금 : 10백만원(2022년) / 10백만원(2023년) / 8백만원(2024년)</li> <li>○ 위탁기관 선정방법 : 민간위탁심의위원회를 통한 성과평가 및 재계약 심의</li> </ul>
<p>수 탁 기 관 선 정 방 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수탁기관명 : (재)달성복지재단</li> <li>○ 수탁기간 : 2025. 1. 1. ~ 2027. 12. 31.</li> <li>○ 위탁기관 선정방법 : 민간위탁심의위원회를 통한 성과평가 및 재계약 심의</li> </ul>

<p>민 간 위 탁 금 *예산지원형 위탁시 기재</p>	<p>○ 이미 위탁하고 있는 경우 : 최근 2년간 위탁금 및 금년(금회)</p> <table border="1" data-bbox="384 360 1385 589"> <thead> <tr> <th>연도별</th> <th>민간위탁금(천원)</th> <th>세부 산출내역</th> </tr> </thead> <tbody> <tr> <td>2022년</td> <td>10,000</td> <td>운영비 10,000</td> </tr> <tr> <td>2023년</td> <td>10,000</td> <td>운영비 10,000</td> </tr> <tr> <td>2024년</td> <td>8,000</td> <td>운영비 8,000</td> </tr> </tbody> </table>	연도별	민간위탁금(천원)	세부 산출내역	2022년	10,000	운영비 10,000	2023년	10,000	운영비 10,000	2024년	8,000	운영비 8,000
연도별	민간위탁금(천원)	세부 산출내역											
2022년	10,000	운영비 10,000											
2023년	10,000	운영비 10,000											
2024년	8,000	운영비 8,000											
<p>사 용 료 *수익창출형 위탁시 기재</p>	<p>○ 해당없음</p>												
<p>기대효과 및 향 후 계 획</p>	<p>○ 영유아 양육의 필수품인 유모차를 대여함으로써 가정의 자녀 양육에 대한 부담을 최소화 하여 출산장려 분위기 조성</p> <p>○ 주민의 요구를 반영한 출산·양육 지원관련 사업 추진을 통해 복지 체감률 향상에 기여</p>												
<p>전 문 가 의 견</p>	<p>○ 민간위탁심의위원회 심의 결과 민간위탁 재계약 기관으로 선정함이 적격함을 의결함</p>												

붙임

재계약 사유서

### 수익협약(또는 재계약) 사유서

<p>현황 및 건</p>	<p>○ 해당 사업의 수탁 가능 업체 수: 총 1개(재단법인 달성복지재단)</p>																					
<p>재계약 사유</p>	<p>○ 법적근거 : 「대구광역시 달성군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 제9조</p> <p>○ 재계약 사유</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수탁기관의 재계약 의사 표명</li> <li>- 민간위탁심의위원회 재계약 적정여부 검토 결과 적정</li> </ul>																					
<p>대상기관 검토내용</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r> <td style="width: 50%; padding: 5px;">위탁사무명</td> <td style="width: 50%; padding: 5px;">아기사랑 유모차 대여사업</td> </tr> <tr> <td style="padding: 5px;">예산 및 기간</td> <td style="padding: 5px;">연간 8백만 원 / 2025. 1. 1. ~ 2027. 12. 31.</td> </tr> <tr> <td style="padding: 5px;">대상기관명(대표자)</td> <td style="padding: 5px;">재단법인 달성복지재단(강성환)</td> </tr> <tr> <td style="padding: 5px;">주요사업</td> <td style="padding: 5px;">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따뜻한 나눔 사업</li> <li>- 작은 정성 큰 기쁨 사업</li> <li>- 복지시설 수탁운영 및 지원 사업</li> </ul> </td> </tr> <tr> <td style="padding: 5px;">설립일자 및 주요연혁</td> <td style="padding: 5px;">2018. 4. 24. 최초 위탁</td> </tr> <tr> <td style="padding: 5px;">인력현황</td> <td style="padding: 5px;">20명(임원 12명, 직원 8명)</td> </tr> <tr> <td style="padding: 5px;">재무현황 및 재정부담능력</td> <td style="padding: 5px;">동산(현금) 2,100백만 원(부동산 및 부채 0원)</td> </tr> <tr> <td style="padding: 5px;">기술수준(장비 및 시설 등)</td> <td style="padding: 5px;">장난감도서관 7개소 운영</td> </tr> <tr> <td style="padding: 5px;">전문성 확보 및 사무처리 실적</td> <td style="padding: 5px;">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유모차 대여량: 1,292대 / 월평균 약 50대 (2022.1.1.~2024.3.31.)</li> <li>- 장난감 도서관 회원수: 2,060명 (2024.3.31.)</li> </ul> </td> </tr> <tr> <td style="padding: 5px;">성과평가결과 및 감사결과 (재계약시 작성)</td> <td style="padding: 5px;">성과평가 결과 70점 이상으로 재계약 적정 의결</td> </tr> </table>		위탁사무명	아기사랑 유모차 대여사업	예산 및 기간	연간 8백만 원 / 2025. 1. 1. ~ 2027. 12. 31.	대상기관명(대표자)	재단법인 달성복지재단(강성환)	주요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따뜻한 나눔 사업</li> <li>- 작은 정성 큰 기쁨 사업</li> <li>- 복지시설 수탁운영 및 지원 사업</li> </ul>	설립일자 및 주요연혁	2018. 4. 24. 최초 위탁	인력현황	20명(임원 12명, 직원 8명)	재무현황 및 재정부담능력	동산(현금) 2,100백만 원(부동산 및 부채 0원)	기술수준(장비 및 시설 등)	장난감도서관 7개소 운영	전문성 확보 및 사무처리 실적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유모차 대여량: 1,292대 / 월평균 약 50대 (2022.1.1.~2024.3.31.)</li> <li>- 장난감 도서관 회원수: 2,060명 (2024.3.31.)</li> </ul>	성과평가결과 및 감사결과 (재계약시 작성)	성과평가 결과 70점 이상으로 재계약 적정 의결
위탁사무명	아기사랑 유모차 대여사업																					
예산 및 기간	연간 8백만 원 / 2025. 1. 1. ~ 2027. 12. 31.																					
대상기관명(대표자)	재단법인 달성복지재단(강성환)																					
주요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따뜻한 나눔 사업</li> <li>- 작은 정성 큰 기쁨 사업</li> <li>- 복지시설 수탁운영 및 지원 사업</li> </ul>																					
설립일자 및 주요연혁	2018. 4. 24. 최초 위탁																					
인력현황	20명(임원 12명, 직원 8명)																					
재무현황 및 재정부담능력	동산(현금) 2,100백만 원(부동산 및 부채 0원)																					
기술수준(장비 및 시설 등)	장난감도서관 7개소 운영																					
전문성 확보 및 사무처리 실적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유모차 대여량: 1,292대 / 월평균 약 50대 (2022.1.1.~2024.3.31.)</li> <li>- 장난감 도서관 회원수: 2,060명 (2024.3.31.)</li> </ul>																					
성과평가결과 및 감사결과 (재계약시 작성)	성과평가 결과 70점 이상으로 재계약 적정 의결																					

※ 재계약 대상기관 검토사항

1. 수탁기관명 및 대표자 : 재단법인 달성복지재단 (대표자 강성환)
2. 소재지 및 전화번호 : 대구광역시 달성군 화원읍 성천로 5, 별관 6층
3. 설립목적 : 민관협력으로 복지서비스체계 확립, 올바른 기부 문화 확산·정착으로 민간복지자원의 효율적 활용
4. 설립일자 및 연혁

년 월 일	내 용
2008. 10.	재단법인 달성복지재단 설립, 달성군청소년센터 위탁운영
2009. ~	국공립어린이집 위탁운영
2012. 07.	달성군청소년문화의집 위탁운영
2016. 03.	달성군청소년상담복지센터 위탁운영
2017. 02.	달성군장난감도서관(화원), 다사 장난감도서관 위탁운영
2018. 03.	옥포·구지·서재 장난감도서관 위탁운영
2018. 04.	아기사랑 유모차 대여사업 위탁운영
2020. 02.	논공 장난감도서관 위탁운영

5. 주요사업

- 따뜻한 나눔 사업: 생계·의료비 지원사업, 지정 및 결연 후원사업, 생활지원사업, 자립자활지원사업 등 욕구 유형별 맞춤형 서비스 제공
- 작은 정성 큰 기쁨 사업: 기부문화 활성화 사업, 기업사회공헌 활성화 사업 등 기부문화의 정착과 유기적인 지역사회 공동체를 구축
- 복지시설 수탁운영 및 지원 사업: 국공립어린이집, 장난감도서관, 청소년 시설, 장애인복지시설, 노인복지시설, 자원봉사관련 시설 등 운영

6. 대표자 및 임원 현황 : 12명(대표이사 1명, 이사 9명, 감사 2명)

직 위	성 명	주요 경력
이 사 장	강성환	달성복지재단 이사장
상임이사	김외식	달성복지재단 상임이사
이 사	구명숙	前 달성군노인복지센터 대표
이 사	윤영현	現 대한노인회 달성군지회장
이 사	이장희	現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달성군 협의회장
이 사	이학도	現 달성군 통합방위협의회 의원 現 달성군 저소득층 에너지효율사업 본부장
이 사	임규태	前 옥포면장
이 사	전옥수	現 우리허브병원 대표이사
이 사	정우선	前 달성군장애인복지관 관장
이 사	차한용	前 달성군 공무원(현풍면장, 환경과장)
감 사	서연희	現 세무사
감 사	장명진	前 동구건강가정다문화지원센터 센터장

7. 직원현황: 총 8명

직 위	성 명	자격증 소지현황	담당업무	근무기간	비고
부장	신재혁	사회복지 실무경력 15년 사회복지사 2급	후원사업 및 행정회계	15년 4개월	정규직
선임사회복지사	오윤정	사회복지 실무경력 14년 사회복지사 1급	후원사업 (모금 및 배분담당)	5년 10개월	정규직
선임사회복지사	정정호	사회복지 실무경력 13년 사회복지사 1급	복지시설 관리업무	5년 10개월	정규직
선임사회복지사	이상철	아동보육 실무경력 8년 보육교사 1급	보육시설 관련업무	10년 1개월	정규직
사회복지사	석주훈	아동보육 실무경력 4년 사회복지사 2급	장난감도서관 파견	2년 1개월	정규직
선임사무원	곽진이	실무경력 4년 전산회계 1급	행정 및 회계 담당	5년 10개월	정규직
공동모금회 사업인력	강은빈	실무경력 2년 전산회계 2급	후원사업 (모금 및 배분담당)	1년 10개월	기간제 근로자
서무	윤순찬	사회복지사 2급	사무보조 업무 (보육)	1개월	기간제 근로자

## 8. 조직도



## 9. 재무현황

가. 재 산 : 총 2,100,000천원(현재가치로 환산)

구 분	유 형	내 용	평가액(천원)
유동자산	동산	현금	2,100,000

나. 부 채: 해당없음

내 용	금 액(천원)
해당없음	

다. 수 입: 총 1,761,718천원

내 용	연 수입액(천원)
보조금	762,521
사업수익	783,437
기타수익	215,760

10. 재협약 현황 및 향후 계획(신규 수의협약 시 기재 생략)

<p>재협약 현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재협약 회수: 2회, 총 수탁기간: 6년</li> <li>- 최초위탁: 2018. 4. 24. ~ 2021. 12. 31.</li> <li>- 재계약: 2022. 1. 1. ~ 2024. 12. 31.</li> <li>- 의회 동의안을 거쳐 향후 재계약 예정: 2025. 1. 1. ~ 2027. 12. 31.</li> </ul>
<p>사업추진 실적</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업 우수성과</li> <li>- 유모차 대여사업 운영실적(2022~2024년 3월)</li> <li>① 유모차 보유수: 530대 (절충형 103대, 휴대형 399대, 쌍둥이 28대)</li> <li>② 유모차 대여: 1,292건(신규 563대, 연장 729대)</li> <li>③ 유모차 세탁: 492대</li> </ul>
<p>성과평가 결과</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평가일시: 2024. 5. 1. ~ 5. 14.</li> <li>○ 평가기관: 달성군 민간위탁심의위원회</li> <li>○ 평가내용: 아기사랑 유모차 대여사업 민간위탁 성과평가</li> <li>○ 평가점수: 92.4점(기준 70점)</li> <li>○ 총 평: 민간위탁 재계약 적격 의결</li> <li>※ 성과평가결과서 첨부</li> </ul>
<p>감사실시 결과</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일 시: 2023. 12. 7.</li> <li>○ 감사결과</li> <li>- 교부목적 및 사업내용에 적합한 예산집행 및 회계 절차 준수 적정</li> <li>- 향후 관계 법령과 지침을 준수하여 운영하도록 지도</li> </ul>
<p>향후추진 계획</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영유아 양육의 필수품인 유모차를 대여함으로써 가정의 자녀 양육에 대한 부담을 최소화 하여 출산장려 분위기 조성</li> <li>○ 주민의 요구를 반영한 출산·양육 지원관련 사업 추진을 통해 복지 체감률 향상에 기여</li> </ul>

# 대구광역시 달성군 국가유공자 등 우선주차구역의 설치 및 운영 조례안 검토보고서

1. 의안번호: 제2502호

2. 제출일: 2024년 6월 4일

3. 제출자: 김은영 의원 등 3인

## 4. 제안사유

- 국가유공자가 대구광역시 달성군 본청 및 관내 공공시설의 주차 구역을 우선 이용할 수 있도록 주차 구역의 설치 기준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가유공자를 예우하는 지역 보훈문화 확산에 이바지 하고자 함.

## 5. 주요내용

- 용어의 정의 및 군수의 책무 (안 제2~3조)
- 우선주차구역의 설치 장소 및 기준 등 (안 제5~6조)
- 우선주차구역의 이용 (안 제7조)
- 상이등급 판정자에 관한 특례 (안 제9조)

## 6. 관계법령

- 「국가보훈 기본법」, 「주차장법」

## 7. 검토의견

- 본 조례안은 「국가보훈 기본법」에 따라 나라를 위해 헌신하고 공헌한 국가유공자를 합당하게 예우하며, 대구광역시 달성군민의 일상생활 속에서 국가유공자를 존중하는 보훈 예우문화 확산 및 애국심 고취를 위해
- 대구광역시 달성군 본청, 직속기관 및 공공시설 등을 방문하는 국가유공자에게 주차장을 우선 이용할 수 있는 국가유공자 우선주차구역 설치와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조례의 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 붙임 1. 조례안 1부.  
2. 관계법령 1부. 끝.

## 대구광역시 달성군 국가유공자 등 우선주차구역의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구광역시 달성군의 청사 또는 공공시설을 방문하는 국가유공자 등에게 이용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우선 이용할 수 있는 주차구역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가유공자 등을 예우하고 대구광역시 달성군민의 애국심을 고취하는 데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국가유공자 등 우선주차구역(이하 ‘우선주차구역’ 이라 한다)” 이란 제4조에 따른 국가유공자 등이 편리하게 주차할 수 있도록 이 조례에서 정한 표지판을 설치한 장소를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 대구광역시 달성군수(이하 “군수” 라 한다)는 우선주차구역의 설치 및 운영을 촉진하기 위해 적절한 시책을 추진해야 한다.

**제4조(적용 범위)** 이 조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국가유공자 등이 차량에 탑승하여 제5조에서 정한 우선주차구역을 이용할 때 적용한다.

1.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애국지사 본인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

자 본인

3.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훈보상대상자 본인
4.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참전유공자 본인
5.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엽제후유증환자 및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본인
6.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5·18민주유공자 본인
7.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특수임무유공자 본인

**제5조(우선주차구역 설치 장소)**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시설에 우선주차구역을 설치할 수 있다.

1. 대구광역시 달성군 본청, 직속기관, 읍·면 및 읍·면 출장소의 청사
2. 대구광역시 달성군이 설치·관리하는 공공시설

**제6조(우선주차구역의 설치 기준 등)** ① 제5조에 따른 시설에 우선주차구역을 설치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1. 「주차장법」에 따른 주차단위구획의 총 수가 100개 이상인 경우 최소 1개 이상을 설치한다. 다만, 주차장 설치 규모에 따라 달리 정할 수 있다.
  2. 주차장 출입구 또는 승강기에서 근접한 곳으로, 접근성 및 이동성이 확보된 장소에 설치한다.
- ② 우선주차구역 바닥면에는 별표에 따른 주차구획 표시를 하고, 누

구나 쉽게 알아볼 수 있는 곳에 안내표지판을 설치한다.

**제7조(우선주차구역의 이용)** ① 제4조에 따른 국가유공자 등은 우선주차구역을 이용할 경우 국가보훈부장관이 발행하는 신분증서 또는 확인서를 소지해야 한다.

② 군수는 필요한 경우 우선주차구역 이용자에게 국가보훈부장관이 발행하는 신분증서 등의 제시를 요구할 수 있다.

**제8조(우선주차구역의 위반차량 조치)** 군수는 우선주차구역에 국가유공자 등이 탑승하지 않은 자동차가 주차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다른 장소로 이동하여 주차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제9조(상이등급 판정자에 관한 특례)** 제4조에도 불구하고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1041호(2012.07.01. 시행)로 개정되기 전에 제73조의2에 따라 등록된 상이등급 판정자에 대해서는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을 제공할 수 있다.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국가유공자 등 우선주차구역 주차구역 표시 및 안내표지판(제6조관련)

1. 도안

가. 바닥면



나. 안내표지판 도안



## 참고

## 상위 및 관계법령(발췌)

□ 「국가보훈 기본법」(2023.3.4, 타법개정, 2023.6.5. 시행)

제5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희생·공헌자의 공훈과 나라사랑정신을 선양하고, 국가보훈대상자를 예우하는 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2조에 따른 기본이념을 구현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 또는 주민의 복지와 관련된 정책을 수립·시행하거나 법령 등을 제정 또는 개정할 때에는 국가보훈대상자를 우선하여 배려하는 등 적극적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가보훈사업에 필요한 재원(財源) 조성에 노력하여야 한다.

□ 「주차장법」(2023. 8. 16., 일부개정, 2024.2.17. 시행)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7. “주차단위구획”이란 자동차 1대를 주차할 수 있는 구획을 말한다.

# 대구광역시 달성군 리개발위원회 조례 폐지조례안 검토보고서

1. 의안번호: 제2505호

2. 제 출 일: 2024년 6월 4일

3. 제 출 자: 최재규 의원 등 3인

4. 제안사유

- 현행 대구광역시 달성군 리개발위원회 조례의 ‘리개발위원회’ 내용이 현실과 부합하지 않아 조례의 실효성이 결여되어 있으므로, 본 조례를 폐지하고자 함.

5. 주요내용

- 「대구광역시 달성군 리개발위원회 조례」 폐지

6. 검토의견

- 본 폐지조례안은 1972년 제정 당시 읍·면의 공동이익 사업 및 개발, 이해조정에 관한 사항을 리개발위원회를 통해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해당 조례를 제정하였으나, 현재는 운영되지 않음

에 따라 그 실효성이 없어 해당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조례의 폐지는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붙임 조례안 1부. 끝.

## 대구광역시 달성군 리개발위원회 조례 폐지조례안

대구광역시 달성군 리개발위원회 운영 조례는 폐지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대구광역시 달성군 미등록 경로당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1. 의안번호: 제2509호

2. 제 출 일: 2024년 6월 4일

3. 제 출 자: 박주용 의원 등 3인

## 4. 제안사유

- 실질적인 경로당 기능을 수행하고 있으나, 「노인복지법」 상 노인 여가복지시설 기준을 충족하지 못해 경로당으로 등록되지 않아 지원받지 못하는 시설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어르신들의 건전한 여가 활동 증진에 기여하고자 함.

## 5. 주요내용

- 조례의 목적 및 정의 규정(안 제1조~제2조)
- 군수의 책무 규정(안 제3조)
- 지원계획 수립 및 대상과 범위 규정(안 제4조~제5조)
- 지도 및 감독에 관한 사항 규정(제6조)

## 6. 관계법령

- 「노인복지법」 및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 7. 검토의견

- 본 조례안은 「노인복지법」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명시하고 있는 노인여가복지시설 중 경로당과 관련하여 이와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고 있으나, 시설기준을 충족하지 못하여 지원받지 못하는 시설에 대해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 ‘미등록 경로당’의 기초자치단체 조례제정 현황은 올해 5월 기준 자치법규 조문 내용으로 미등록경로당 개념을 명시한 지자체가 50여곳, ‘미등록 경로당’을 별도의 제명으로 명시한 지자체는 5곳이며 해당 지자체는 자체 경로당 관련 조례 또한 별도로 제정되어 있습니다.
- 제정과 관련하여 경로당에 대한 지원 기준은 「노인복지법」상 명시되어 있으나, 본 조례안의 ‘미등록 경로당’은 자치사무 개념으로 별도 지원기준을 마련한 바, 공공요금 및 시설개선 사업비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 끝으로, 지원 근거와 관련하여 ‘미등록 경로당’의 경우 위임되지 않은 사항으로서 「지방재정법」 제17조제1항제1호,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로는 볼 수 없으며 같은 조 제4호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인지 살펴 조례 제정의 취지에 맞게 사업을 추진하여야 할 것입니다.

- 붙임 1. 조례안 1부.  
2. 관계법령 1부. 끝.

# 대구광역시 달성군 미등록 경로당 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구광역시 달성군 내 미등록 경로당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노인복지 증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미등록 경로당”이란 「노인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제37조 및 법 시행규칙 제26조에 따른 시설 등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노인여가복지시설로 신고되지 않은 시설로서, 마을회관 등의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대구광역시 달성군(이하 “군”이라 한다) 노인들이 자율적으로 친목 도모, 취미활동, 그 밖의 여가 활동을 할 수 있는 장소 제공을 목적으로 하는,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시설을 말한다.

1. 65세 이상의 상시 이용자(이하 “이용자”라 한다) 수가 5명 이상일 것
2. 거실 또는 휴게실 면적이 10제곱미터 이상일 것
3. 화장실 및 전기 시설을 갖추고 있을 것
4. 1년 이상 자체적으로 상시 운영하고 있을 것

제3조(군수의 책무) 대구광역시 달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군에 위치한 미등록 경로당이 법 제37조 및 법 시행규칙 제26조에 따른 시설 등의 요건을 갖추어 노인여가복지시설로 신고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 군수는 미등록 경로당의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정기적으로 미등록 경로당의 운영 실태를 조사하고 지원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제5조(지원대상 및 범위)** ① 이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은 군에 위치한 미등록 경로당으로 한다.

② 군수는 미등록 경로당의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에서 정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미등록 경로당에 지원할 수 있다.

1. 임차료 및 공과금(전기·가스·수도요금)
2. 냉·난방비
3. 시설 환경 개선 사업비
4. 그 밖에 군수가 미등록 경로당의 운영 활성화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

③ 군수는 제2조제1호에 따른 미등록 경로당의 이용자 수, 시설 규모, 관리 방법·실태 등을 고려하여 차등 지원할 수 있다.

④ 지원 기간은 최초 지원일부터 2년으로 하되, 제6조에 따른 지도·감독 결과 이상이 없을 경우 같은 기간씩 연장한다.

**제6조(지도·감독)** ① 군수는 제5조에 따른 미등록 경로당 지원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지도·감독을 할 수 있다.

1. 시설 및 이용자 관리
2. 이용자 권익 보호
3. 시설 및 이용자 안전 관리

4. 민원 발생 여부

5. 지원금 사용 내역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지도·감독한 결과 시정해야 할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그 시정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지원 축소, 중단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지도·감독한 결과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 등으로 지원을 받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여야 한다.

**제7조(준용)** 이 조례에 따른 보조금의 신청과 지급, 관리 및 정산 등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을 따르거나 「대구광역시 달성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참고**

**상위 및 관계법령**(발췌)

□ 「노인복지법」(2024. 1. 2. 일부 개정, 2024. 4. 3. 시행)

제37조(노인여가복지시설의 설치)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노인여가복지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외의 자가 노인여가복지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③ 시장·군수·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④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경로당의 활성화를 위하여 지역별·기능별 특성을 갖춘 표준 모델 및 프로그램을 개발·보급하여야 한다.

⑤ 노인여가복지시설의 시설, 인력 및 운영에 관한 기준과 설치신고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 「노인복지법 시행규칙」(2024. 4. 3. 일부개정, 2024. 4. 3. 시행)

제26조(노인여가복지시설의 시설기준등) ① 법 제37조의 규정에 의한 노인여가복지시설의 시설기준 및 직원배치기준은 별표 7과 같다.

■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 7]

노인여가복지시설의 시설기준 및 직원배치기준(제26조제1항 관련)

1. 시설의 규모

노인여가복지시설은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면적 이상이거나 또는 인원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가. 노인복지관 : 연면적 5백 제곱미터 이상

나. 경로당 : 이용정원 20명 이상(섬 또는 읍·면지역의 경우에는 10명 이상)

다. 노인교실 : 이용정원 50명 이상

2. 시설기준

구분	사무	식당	상담실	집회	프로	화장	물리	비상	거실	전	강의	휴	객	공동	기타
----	----	----	-----	----	----	----	----	----	----	---	----	---	---	----	----

시설별	실	및 조리 실	또는 면회실	실 또는 강당	그 램 실	실	치 료 실	재 해 대 비 시 설	또 는 휴 게 실	기 시 설	실	계 실	실	목 욕 장	부 대 시 설
노인 복지관	1	1	1	1	1	1	1	1							
경로당						1			1	1					
노인 교실	1					1					1	1			

비고

1. 노인복지관 : 오락실에 인터넷 등을 통하여 전자정보의 접근이 가능한 컴퓨터를 설치할 수 있다.
2. 노인교실 : 사무실 및 휴게실은 사업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강의실과 겸용할 수 있다.

3. 설비기준

시설의 종류 구분	노인복지관	경로당	노인교실
설비기준	<p>가. 식당 및 조리실: 조리실 바닥재는 내수 소재이고, 조리실은 세척 및 배수에 편리한 구조여야 한다.</p> <p>나. 프로그램실 :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는 적당한 문화시설과 오락기구를 비치해야 한다.</p> <p>다. 물리치료실 : 기능회복 또는 기능감퇴를 방지하기 위한 훈련 등에 지장이 없는 면적과 필요한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p>	<p>가. 거실 또는 휴게실 : 20제곱미터 이상이어야 한다.</p>	<p>가. 강의실 : 33제곱미터 이상이어야 한다.</p>

# 대구광역시 달성군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1. 의안번호: 제2512호

2. 제출일: 2024년 6월 4일

3. 제출자: 양은숙 의원 등 3인

## 4. 제안사유

- 국민권익위원회의 「자치법규 부패영향평가 개선 권고」에 따라 징수포상금 지급 심의에 외부 위촉 위원이 참여하여 의사결정과정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고, 상위법 개정에 따라 조문을 정비하여 현행 조례를 보완하고자 함.

## 5. 주요내용

- 상위법 개정에 따른 조문 정비(안 제2조제2항)
- 징수포상금 지급 심의에 외부 위촉 위원 참여(안 제7조)
- 별지 서식의 용어 정비(별지 제1호서식~제11호서식)
- 그 밖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관련 조문 정비

## 6. 관계법령

- 「지방세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시행규칙  
「지방세징수법」,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 7. 검토의견

- 본 개정조례안은 국민권익위원회의 「자치법규 부패영향평가 개선 권고」 사항을 반영하여, 민간 위촉위원 참여 보장 등을 확보하고, 달성군 지방세심의위원회에 의해 대상자를 선정하여 신뢰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 아울러, 기존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공적 심의를 위한 지방세심의위원회 운영을 명문으로 규정하여 공적 심사 결정에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고
-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별지 서식의 주민등록번호 요구 관행을 지양하여 ‘생년월일’로 서식을 정비하는 등 기타 알기 쉬운 법령 용어에 기반한 개정 사항 정비로 군민의 이해도와 접근성을 높이고자 하는 것으로 본 조례의 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 붙임 1. 조례안 1부.  
2. 관계법령 1부. 끝.

# 대구광역시 달성군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달성군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군수”이라”를 ““군수”라”로, “포상금”을 “지방세입 징수포상금(이하 “포상금”이라 한다)으로 하고, 같은 항 제5호 중 “지방세징수법”을 “「지방세징수법」”으로 하며, 같은 항 제6호 중 “포상금지급심의위원회”를 “법 제147조제1항 및 「대구광역시 달성군 군세 기본 조례」 제7조에 따른 대구광역시 달성군 지방세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로 하고, 제2조제2항 중 “결손처분”을 “정리보류”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다음 각 호”를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 제54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삭제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세외수입”을 “지방세외수입”으로 한다.

제3조제2항 중 “세외수입”을 “지방세외수입”으로 한다.

제7조의 제목 “(포상금지급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을 “(포상금지급 심의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2항, 제3항, 제5항 및 제6항을 각각 삭제한다.

① 포상금 지급 등에 대한 공적 심의는 위원회에서 한다.

제11조의 제목 “(대장비치)” 를 “(대장관리)” 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별지 제7호서식” 을 “포상금 지급과 관련하여 별지 제7호서식” 으로, “비치하고” 를 “갖추어 놓고” 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부터 별지 제11호서식까지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탈루세액 등에 대한 제보 포상금 지급신청서

신 청 인	성 명		생 년 월 일	
	주 소	전화번호(☎)		
제 보 내 용	제 출 일 자		제 출 부 서	
	제 보 내 용 약			
통 지 받은 탈루세액 등	탈 루 세 액 등			
포 상 금 신청	금 액			
	산 출 근 거			
계 좌 신 고	금 용 기 관			
	계 좌 번 호			
<p>「대구광역시 달성군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제6조제2항에 따른 탈루세액 등에 대한 제보 포상금 지급을 신청합니다.</p> <p style="text-align: right; margin-right: 100px;">년      월      일</p> <p style="text-align: right; margin-right: 50px;">신 청 인:                      (인)</p> <p style="text-align: center; margin-top: 20px;">귀하</p>				
<p>첨 부: 통장사본 1부</p> <p>※ 주민등록증 등 본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신분증 지참</p>				



[별지 제5호서식]

###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신청서(개인별)

수신:

참조:

(단위: 원)

구 분		건 수	징 수 액	포 상 금
합 계				
버려지거나 숨은세원발굴				
지난연도 채납액 징수	소 계			
	1 년 차			
	2 년 차			
	3 년 차 이 상			
징 수 촉 탁				
지방세징수에 특별한공적등				

붙임: 세부징수내역 등 증빙자료

「대구광역시 달성군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제8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징수포상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신청서(총괄)

수신:

참조:

발신: (인)

(단위: 원)

구 분	건 수	징 수 액	포 상 금
합 계			
탈루세액 등 제보			
체납자 은닉재산 신고			
버려지거나 숨은 세원 발굴			
지난연도 체납액 징수	소 계		
	1 년 차		
	2 년 차		
	3 년 차 이 상		
징 수 촉 탁			
지방세 징수에 특별한 공적 등			

[별지 제7호서식]

### 탈루세액 등 제보 포상금 지급대장

(단위: 원)

제 보 자		부과 징수내역				납세의무자		징수 월일	포상 금액	포상금 지급일	팀장 확인
성 명	생년 월일	년도 납기	과세 번호	세 목	징수액	성 명	생년 월일				

[별지 제8호서식]

### 채납자 은닉재산 신고 포상금 지급대장

(단위: 원)

신고자		징수내역				채납자		징수일자	포상금액	포상금지급일	팀장확인
성명	생년월일	년도납기	과세번호	세목	징수액	성명	생년월일				

### 숨은 세원발굴 징수포상금 지급대장

(단위: 원)

부과자 (제보자)		부과 징수내역				납세의무자		징수 일자	포상 금액	포상금 지급일	팀장 확인
직 급	성명 (생년 월일)	년도 납기	과세 번호	세 목	징수액	성 명	생년 월일				

### 지난연도 체납액 징수포상금 지급대장

(단위: 원)

징수 월일	징 수 자		징 수 내 역					체 납 자		특별징수 공적사유	포상 금액	포상금 지급일	팀장 확인
	직 급	성 명	구분	년도 납기	과세 번호	세 목	징수액	성 명	생년 월일				

※ “구분” 란에는 지난연도 체납액 경과연수(1년 차, 2년 차, 3년 차)를 표시

### 징수촉탁 징수포상금 지급대장

(단위: 원)

징수자		징수촉탁내역					채납자		징수촉탁 수 수 료		지급 일자	포상금 지급액	팀장 확인
직급	성명	구분	연도 기분	과목 (세목)	징수 액	징수 일자	주소	성명	받은 일자	수령 액			

- ※ 1. “징수촉탁내역” 란에는 위탁기관 과세자료를 표시  
 2. “구분” 란에는 과세권자(자치단체명)을 표시

##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2조(지급대상) ① 대구광역시 달성군수(이하 “군수” 이라 한다)는 「지방세기본법」(이하 “법” 이라 한다) 제146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p> <p>1. ~ 4. (생략)</p> <p>5. 지방세징수법 제18조에 따른 징수촉탁에 의하여 세입증대에 기여한 자</p> <p>6. 창의적인 제안이나 제도개선 등 제1호부터 제4호에 준하는 사유로 포상금지급심의위원회에서 지방세의 징수에 특별한 공적이 있다고 인정하는 자</p> <p>② 제1항제4호 중 “특별한 노력” 이란 대구광역시 달성군(이하</p>	<p>제2조(지급대상) ①</p> <p>----- “군수” 라</p> <p>-----</p> <p>-----</p> <p>-----</p> <p>----- 지방세입 징수포상금(이하 “포상금” 이라 한다)</p> <p>-----</p> <p>-----.</p> <p>1. ~ 4. (현행과 같음)</p> <p>5. ----- 「지방세징수법」</p> <p>-----</p> <p>-----</p> <p>6 ----- .</p> <p>-----</p> <p>----- 법 제147조제1항 및 「대구광역시 달성군 군세 기본 조례」 제7조에 따른 대구광역시 달성군 지방세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 한</p> <p>----- 다)</p> <p>② -----</p> <p>-----</p>			



우에도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3조(지급기준) ① (생략)**

② 제2조제4항에 따라 점용료·사용료 및 과태료 등 세외수입 증대에 대한 포상금을 지급할 경우에는 제1항제3호, 제4호 및 제6호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7조(포상금지급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① 포상금의 지급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구광역시 달성군 지방세입포상금지급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5인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자치행정국장이 되고, 위원은 세무과장, 회계과장, 토지정보과장, 정보통신과장이 된다.

③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 중 직제순으로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방 세 외 수 입**

**제3조(지급기준) ① (현행과 같음)**

②

지방세외수입

**제7조(포상금 지급 심의 등) ① 포상금 지급 등에 대한 공적 심의는 위원회에서 한다.**

<삭 제>

<삭 제>

④ (생략)

⑤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위원 중 포상금지급대상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위원은 회의에 참석할 수 없다.

⑥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1조(대장비치) 세입금 부과징수 부서는 별지 제7호서식부터 별지 제11호서식까지의 대장을 비치하고 필요한 사항을 기록·정리하여야 한다.

④ (현행과 같음)

<삭제>

<삭제>

제 1 1 조 ( 대 장 관 리 )

----- 포상금 지급과 관련하여 별지 제7호서식부터 -----  
갖추어 놓고  
-----  
---

## 참고

## 상위 및 관계법령(발췌)

### □ 「지방세기본법」(2023. 12. 29. 일부 개정, 2024. 1. 1. 시행)

제146조(포상금의 지급)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세조합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포상금은 1억원을 초과할 수 없다.

1. 지방세를 탈루한 자의 탈루세액 또는 부당하게 환급·감면받은 세액을 산정하는 데 중요한 자료를 제공한 자
2. 체납자의 은닉재산을 신고한 자
3. 버려지거나 숨은 세원(稅源)을 찾아내어 부과하게 한 자
4.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체납액 징수에 기여한 자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방세 부과·징수에 또는 지방세조합장이 지방세 징수에 특별한 공적이 있다고 인정하는 자

② 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경우 탈루세액, 부당하게 환급·감면받은 세액, 은닉재산의 신고를 통하여 징수된 금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미만인 경우 또는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자료를 제공하거나 은닉재산을 신고한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③ 제1항제1호에서 “중요한 자료”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료 또는 정보를 말한다.

1. 지방세 탈루 또는 부당하게 환급·감면받은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거래처, 거래일 또는 거래기간, 거래품목, 거래수량 및 금액 등 구체적 사실이 기재된 자료 또는 장부(자료 또는 장부 제출 당시에 납세자의 부도·폐업 또는 파산 등으로 인하여 과세실익이 없다고 인정되는 것과 세무조사가 진행 중인 것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자료등”이라 한다)
2. 자료등의 소재를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인 정보
3. 그 밖에 지방세 탈루 또는 부당하게 환급·감면받은 수법, 내용, 규모 등의 정황으로 보아 중요하다고 인정할 만한 자료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등

④ 제1항제2호에서 “은닉재산”이란 체납자가 은닉한 현금, 예금, 주식, 그 밖에 재산적 가치가 있는 유형·무형의 재산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재

산은 제외한다.

1. 「지방세징수법」 제39조에 따른 사해행위 취소소송의 대상이 되어 있는 재산
  2. 세무공무원이 은닉사실을 알고 조사 또는 체납처분 절차에 착수한 재산
  3. 그 밖에 체납자의 은닉재산을 신고받을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재산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
- ⑤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자료의 제공 또는 신고는 성명과 주소를 분명히 적고 서명하거나 날인한 문서로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여야 한다.
- ⑥ 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포상금 지급과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은 자료 제공자 또는 신고자의 신원 등 신고 또는 제보와 관련된 사항을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 ⑦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포상금의 지급기준, 지급방법과 제5항에 따른 신고기간, 자료 제공 및 신고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⑧ 제1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에 해당하는 포상금 지급대상, 지급기준, 지급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또는 「지방자치법」 제178조 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조합회의의 심의·의결을 거쳐 정하는 포상금 관련 규정(規程)으로 정한다.
- ⑨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지방세조합장은 이 법이나 그 밖의 법령에서 정한 포상금에 관한 규정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어떠한 금전이나 물품도 지방세의 납부 등 세수 증대에 기여하였다는 이유로 지급할 수 없다.

**제147조(지방세심의위원회 등의 설치·운영)** 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거나 의결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에 지방세심의위원회를 둔다.

1. 제82조 제1항에 따른 세무조사대상자 선정에 관한 사항
2. 제88조에 따른 과세전적부심사에 관한 사항
3. 제90조및제91조에 따른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
4. 「지방세징수법」 제11조 제1항및제3항에 따른 체납자의 체납정보 공개에 관한 사항
5. 「지방세징수법」 제11조의4에 따른 감치에 관한 사항
6. 「지방세법」 제10조의2에 따른 시가인정액의 산정 등에 관한 사항

- 7. 「지방재정법」 제44조의2에 따라 예산안에 첨부되는 자료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에 관한 사항
  - 8. 지방세관계법에 따라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규정한 사항
  - 9.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② 제1항제4호 및 제9호의 사항을 심의하거나 의결하기 위하여 지방세조합에 지방세징수심의위원회를 둔다. 이 경우 제1항제9호 중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세조합장”으로 본다.
- ③ 제1항에 따른 지방세심의위원회 및 제2항에 따른 지방세징수심의위원회의 조직과 운영, 그 밖의 중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④ 제1항에 따른 지방세심의위원회 및 제2항에 따른 지방세징수심의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은 「형법」과 그 밖의 법률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 「지방세기본법」 (2024. 3. 26. 일부 개정 및 시행)

제82조(포상금의 지급) ① 법 제146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탈루세액 또는 부당하게 환급·감면받은 세액(이하 이 조에서 “탈루세액등”이라 한다)에 다음의 지급률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포상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탈루세액등	지급률
3천만원 이상 1억원 이하	100분의 15
1억원 초과 5억원 이하	1,500만원 + 1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10
5억원 초과	5,500만원 + 5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5

② 법 제146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은닉재산의 신고를 통하여 징수된 금액(이하 이 조에서 “징수금액”이라 한다)에 다음의 지급률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포상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징수금액	지급률
1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	100분의 15
5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	750만원 + 5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10
1억원 초과	1,250만원 + 1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5

③ 법 제146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포상금은 현금지급, 이체입금 등의 방법에 따라 지급한다.

④ 법 제146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탈루세액등의 경우에는 3천만원, 징수금액의 경우에는 1천만원을 말한다.

⑤ 법 제146조제3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등”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료 또는 정보(이하 이 조에서 “자료등”이라 한다)를 말한다.

1. 지방세 탈루 또는 부당한 환급·감면과 관련된 회계부정 등에 관한 자료등
2. 그 밖에 지방세 탈루 또는 부당한 환급·감면의 수법, 내용, 규모 등 정황으로 보아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자료등

⑥ 법 제146조제4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이란 체납자 본인의 명의로 등기·등록된 국내에 있는 재산을 말한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포상금의 신고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나 「지방자치법」 제178조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조합회의의 심의·의결을 거쳐 정하는 포상금 관련 규정(規程)으로 정한다.

## □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 (2024. 3. 26. 일부 개정 및 시행)

제54조(체납액 징수에 기여한 자) ① 법 제146조제1항제4호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체납액 징수에 기여한 자”란 지속적인 납부독려, 체납처분 등 특별한 노력으로 체납액 징수에 기여한 자를 말한다.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노력으로 체납액 징수에 기여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1. 단순히 독촉장, 납부최고서, 체납액 고지서를 발송한 후 체납자의 자진 납부에 따라 체납액이 징수되는 경우
2. 과세물건에 대한 압류만으로 해당 과세물건에 대한 체납액이 징수된 경우
3. 해당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가 체납자의 재산에 대하여 실시한 공매 또는 경매 등에 참가하여 받은 배당금으로 체납액이 징수되는 경우

## □ 「지방세징수법」 (2023. 12. 29. 일부 개정, 2024. 1. 1. 시행)

제106조(정리보류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납세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정리보류를 할 수 있다.

1. 체납처분이 종결되고 체납액에 충당된 배분금액이 그 체납액보다 적을 때
  2. 체납처분을 중지하였을 때
  3. 삭제
  4. 체납자의 행방불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징수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
-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세징수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을 때에는 시효 완성정리를 하여야 한다.
-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정리보류를 한 후 압류할 수 있는 다른 재산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체납처분을 하여야 한다.

□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2021. 12. 28. 일부 개정, 2024. 1. 1. 시행)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이란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그 소속 행정기관의 장이 행정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법률에 따라 부과·징수(국가기관의 장으로부터 위임·위탁받아 부과·징수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수입으로 하는 조세 외의 금전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것을 말한다.

가. 다른 법률에서 이 법에 따라 징수하기로 한 과징금, 이행강제금, 부담금 및 변상금

나. 그 밖의 조세 외의 금전으로서 다른 법률에서 이 법에 따라 징수하기로 한 금전

- 1의2. “지방세외수입”이란 지방행정제재·부과금과 그 밖의 다른 법률 또는 조례에 따라 부과·징수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조세 외의 금전 수입으로서 수수료, 재산임대수입 등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금전 수입을 말한다.

□ 「대구광역시 달성군 군세 기본 조례」(2020. 6. 10. 일부 개정 및 시행)

제7조(지방세심의위원회) 법 제147조제1항에 따라 군에 두는 위원회의 명칭은 “대구광역시 달성군 지방세심의위원회”로 한다.

#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검토보고서

1. 의안번호: 제2513호

2. 제 출 일 : 2024년 6월 13일

3. 제 출 자 : 달성군수

4. 제출사유

-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47조제1항3호(결산의 승인)의 규정에 의거, 군의회의 승인을 얻고자 함

5.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제47조(지방의회의 의결사항)
-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회의 규칙 제65조(결산 등의 심사)

6. 세입세출 결산규모

1) 총 괄

(단위: 백만원)

예산현액	세입 결산액	세출 결산액	차 인 잔 액					
			계	명시 이월	사고 이월	계속비 이월	보조금 집행잔액	순세계 잉여금
1,184,254	1,213,816	993,089	220,727	95,654	23,703	19,136	9,690	72,544

## 2) 일반회계

### 가. 세입

#### 일반회계 세입결산

(단위: 백만원)

예산현액	징수결정액	실제수납액	정리보류액	미수납액
1,179,772	1,235,513	1,209,240	1,795	24,478

### 나. 세출

#### 일반회계 세출결산

(단위: 백만원)

예산액	예산성립후 증감	예산현액	지출액	이월액	보조금 반납금	집행잔액
1,037,887	141,885	1,179,772	988,655	138,493	9,712	42,912

## 3) 특별회계

### 가. 세입

(단위: 백만원)

구분	예산현액	징수결정액	수납액	정리보류액	미수납액
기타특별회계	4,482	4,578	4,577	1	-

### 나. 세출

(단위: 백만원)

구분	예산액	예산현액	지출액	이월액	보조금반납금	집행잔액
기타특별회계	4,482	4,482	4,434	-	28	20

#### 4) 계속비, 명시이월 및 사고이월

##### 다음연도 이월액 현황

(단위: 백만원)

구 분		건수	다음연도 이월액	비 고
<b>계</b>	<b>계</b>	<b>490</b>	<b>138,493</b>	<b>‘회원공공복합청사 리뉴얼사업’ 등</b>
일반회계	명시이월	343	95,654	
	사고이월	137	23,703	
	계속비이월	10	19,136	
특별회계	명시이월	0	0	
	사고이월	0	0	
	계속비이월	0	0	

### 7. 기금의 결산

##### 기금 현황

(단위: 백만원)

구 분	전년도말 조성액	해당연도 증감액		해당연도말 조성액
		조성액	사용액	
<b>계</b>	<b>224,108</b>	<b>69,986</b>	<b>3,498</b>	<b>290,594</b>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재정안정화계정)	203,494	67,515	-	271,009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계정)	6,190	156	3,385	2,961
고향사랑기금	-	54	-	54
식품진흥기금	117	36	50	103
자활기금	872	25	40	857
재난관리기금	12,444	2,183	-	14,627
옥외광고발전기금	208	3	15	196
체육진흥기금	783	12	8	787

## 8. 결산서 첨부서류의 결산

### 1) 채 권

#### 채권 현황

(단위: 백만원)

구 분	전년도말 현재액	당해연도 발생액	당해연도 소멸액	해당연도말 현재액
계	3,589	162	243	3,508
일반회계	3,328	132	242	3,218
특별회계	1	-	1	-
기 금	260	30	-	290

### 2) 채 무

#### 채무 현황

(단위: 백만원)

구분	전년도말 현재액	당해연도 증감액		해당연도말 현재액
		발생액	소멸액	
계	1,150	-	-	1,150
일반회계	1,150	-	-	1,150
기타특별회계	-	-	-	-

※차입처: 주택도시보증공사(수요자중심형 도시재생지원 용자), 만기일: '29.11.21, 이자율 1.5%(변동금리)

### 3) 공유재산

#### 공유재산 증감 현황

(단위: 백만원)

구 분 용도별	전년도말 현재액	해당연도 증감액		해당연도말 현재액	
		증	감		
계	2,811,912	180,540	49,699	2,942,753	
행정 재산	소 계	2,670,136	176,300	28,040	2,818,396
	공용재산	294,689	62,102	42	356,749
	공공용재산	2,374,572	114,197	27,998	2,460,771
	기업용재산	300	-	-	300
	보존용재산	575	-	-	575
일반재산	6,738	4,240	1,080	9,898	
건설중인재산	135,038	-	20,580	114,458	

#### 4) 물 품

#### 물품 증감 현황

(단위: 개, 백만원)

전년도말현재액		증 감 내 역				당해연도말현재액	
		취 득		처 분			
수량	금 액	수량	금 액	수량	금 액	수량	금 액
967	13,398	135	1,377	8	26	1,094	14,750

### 9. 금고의 결산

#### 1) 총수입 및 지출액

(단위: 백만원)

구 분	세입 결산액	세출 결산액	잔 액 (금고보관액)
계	1,213,816	993,089	220,727
일 반 회 계	1,209,240	988,655	220,585
기타특별회계	4,577	4,435	142

#### 2) 세입세출외현금

(단위: 백만원)

구분	전년도말 현 재 액	당해연도 증감액			당해연도말 현 재 액
		계	증가액	지출액	
계	1,041	185	20,851	20,666	1,225

## 10. 검토의견

-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예산과 관련하여 순세계잉여금이 전년대비 345억원(90.8%)이 증가하였으나, 지난 5년간 평균증감율이 -14.3%로 전반적으로 감소추세에 있어 재정운용의 효율성이 개선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 세출예산의 집행현황을 보면 예산현액이 1조 1,842억 원, 지출액은 9,930억 원이고 집행률은 83.9%로 전년과 비슷한 비율로 집행되었으며,
- 이월액은 1,385억 원이고 예산현액 대비 11.7%로 전년 대비 2.4%가 감소하였습니다. 예산현액 대비 10%가 넘는 이월액은 사업부진, 보상지연 등으로 이월되는 사업비가 그 원인으로 사업 시행 전 치밀한 사전계획과 타당성 조사를 통해 계획적이고 효율적인 예산편성과 운영으로 집행률을 높이고, 이월되는 사업비를 최소화하는 대책이 필요합니다.
- 2023회계연도말 기금조성액은 전년도말 조성액 2,241억 원에서 당해연도 699억 원을 조성하고 34억 원을 사용하여 2,905억 원입니다.
- 재무제표 부문에 대한 재정상태는 총 자산 4조 1,135억 원이며 부채를 차감한 순자산은 전년대비 6.1%가 증가한 4조 877억 원입니다. 또한, 총비용과 총수익을 비교한 재정운영결과는 2,335억 원으로 전년대비 4%가 감소하였습니다.

- 성과보고서 부문에 대한 성과지표 달성현황은 성과지표수 176개 중 131개를 초과달성 또는 달성하여 성과지표 달성률 74.4%이며, 이는 전년대비 4.3%가 감소하였습니다.
  
- 2023회계연도말 채권은 35억 원이고, 채무액은 도시재생 뉴딜사업 추진에 따른 주택도시보증공사 차입금 11억 원이며, 공유재산은 전년도보다 1,308억 원 증가한 2조 9,427억 원입니다. 공유재산의 규모가 매년 증가하는 만큼 체계적인 공유재산관리계획을 통한 철저한 관리가 요구됩니다. 상기 내용과 같이 2023회계연도 결산과 관련하여 전반적으로 검토한 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 202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검토보고서

1. 의안번호: 제2514호

2. 제 출 일: 2024년 6월 13일

3. 제 출 자: 달성군수

## 4. 제안사유

- 2023회계연도에 지출한 예비비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44조 제2항 및 지방재정법 제43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지출승인을 받고자 제출 하는 것임

## 5. 주요내용

### ○ 총괄

- 지출결정액 : 금16,514,000원(금일천육백오십일만사천원)
- 지 출 액 : 금16,514,000원(금일천육백오십일만사천원)
- 이 월 액 : 해당없음
- 불 용 액 : 해당없음

### ○ 일반회계

- 지출결정액 : 금16,514,000원(금일천육백오십일만사천원)
- 지 출 액 : 금16,514,000원(금일천육백오십일만사천원)
- 이 월 액 : 해당없음
- 불 용 액 : 해당없음

## 예비비 지출 결정 및 지출 내역

(단위 : 원)

관 련 부 서	예비비 배정과목		지 출 결정일	지 출 결정액	지출액	이월액	집행잔액	적 요
	편성목	통계목						
농업 정책과	<b>계</b>			<b>16,514,000</b>	<b>16,514,000</b>	<b>0</b>	<b>0</b>	
	농작물 재해복구	민간인재해 및복구활동 보상금 302-02	2023. 11.07.	16,514,000	16,514,000	0	0	이상저온(냉해) 피해농가 복구 지원

### 6.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제144조 제2항(예비비)
- 「지방재정법」 제43조 제4항(예비비)

### 7. 검토의견

- 202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결정액은 일반회계 16,514,000원이며, 그 중 16,514,000원을 지출하였으며, 집행잔액은 0원입니다.
- 2023회계연도 예비비는 이상저온(냉해) 피해농가 복구지원 사업을 위해 편성하여 지출하였으며, 「지방재정법」 제43조에 따라 정상적으로 예비비가 편성되고, 사용 목적에 맞게 지출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 □ 지방자치법

- 제144조(예비비) ① 지방자치단체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이나 예산 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세입·세출예산에 예비비를 계상하여야 한다.
- ② 예비비의 지출은 다음 해 지방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 지방재정법

- 제43조(예비비) ① 지방자치단체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또는 예산 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일반회계와 교육비특별회계의 경우에는 각 예산 총액의 100분의 1 이내의 금액을 예비비로 예산에 계상하여야 하고, 그 밖의 특별회계의 경우에는 각 예산 총액의 100분의 1 이내의 금액을 예비비로 예산에 계상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재해·재난 관련 목적 예비비는 별도로 예산에 계상할 수 있다.
-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의회의 예산안 심의 결과 폐지되거나 감액된 지출항목에 대해서는 예비비를 사용할 수 없다.
-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비비로 사용한 금액의 명세서를 「지방자치법」 제150조 제1항에 따라 지방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대구광역시 달성군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의안번호: 제2521호

2. 제 출 일: 2024년 6월 13일

3. 제 출 자: 달성군수

## 4. 제안사유

-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기준에 따른 후생복지사업 세부내용을 보완하여 직원의 복지 향상 및 사기 진작을 도모하고자 함.

## 5. 주요내용

- 예산 편성기준에 따라 단체보험료 및 건강검진비 별도 편성 근거 신설(안 제7조)

## 6. 관계법령

- 「지방공무원법」 제77조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제4조

## 7. 검토의견

- 본 개정조례안은 예산 편성 기준에 따라 현재 시행하고 있는 건강 검진비 지원 근거를 보완하고, 단체보험료 지원을 위한 규정을 신설하여 포인트에서 차감하고 있는 단체보험료를 예산으로 지원하고자 하는 것으로
- 기존 맞춤형복지제도시행경비(201-04) 직원 복지포인트에서 단체 보험료를 공제하였던 사항을 변경하여, 단체보험료는 공공운영비(201-02)로 별도 예산을 편성, 포인트에서 차감하는 단체보험료를 예산으로 지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 대구시 구군에서는 달서구, 남구가 지난 2023년 조례 개정 후 2024년부터 시행 중에 있는 사항으로 군의 재정자립도 및 응군의 위상에 맞게 직원의 복지증진을 위한 본 조례의 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 붙임 1. 조례안 1부.  
2. 관계법령 1부. 끝.

## 대구광역시 달성군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달성군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7조(맞춤형 복지제도의 운영) ① 군수는 소속공무원의 다양한 복지수요를 효율적으로 충족시킬 수 있도록 맞춤형 복지제도를 운영하여야 하며, 이 제도에 포함된 소속공무원 단체보험 및 건강검진은 별도 예산으로 편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맞춤형 복지제도에 따른 복지혜택은 기본항목과 자율항목으로 구성한다.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7조(맞춤형 복지제도의 <u>항목</u>)  <u>맞춤형 복지제도에 의한 복지혜택은</u>  <u>기본항목과 자율항목으로 구성한</u>  <u>다.</u></p>	<p>제7조(맞춤형 복지제도의 <u>운영</u>)  <u>① 군수는 소속공무원의 다양한 복</u>  <u>지수요를 효율적으로 충족시킬 수</u>  <u>있도록 맞춤형 복지제도를 운영하</u>  <u>여야 하며, 이 제도에 포함된 소속</u>  <u>공무원 단체보험 및 건강검진은 별</u>  <u>도 예산으로 편성하여 운영할 수</u>  <u>있다.</u>  <u>② 맞춤형 복지제도에 따른 복지혜</u>  <u>택은 기본항목과 자율항목으로 구</u>  <u>성한다.</u></p>

□ 지방공무원법

제77조(능력 증진을 위한 사항)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의장은 소속 공무원의 근무 능력을 높이기 위하여 보건·휴양·안전·후생,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대한 기준을 설정하고, 이를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의장은 상호 간에 협의하여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1. 10. 8.>

□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제4조(기준경비) 지방재정의 건전한 운용과 지방자치단체 간 재정운용의 균형을 확보하기 위한 기준경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 4.(생략)

5.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용에 관한 규칙」 제8조제2항제5호의 규정에 따라 지방공무원 맞춤형복지제도 시행 기준경비는 별표 5. 일·숙직비의 기준경비는 별표 6. 교육강사의 기준경비는 별표 7과 같다.

별표 5. 맞춤형복지제도 시행 경비

① ~ ②(생략)

③ 편성방법

- 해당 자치단체 2023년 맞춤형복지제도 시행경비가 기준액 이상인 자치단체는 2023년과 동일하게 편성(인상불가) 또는 기준액 이내로 편성
- 단체보험 및 건강검진은 ‘맞춤형복지제도 시행경비(201-04)’ 내에서 통합운영(후생복지에 관한 자치법규가 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자치법규에 의하여 집행)

# 비 용 추 계 서

## 1. 사업개요

직원의 복지 향상과 사기 진작을 위해 예산 편성 기준에 따라 현재 시행하고 있는 건강검진비 지원 근거를 보완하고, 단체보험료 지원 규정을 마련하여 보험료 지원

## 2. 비용 발생 요인

직원 단체보험료 지원

## 3. 관련조문

「대구광역시 달성군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개정(안) 제7조

## 4. 비용 추계결과

### 가. 추계의 전제

○ 직원 단체보험료 지원

- 보험료 지원 : 250천 원 × 1,400명 = 350백만 원

### 나. 추계 결과 : 350백만 원 정도(연간)

○ 「대구광역시 달성군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개정안 시행에 따른 직원 단체보험료 지원 비용은 연 350백만 원 정도 소요될 것으로 예상됨

### 다. 재원조달방안 : 자체예산 350백만 원 정도(연간)

## 5. 연도별 비용추계표

(단위 : 천원)

구 분		1차년도 (2024)	2차년도 (2025)	3차년도 (2026)	4차년도 (2027)	5차년도 (2028)	계
세 입		350,000	350,000	350,000	350,000	350,000	1,750,000
지 방 세		350,000	350,000	350,000	350,000	350,000	1,750,000
의존재원		-	-	-	-	-	-
세 출		350,000	350,000	350,000	350,000	350,000	1,750,000
운영비		350,000	350,000	350,000	350,000	350,000	1,750,000
재원 조달		350,000	350,000	350,000	350,000	350,000	1,750,000
의존 재원	소 계	-	-	-	-	-	-
	보조금	-	-	-	-	-	-
	지방교부세	-	-	-	-	-	-
자체 수입	소 계	350,000	350,000	350,000	350,000	350,000	1,750,000
	지방세	350,000	350,000	350,000	350,000	350,000	1,750,000
	세외수입	-	-	-	-	-	-
지방채		-	-	-	-	-	-
기 금		-	-	-	-	-	-
특별회계		-	-	-	-	-	-
균 비		350,000	350,000	350,000	350,000	350,000	1,750,000
기 타 (차입금, 민자, 예비비 등)		-	-	-	-	-	-

## 6. 작성자: 자치행정과 직원복지팀장 구을희

# 대구광역시 달성군 군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1. 의안번호: 제2522호

2. 제 출 일: 2024년 6월 13일

3. 제 출 자: 달성군수

## 4. 제안사유

- 지방세기본법 개정으로 납부지연가산세 면제대상 기준 금액이 30만원에서 45만원으로 상향됨에 따라 상위법령에 맞게 현행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

## 5. 주요내용

- 일반우편 송달기준 금액을 30만원에서 45만원으로 변경  
(안 제5조)

## 6. 관계법령

- 「지방세기본법」 제30조, 제55조

## 7. 검토의견

-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세기본법」이 2023. 12. 29. 일부개정 (시행 2024. 1. 1.)되어 납부지연가산세(舊중가산금) 면제기준 금액이 납세고지서별·세목별 세액 30만원 미만에서 45만원 미만으로 인상된 사항을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 동법 제30조(서류송달의 방법)에 의거 일반우편으로 송달 가능한 납세고지서 및 독촉장의 기준금액을 30만원 미만에서 45만원 미만으로 상향 조정하는 본 조례의 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 붙임 1. 조례안 1부.  
2. 관계법령 1부. 끝.

대구광역시 달성군 조례 제 호

## 대구광역시 달성군 군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달성군 군세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후단 중 “30만원”을 “45만원”으로 한다.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지방세기본법

제30조(서류송달의 방법) ① 제28조에 따른 서류의 송달은 교부·우편 또는 전자 송달로 하되,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방법에 따른다.

② ~ ⑨. (생략)

제55조(납부지연가산세) ① 납세의무자(연대납세의무자, 제2차 납세의무자 및 보증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납부기한까지 지방세를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보다 적게 납부(이하 “과소납부”라 한다)하거나 환급받아야 할 세액보다 많이 환급(이하 “초과환급”이라 한다)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금액을 합한 금액을 가산세로 부과한다. 이 경우 제1호 및 제2호의 가산세는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과소납부분(납부하여야 할 금액에 미달하는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 세액 또는 초과환급분(환급받아야 할 세액을 초과하는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 세액의 100분의 75에 해당하는 금액을 한도로 하고, 제4호의 가산세를 부과하는 기간은 60개월(1개월 미만은 없는 것으로 본다)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17. 12. 26., 2018. 12. 24., 2020. 12. 29.>

1. 과세표준과 세액을 지방자치단체에 신고납부하는 지방세의 법정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과소납부분 세액(지방세관계법에 따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할 이자상당액이 있는 경우 그 금액을 더한다) × 법정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자진납부일 또는 납세고지일까지의 일수 × 금융회사 등이 연체대출금에 대하여 적용하는 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
2. 초과환급분 세액(지방세관계법에 따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할 이자상당액이 있는 경우 그 금액을 더한다) × 환급받은 날의 다음 날부터 자진납부일 또는 납세고지일까지의 일수 × 금융회사 등이 연체대출금에 대하여 적용하는 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
3. 납세고지서에 따른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과소납부분 세액(지방세관계법에 따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할 이자상당액이 있는 경우 그 금액을 더하고, 가산세는 제외한다) × 100분의 3
4. 다음 계산식에 따라 납세고지서에 따른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1개월이 지날 때마다 계산한 금액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과소납부분 세액(지방세관계법에 따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할 이자상당액이 있는 경우 그 금액을 더하고, 가산세는 제외한다) × 금융회사 등이 연체대출금에 대하여 적용하는 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

④ 제1항을 적용할 때 납세고지서별·세목별 세액이 45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같은 항 제4호의 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신설 2020. 12. 29., 2023. 12. 29.>

⑤ 제1항을 적용할 때 납세의무자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인 경우에는 같은 항 제3호 및 제4호의 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신설 2020. 12. 29.>  
[제목개정 2020. 12. 29.]

**부칙** <제17768호, 2020. 12. 2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개정규정은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시행한다. <개정 2021. 12. 28.>

5. 제2조제1항제14호·제22호부터 제24호까지·제26호·제33호, 제34조제1항제12호, 제35조제2항, 제39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55조제1항·제2항·제4항·제5항, 제56조, 제71조제1항·제2항의 개정규정: 2024년 1월 1일

**제6조(납부지연가산세 및 특별징수 납부지연가산세에 관한 경과조치)** 부칙 제1조제5호에 따른 시행일 전에 납세의무가 성립된 분에 대해서는 제2조제1항제14호·제22호부터 제24호까지·제26호·제33호, 제55조제1항·제2항·제4항·제5항, 제56조 및 제71조제1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 및 같은 조 제2항 단서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1조제5호에 따른 시행일 전에 제45조부터 제48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주된 납세자의 납세의무가 성립한 경우의 제2차 납세의무자에 대해서도 또한 같다. <개정 2021. 12. 28.>

**제8조(지방세 납세의무의 확정에 관한 경과조치)** 부칙 제1조제5호에 따른 시행일 전에 제35조제1항에 따라 세액이 확정된 가산세에 대해서는 같은 조 제2항제2호 및 제3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개정 2021. 12. 28.>

**1. 비용발생 요인**

해당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대구광역시 달성군 자치법규 등 입법에 관한 조례 제9조제5항제1호에 따라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임.

**3. 미첨부 사유**

상위법 기준액 변경에 따른 조례 개정으로 비용 발생 여지 없음.

**4. 작성자**

세무과 세무1팀장 김태호

# 2024년도 수시분(2차) 공유재산관리계획(안) 검토보고서

1. 의안번호: 제2526호

2. 제 출 일: 2024년 6월 13일

3. 제 출 자: 달성군수

## 4. 제안사유

### ○ 하빈면 막구조물 및 야외무대 설치

하빈면 운동장 내 막구조물 및 부대시설을 설치하여 지역주민들의 건강증진과 여가선용 등 휴식의 공간을 제공함으로써 지역 생활체육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

## 5. 관련법령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 『대구광역시 달성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 6. 주요골자

### ○ 하빈면 막구조물 및 야외무대 설치

- 위치 : 하빈면 현내리 933-5번지 일원
- 사업기간 : 2024. 1. ~ 12.
- 주요시설 : 막구조물 1식(1,518.3㎡), 야외무대 1식(40.5㎡)
- 총사업비 : 12.95억원 (전액군비)
  - 공사비 12억, 설계비 0.6억, 감리비 0.21억, 기타 0.14억

#### ※기준가격(대장가격)

- 건물 신축(사업비) : 1,295,000,000원

### - 추진상황 및 추진계획

- 2024. 02. : 사업계획 수립
- 2024. 05. : 설계용역 완료
- 2024. 07. : 착공(예정)
- 2024. 12. : 준공(예정)

## 202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총괄표

(단위: m<sup>2</sup>, 천원)

구 분			당 초			금 회			계			비고
			건수 (필지/동)	면적	금액	건수 (필지/동)	면적	금액	건수	면적	금액	
취 득	계					1 (2)	1,558.8	1,295,000	1 (2)	1,558.8	1,295,000	
	1.매입	토지										
		건물				-	-	-	-	-	-	
	2.교환	토지				-	-	-	-	-	-	
		건물				-	-	-	-	-	-	
	3.기타	토지				-	-	-	-	-	-	
건물					1 (2)	1,558.8	1,295,000	1 (2)	1,558.8	1,295,000	신축	

# 2024년도 공유재산 취득대상 재산목록

종 류	지 목		재 산 의 표 시				취득 대상 수량 (㎡)	대장가격(원)	취득 시기	취득 사유	취득대상 재산 소유자		비고
	공부	사실	소 재 지			일단의 수 량 (㎡)					주 소	성 명	
건물	유지	체육 용지	하빈면	현내리	933-5 번지 일원	1,518.3	1,518.3	1,295,000,000 (사업비)	2024.12.	하빈면 막구조물 및 야외무대 설치	대구광역시 달성군 논공읍 달성군청로 33	달성군	막구 조물
						40.5	40.5						야외 무대

# 위치도 및 조감도

## 【하빈면 막구조물 및 야외무대 설치】

□ 위치: 대구광역시 달성군 하빈면 현내리 933-5번지 일원



## □ 조감도



막구조물



야외무대

# 현 장 사 진

## 【하빈면 탁구조물 및 야외무대 설치】

□ 위치: 대구광역시 달성군 하빈면 현내리 933-5번지 일원



## 7. 검토의견

2024년도 수시분(2차)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 ○ 하빈면 막구조물 및 야외무대 설치의 건은

하빈면민운동장 내(하빈면 현내리 933-5번지 일원) 기상여건에  
제약이 없는 가림시설(막구조물 1식, 야외무대 1식)을 조성하여  
이용자들의 불편을 해소하고 지역주민들의 건강증진과 여가 선  
용 등 지역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사업으로 판단됩니  
다.

이상으로, 2024년도 수시분(2차)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참고

## 상위 및 관계법령(발췌)

###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조의2(다른 법률과의 관계) 공유재산 및 물품의 관리·처분에 관해서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10조의2(공유재산관리계획)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의회에서 예산을 의결하기 전에 중기공유재산관리계획에 따라 매년 다음 회계연도의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이하 “공유재산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그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 확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한 후 부득이한 사유로 그 내용이 취소되거나 일부를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 제16조(공유재산심의회)

- ① 공유재산의 관리 및 처분에 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자문하기 위하여 각 지방자치단체에 공유재산심의회를 둔다.
- ② 제1항에 따른 공유재산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제10조 및 제10조의2에 따라 중기공유재산관리계획 또는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는 경우
  2. 제11조에 따라 행정재산의 용도를 변경하거나 폐지하려는 경우
  3. 제11조에 따라 일반재산을 행정재산으로 용도를 변경하려는 경우
  4. 제12조 단서에 따라 무상으로 회계 간의 재산 이관을 하는 경우
  5. 제24조 또는 제34조 및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라 사용료 또는 대부료를 감면하는 경우
  6. 그 밖에 공유재산의 관리·처분 등에 대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경우

###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 제7조(공유재산관리계획)

① 법 제10조의2제1항 전단에 따른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이하 “공유재산관리계획”이라 한다)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산의 취득[매입, 기부채납, 무상 양수, 환지(換地), 무상 귀속, 교환, 건물의 신축·증축 및 공작물의 설치, 출자 및 그 밖의 취득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및 처분(매각, 양여, 교환, 무상 귀속, 건물의 멸실, 출자 및 그 밖의 처분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 한다.

1. 공유재산의 취득·처분에 따른 1건당 기준가격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금액 이상인 재산
2. 공유재산의 취득·처분에 따른 1건당 기준면적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면적 이상인 토지

□ 대구광역시 달성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제5조(공유재산심의회의 업무)

①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유재산의 취득·처분에 관한 사항

2. (삭제 2009.5.29)

3. 법 제11조에 따른 용도의 변경 또는 폐지에 관한 사항

4. (삭제)

5. 제22조의2에 따른 행정재산의 관리위탁기간의 갱신에 관한 사항

6. 법 제12조 단서에 따라 무상으로 회계 간의 재산 이관을 하는 경우

7. 법 제24조 또는 제34조 및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라 사용료 또는 대부료를 감면하는 경우

제12조의2(공유재산관리계획)

④ 영 제7조제1항 각 호에 따른 “1건당 기준가격” 및 “1건당 기준면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1건당 기준가격

가. 취득의 경우: 10억원

나. 처분의 경우: 10억원

2. 1건당 기준면적

가. 취득의 경우: 1천제곱미터

나. 처분의 경우: 2천제곱미터